

2012-8

정책연구

제4차 여성정책 중기계획 중간 평가 및 보완계획

정책연구 2012-8

제4차 여성정책 중기계획 중간 평가 및 보완계획

문순덕·현혜경

발 간 사

우리사회는 저출산·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기회가 적으며,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부족하고,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미흡한 것 또한 부인하지 못할 현실입니다. 이에 의사결정직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비율을 높이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참여 의식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기적으로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단위로는 1998년에 1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2012년 현재 3차까지 추진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4년 단위로 여성정책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제주지역 실정에 맞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제주지역은 1999년부터 2010년까지 4차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여성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지향하기 위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여성 정책에 반영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여성정책은 4년 단위의 계획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추진결과를 분석하고 다음 차수의 계획을 수립하여 왔으나 이번에는 중간점검을 통하여 추진 여부를 평가하고, 후반기에도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4차 여성정책 중기계획 중간평가 및 보완계획』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특별히 2년간(2011~2012) 추진한 실적을 중간 점검한 후에 후반기(2013~2014) 추진과제를 보완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 발굴에 역점을 두었으며, 향후 2년간 목표대로 추진되어 여성친화적인 정책이 제주사회 곳곳에 파급되기를 바랍니다.

2012년 12월

제주발전연구원
원장 양 영 오

연구요약

I. 연구 개요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 1995년 북경에서 개최된 유엔 제4차 세계여성회의 행동강령 제297조는 각 국에 북경행동강령 이행 전략과 중장기 행동 계획을 개발하도록 촉구하였음. 유엔의 이러한 방향은 각국에 영향을 미쳐, 2000년에 개최된 제23차 유엔여성특별총회(북경+5)에서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국의 여성발전과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중장기 여성정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
- 우리나라도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여성정책기본계획의 수립)에 근거하여 1998년부터 5년마다 여성발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음.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여성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음.

<표 1>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 횟수

회차	국 가	제주특별자치도
제1차	1998~2002(5년)	1999~2002(4년)
제2차	2003~2007(5년)	2003~2006(4년)
제3차	2008~2012(5년)	2007~2010(4년)
제4차	2013~2017(5년) : 수립 중	2011~2014(4년)

- 지금까지 추진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중기계획(1차~4차)은 별도의 이행점검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계획 수립과 병행하여 전차 계획을 평가하고 신규 정책과제를 수립했음. 그 결과 계획 수립 시기와 추진 시기의 변화에 따라 정책과제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라도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4년 후 전체적으로 사업 결과 평가 시에 목표 달성도가 낮은 과제들이 발생함.

- 이런 점을 감안하여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중기계획(2011~2014)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전반기(2011~2012)와 후반기(2013~2014)로 나누어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향후 2년간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제를 보완하여 제시했음.
- 후반기 2년간 필요불급하면서 추진 가능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보완하였으므로 가능하면 실행할 수 없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기관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이 연구는 제5차 여성정책중기계획(2015~2018) 수립 시 평가 단계를 단축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계획 수립의 기초 마련에도 연구 목적이 있음.

2. 연구 내용과 범위

- 제4차 여성정책 중기계획 이행 점검 지표 개발
- 제4차 여성정책 중기계획 전반기(2011년 1월~2012년 12월) 평가
- 제4차 여성정책 중기계획 후반기(2013~2014) 보완계획 수립

3. 연구방법

- 제4차 여성정책 중기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함에 있어 점검지표를 적용하여 평가했음.
- 이 연구는 일차적으로 2011년도부터 2012년 9월말까지 추진실적을 대상으로 점검했음.

<표 2> 여성정책 중기계획 전반기 이행 점검 지표

점검 지표	점검 내용
①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표와 상위목표의 부합 여부 · 사업목표 및 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의 명확성, 구체성, 적절성, 실현가능성 등
② 합목적성/ 충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세부사업)의 적절성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목표와 사업계획의 인과 관계(추진체계, 추진방법) ·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과 프로그램의 적절성, 충분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목표의 명확성: 투입(예산 등) 대비 성과목표의 적극성
③ 목표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계획한 사업의 이행 정도 ·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여부(세부사업이 여러 가지인 경우 평균적 달성도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계획 대비 사업 추진의 적절성(추진 일정, 수혜대상, 세부사업 내용, 예산 집행도 등)
④ 목표달성도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적 보고 내용이 목표달성 기재 내용을 정당화하는지 여부 (③ 목표 달성도 지표의 연계지표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 실적 보고의 충실성 - 사업에 대한 홍보의 적절성 - 수혜 대상자의 참여·호응 정도 - 사업 지속성 및 확대 가능성
⑤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기계획에 기재된 예산액(단위: 백만원)

Ⅱ. 제4차 여성정책 중기계획 보완계획 수립

1. 중간 평가 결과 및 보완계획 수립 방향

- 중기계획 중간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보면 인권 부문이 23개 과제 중 20개가 추진되어 8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여성친화도시 부문이 6개 중 5개(83%), 가족 부문이 15개 중 11개(73%), 사회·문화 부문이 13개 중 8개(61%), 권익·성주류화 강화 부문이 19개 중 10개(52%), 건강·복지 부문이 22개 중 11개(50%), 경제 부문이 14개 중 6개(42%), 인력개발 부문이 15개 중 6개(40%) 순으로 추진되었음(〈표 3〉 참조).

〈표 3〉 제4차 여성정책 중기계획 전반기(2011~2012) 추진 실적

	구 분	정책과제 수	세부과제 수	추진과제 수 (비율)
1영역	여성 가족 부문	5	15	11(73%)
2영역	여성 경제 부문	5	14	6(42%)
3영역	여성 인력개발 부문	5	15	6(40%)
4영역	여성 사회·문화 부문	5	13	8(61%)
5영역	여성 인권 부문	6	23	20(87%)
6영역	여성 건강·복지 부문	8	22	11(50%)
7영역	여성 권익·성주류화 강화 부문	5	19	10(52%)
8영역	여성친화도시 부문	2	6	5(83%)
합계	8	41	127	77(60%)

- 가족 영역에는 국비사업과 다른 기관의 추진 사업이 포함된 경우 실적 집계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후반기 과제에는 반영하지 않음.
- 경제 영역에서는 여성의 취·창업과 경제활동 기회 제공에 필요한 정책이 수립됨. 2년간 특정 교육훈련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내용은 풍부한 반면 추진결과가 부족하게 집계됨.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공간을 가족친화적으로 조성할 수 있

도록 민간기업에도 권장하는 정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했음. 즉 정책 추진부서의 의지는 높으나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를 위한 환경 조성이 미흡한 결과로 보임. 따라서 후반기 과제 수립 시 수정·보완하였음.

- 인력개발 영역을 보면 미래세대 여성 대상 능력개발 정책 지원이 일부 대학기관에 집중되면서 다양한 정책 추진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임. 또한 취업 능력개발 정책은 경제 영역과 중복 추진됨으로써 추진 실적이 저조함. 따라서 이런 점을 보완하여 후반기 과제에 반영하였음.
- 사회·문화 영역에서는 여성들의 자율적 소모임 활성화와 여성 문화예술 활동 등이 추진되지 못한 점을 참고하여 후반기 과제에 수정하였음.
- 인권 영역의 추진 실적이 높은 것은 성평등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민·관 협력체제 구축이 잘되고 있음을 보여줌. 후반기 과제에도 지속 사업으로 반영함.
- 건강·복지 영역에서는 도서지역 여성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지 못했으며, 여성장애인, 여성농어업인, 이주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을 위한 복지 사업은 추진실적이 저조하나 후반기에 수정·보완하여 지속성 유지에 역점을 두었음.
- 권익·성주류화 강화 영역에서는 주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와 민간인 대상 성평등교육 정책이 미흡하므로 후반기에는 과제를 수정·보완하여 성인지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려했음.
- 여성친화도시 영역은 계획 대비 추진실적이 높은 편이므로 이 과제는 후반기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반영했음.
- 전반기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정책과제에 따라 추진부서의 변경, 성별분리통계가 잡히지 않는 과제, 특정 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으로 추진되는 사업 등이 있으므로 이런 점을 토대로 하여 후반기(2013~2014) 추진 과제를 보완하는데 반영했음.
 - 전반기 추진실적을 참고하여 후반기 계획은 영역과 정책과제 수를 조정하여 구체적인 사업 발굴에 역점을 두었음. 유사한 영역과 정책과제를 통합하고, 일부의 과제는 영역에 적합하게 재배치하였음.
 - 여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의 범위를 벗어나서 다른 기관이나 민간 영역에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은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후반기에는 세부과제나 구체적인 사업을 일부 수정하였음.
- 중기계획의 수정·보완 과제 선정은 전문가와 정책담당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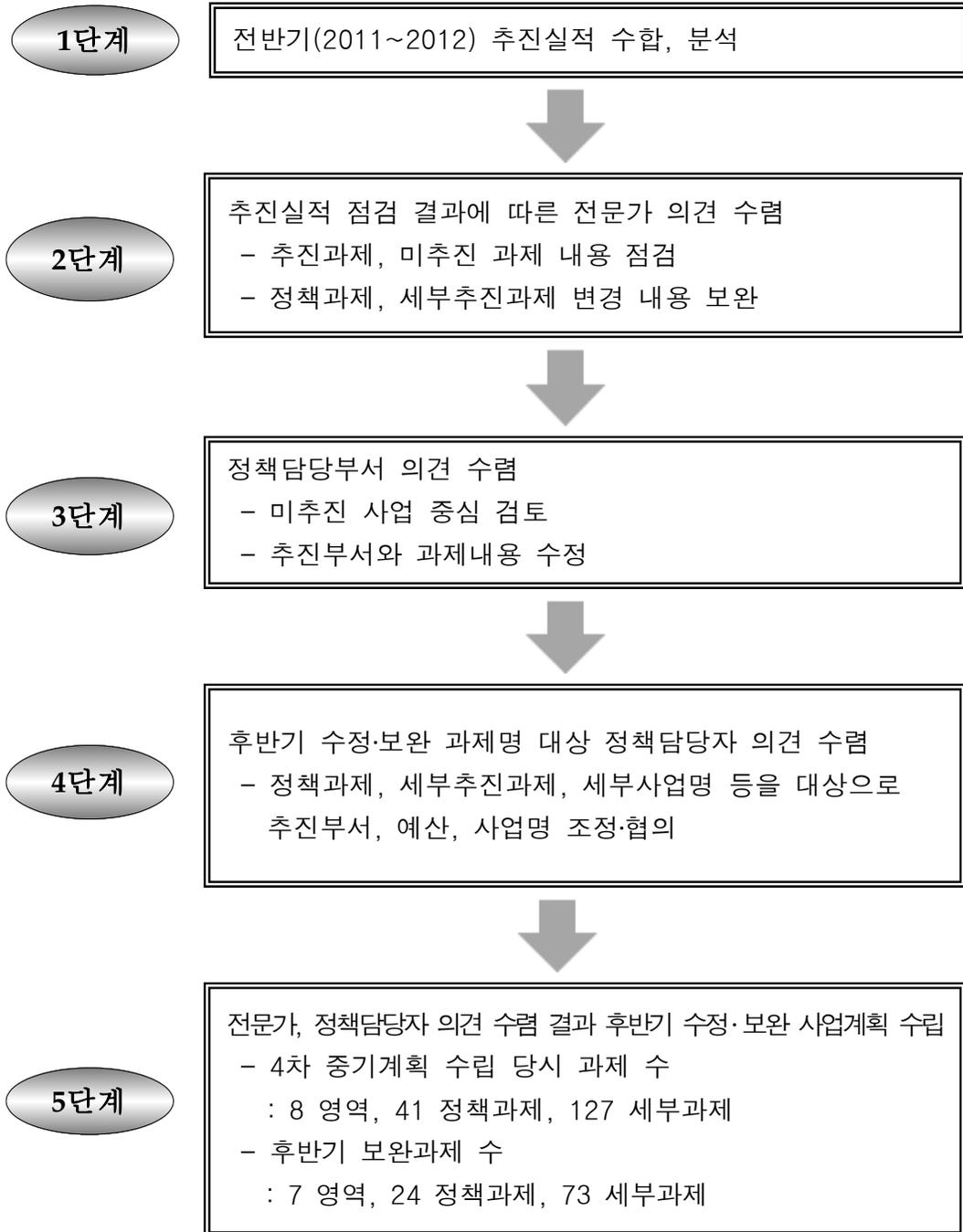
서 과제명을 보완하였음. 추진 내용상 배치가 부적절한 경우 세부과제의 통합, 이동, 삭제의 절차를 따랐음. 특히 전반기 2년간 추진실적이 없는 과제는 사업명을 수정하고, 다각도로 검토 후에 후반기에 추진하기 어려운 내용들은 삭제하였음.

- 정책과제, 세부과제, 추진내용 등은 계속사업, 수정사업, 신규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음.
- 후반기 보완계획은 7영역, 정책과제 24개, 세부과제 73개를 수립하였음(〈표 4〉참조).
- 정책과제 24개 중에 수정과제 6개, 계속과제 18개임.
- 세부과제 73개 중에 신규과제 3개, 수정과제 22개, 계속과제 48개임.
- 각 세부과제별로는 전체 193개 중에 신규사업 33개, 수정사업 31개, 계속사업 129개임.

<표 4> 제4차 여성정책 중기계획 후반기(2013~2014) 추진 계획

	구분	정책과제 수	세부과제 수
1영역	여성 가족 부문	4	11
2영역	여성 경제·인력개발 부문	3	6
3영역	여성 사회·문화 부문	3	10
4영역	여성 인권 부문	6	24
5영역	여성 건강·복지 부문	3	13
6영역	여성 권익·성주류화 강화 부문	6	18
7영역	여성친화도시 부문	2	4
합계		24	73

2. 보완계획 수립 절차



<그림 1> 계획 수립 절차

Ⅲ. 정책 제언

□ 여성정책의 영역별 추진실적 편차 고려

- 제4차 여성정책 중기계획 중간평가 결과 가족, 인권, 건강·복지, 권익·성주류화 영역은 일정하게 추진되었으나, 여성들의 경제활동과 고용 창출을 장려하는 경제와 인력개발 부문은 추진 실적이 저조함. 또한 청년 대상 다양한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고 봐서 4차 중기계획에 반영하였으나 중간 점검 결과 거의 추진되지 않았음.
- 이는 일자리 창출과 기회 제공을 위해 특정 교육기관 중심으로 위탁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정책과제 수가 적게 집계되는 단점이 있으나 재교육과 취·창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단계적·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며 세부과제 수효의 많고 적음을 고려하지 않아야 좋은 실적을 거둘 수 있다고 봄.
- 다만 여성의 경제활동을 양성화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 시설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봄.

□ 여성정책 중기계획의 적극적 추진 의지 필요

- 제4차 여성정책 중기계획에는 4년간 추진 가능성이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여 반영하였으나 중간점검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추진되지 않았음.
-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은 시기와 예산을 고려하여 결과를 얻을 수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여성정책은 제주지역 전반에 걸쳐 시행되어야 하므로 고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간기업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과제 추진이 중요함. 또한 여성의 대표성 확대와 평등의식의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정책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필요함.

□ 여성정책의 지속적 추진 여건 조성

- 4년간 여성정책 점검 결과 추진 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 다음 차수에도 반영되어 여성정책이 중장기적으로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함. 즉 정책의 추진실적 결과에 따라 미추진된 것은 중요도와 지속성을 고려하지 않고 삭제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진 여부에 상관없이 4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봄.
- 특히 정책과제 추진 여부는 추진시기와 예산 확보, 추진 의지 등이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정책 집행 주체의 노력이 필요하고, 중기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실적 보고 체계화가 필요함.
- 매년 추진실적 보고에 목표, 내용, 예산(집행액), 추진 경과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수합하고 점검함으로써 사업의 연속성 여부 확인이 필요함.

□ 여성정책 중기계획 수립 시기 조절

- 지방자치단체장 임기 4년, 대통령 임기 5년을 고려하여 중기계획 수립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고 봄.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 기조를 반영하여 여성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정책 추진에 효율적이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여성정책을 수행해야 하므로 정부의 여성정책 수립 시기를 조율해야 국가와 지방의 여성정책 목표 달성에 근접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
- 따라서 제5차 여성정책 중기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시기와 정부의 여성정책 추진 일정을 감안하여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실질적인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된다고 봄.
- 정부와 지방의 정책 기조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조정하지 않고 현행대로 4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할 경우 항상 수정·보완 과정을 거치게 됨.
- 향후 5차 여성정책 중기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적어도 중기계획 종료 1년 전에 추진실적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중기계획이 종료되는 연도에는 다음 차수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시간과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이라고 봄.

□ 여성정책 추진 부서의 통합적인 계획 수립 여건 조성

- 정책 담당부서에 따라 중장기 기본계획이 수립(사회복지, 인력개발, 청소년, 아동·보육, 저출산·고령화, 노인·장애인 등)되고 있는데 추진 시기를 고려하여 중복 분야인 경우 동일한 과제를 그대로 반영하고, 필요에 따라 해당 부서별 독자적인 정책과제 발굴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봄.
- 추진 실적을 수합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담당부서의 혼재, 사업의 혼재, 여성 정책에 적합한 성별분리통계의 불명확성 때문에 추진 결과 비율이 낮게 평가 되는 경우가 발생함.
- 따라서 여러 분야의 기본계획을 교류하고 수립하게 되면 시간과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봄.

목 차

I. 연구 개요	1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1
2. 연구 내용과 범위	2
3. 연구 방법	4
II. 제4차 여성정책 중기계획 중간 평가	9
1. 영역별 중간 추진실적 평가	9
2. 영역별 중간 추진실적 평가 결과 시사점	89
III. 제4차 여성정책 중기계획 보완계획 구조	95
1. 여성정책의 현황과 환경 전망	95
2. 보완계획 수립 방향과 절차	115
3. 목표와 전략	120
IV. 제4차 여성정책 중기계획 보완 정책과제	121
1. 여성 가족 부문	121
2. 여성 경제·인력개발 부문	130
3. 여성 사회·문화 부문	135
4. 여성 인권 부문	144
5. 여성 건강·복지 부문	155
6. 여성 권익·성주류화 강화 부문	171
7. 여성친화도시 부문	179
V. 정책 제언	183
참고자료	186
Abstract	187
부록. <제4차 여성정책 중기계획 보완 사업별 투자계획 및 추진부서>	188

<표 목차>

<표 1>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 횟수	1
<표 2> 여성정책 중기계획 전반기 이행 점검 지표	8
<표 3> 제주지역 인구구조(Population Structure by Sex, 2005~2010)	96
<표 4> 출생아수 및 조출생률(Number of Live Births by Sex and Crude Birth Rate, 2005~2010)	98
<표 5> 제주지역 여성 가구주 추계 가구(Projected Householders by Sex, 2001~2020)	99
<표 6> 제주지역 경제활동인구 추이(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and Employment Status by Sex, 2000~2010)	101
<표 7> 여성취업 장애요인에 관한 견해(Attitudes toward Female Employment by Sex, 2009)	102
<표 8> 제주지역 한부모가족(Single Parent Families, 2000, 2005, 2010)	104
<표 9> 자원봉사 참여율(Participation Rate in Voluntary Services by Sex, 2009)	105
<표 10> 아동안전지킴이집 현황(Number of Child Safety House, 2010)	108
<표 11> 성폭력 상담소 상담건수(Number of Counselling by the Types of Sexual Violence, 2005~2009)	109
<표 12> 향후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Areas of Improvement Needed in the Welfare Policies, 2009)	111
<표 13> 우선적으로 확대 실시되어야 할 장애인 복지사업 (Priority New Welfare Programs for the Disabled, 2009)	112
<표 14> 저소득 및 한부모가족(Low Income Single-Parent Families, 2005~2009)	113
<표 15> 제4차 여성정책 중기계획 전반기(2011~2012) 추진 실적	116
<표 16> 제4차 여성정책 중기계획 후반기(2013~2014) 추진 계획	118

<그림 목차>

<그림 1> 비전과 목표	3
<그림 2> 제주지역 보육시설(2010)	97
<그림 3>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2010)	107
<그림 4> 계획 수립 절차	119
<그림 5> 목표와 전략	120

I. 연구 개요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 1995년 북경에서 개최된 유엔 제4차 세계여성회의 행동강령 제297조는 각국에 북경행동강령 이행 전략과 중장기 행동 계획을 개발하도록 촉구하였음. 유엔의 이러한 방향은 각국에 영향을 미쳐, 2000년에 개최된 제23차 유엔여성특별총회(북경+5)에서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국의 여성발전과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중장기 여성정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옴.
- 우리나라도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에 근거하여 1998년부터 5년 단위로 여성발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여성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표 1>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 횟수

회차	국 가	제주특별자치도
제1차	1998~2002(5년)	1999~2002(4년)
제2차	2003~2007(5년)	2003~2006(4년)
제3차	2008~2012(5년)	2007~2010(4년)
제4차	2013~2017(5년) : 수립 중	2011~2014(4년)

- 특히 여성발전기본법 제8조는 정부 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들에게도 동 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이행의 의무를 부여함.
 - 이에 따라 광역시·도는 물론, 기초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여성발전기본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의 기본계획을 참조하여 자체 여성발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지금까지 추진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중기계획(1차~4차)은 별도의 이행 점검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계획 수립과 병행하여 전 차수의 계획을 평가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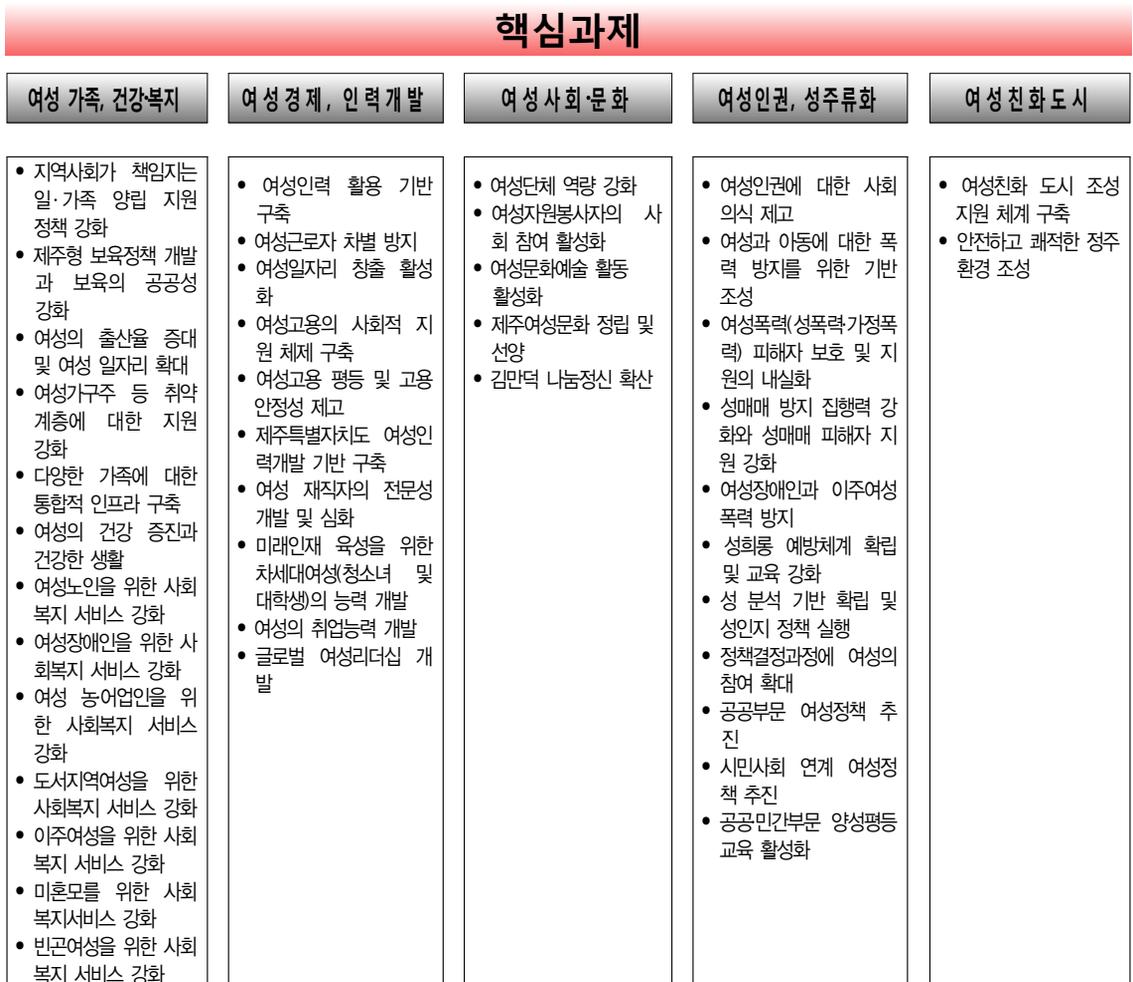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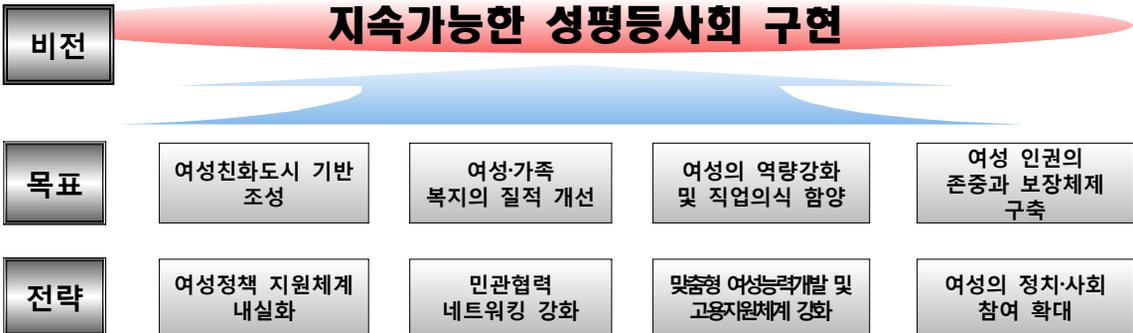
신규 정책과제를 수립했음. 그 결과 계획 수립 시기와 추진 시기의 변화에 따라 정책과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라도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4년 후 전체적으로 사업 결과 평가 시에 목표 달성도가 낮은 과제들이 발생함.

- 이런 점을 감안하여 이 연구에서는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중기계획(2011~2014)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전반기(2011~2012)와 후반기(2013~2014)로 나누어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향후 2년간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제를 보완하여 제시하고자 함.
- 이 연구는 제5차 여성정책중기계획(2015~2018) 계획 수립 시 평가 단계를 단축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계획 수립의 기초 마련에도 연구 목적이 있음.

2. 연구 내용과 범위

- 제4차 여성정책 중기계획 이행 점검 지표 개발
- 제4차 여성정책 중기계획 전반기(2011년~2012년) 이행 점검
- 제4차 여성정책 중기계획 후반기(2013~2014) 보완계획 수립

○ 제4차 여성정책 중기계획(2011~2014)의 구조와 핵심과제



<그림 1> 비전과 목표

3. 연구 방법

- 이 연구는 일차적으로 2011년부터 2012년 9월말까지 추진실적을 대상으로 점검하고자 함.
- 지금까지는 여성정책 중기계획에 대하여 추진실적 중심으로 단순한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4차 전반기(2011~2012) 추진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이행점검지표를 적용하였음.
- 이행점검지표는 국가단위와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평가에 적용한 지표를 참조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정에 맞게 수정한 후에 전문가와 정책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구성하였음.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 중기계획 중간평가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점검지표 평가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여성가족부의 여성정책 기본계획 평가지표(안)를 보면 1)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의 전년도 이행실적과 차년도 시행계획이 당초의 기본계획의 정책목표와 부합한지, 2) 세부 추진 사항들이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절하고 충분한 수단인지, 3) 달성도는 어떠한지, 4) 예산규모는 어떠한지 등을 검토하고 이를 통하여 기본계획 과제의 이행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음. 시사점은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방향과 기능, 범위와 프레임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안하였음.

1) 조우철 외(2004),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평가틀>

평가항목	점검지표	점검 착안사항
정책형성	① 정책목표의 타당성	- 정책과제의 선택이 여성정책의 환경, 정책대상 범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과제인가
	② 시행계획의 적절성	- 시행계획이 정책목표 달성에 적절하고 충분한가
정책집행	③ 시행계획의 진전도	- 시행계획이 전년도에 비하여 진전이 있는가
	④ 추진실적의 구체성	- 실적 내용이 구체적이고 적극적인가
정책성과	⑤ 달성도	- 일정계획에 맞추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가
성 인지적 관점	⑥ 성 인지적 관점 반영도	- 정책과제는 성 인지적 관점이 반영되었는가

· 출처: 조우철 외(2004), 『여성정책기본계획 점검』, 여성부, 8쪽.

2) 이은아 외(2008), <경기도 여성발전 5개년 계획 이행점검 틀>

평가항목	점검지표	점검내용
기관역량평가	법 및 제도의 적절성	- 법 제도가 잘 정비되었는가
	조직 및 인력의 적절성	- 조직체계가 갖추어졌는가 - 인력의 규모가 적절한가
	재정의 적절성	- 예산규모가 적절한가 - 예산 비중이 확보되었는가 - 기금액이 충분한가
정책영역평가	정책목표의 타당성	- 정책목표가 상위목표와 부합되는가? - 정책목표 및 계획이 구체적인가? - 정책목표 및 계획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가?
	정책수단의 적절성	- 세부사업이 적절하게 추진되었는가? - 세부사업이 정책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였는가? - 정책추진을 위한 기구, 예산, 인력, 프로그램, 시설 등이 잘 갖추어져 있는가?
	정책달성도	- 당초 목표한 사업이 충분히 이행되었는가? - 정책 목표에 달성하였는가? - 젠더관계의 전환가능성이 있는가?

· 출처: 이은아 외(2008), 『경기도 여성발전 5개년 계획 이행점검 및 향후 과제』, 경기가족여성연구원, 53쪽.

3) 김양희 외(2009), <수원시 여성정책 중장기 기본계획의 이행점검 틀>

평가항목	점검지표	점검 착안사항
추진역량부문	법령(조례)	- 여성 관련 법령이 잘 정비되었는가?
	조직 및 인력	- 여성 정책 추진체계가 갖추어졌는가? - 총괄부서의 조직과 인력은 적절한가?
	재정	- 여성정책 예산규모가 적절한가 - 기금의 규모는 적절한가

평가항목	점검지표	점검 착안사항
정책과제부문	정책목표의 타당성	- 사업목표가 상위목표와 부합되는가 - 사업목표 및 계획이 구체적인가
	정책수단의 적절성	-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세부사업)이 적절한가 - 예산, 인력, 프로그램 등의 측면에서 세부사업을 적절하게 추진하였는가
	정책달성도	- 당초 계획한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였는가 -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 출처: 수원시, 『수원시 여성정책 중장기기본계획의 이행점검 및 향후 과제』, 김양희 외 (2009),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이행점검』, 여성부, 21쪽 재인용.

4) 김양희 외(2009),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이행점검>

점검지표	점검내용	조작적 정의
① 타당성	- 사업목표가 상위목표와 부합하는지 - 사업목표 및 계획이 구체적인지	① 그렇다 ② 보통 ③ 아니다
② 합목적성/ 충실성	-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세부사업)이 적절한지 - 세부사업의 예산, 인력, 프로그램 등이 적절하고 충분한지	① 그렇다 ② 보통 ③ 아니다
③ 목표 달성도	- 당초 계획한 사업이 충실히 이행되었는지 -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였는지(단위사업이 여러 가지인 경우 평균적 달성도를 의미)	① 초과 달성 ② 목표 100% 달성 ③ 목표 미달
④ 목표 달성도의 근거	- 실적 보고 내용이 목표달성 기재 내용을 정당화하는지 (③ 목표 달성도 지표의 연계지표임)	① 적절 ② 부적절
⑤ 단위사업 수	- (여성부)작성양식의 예산표의 사업개수	작성양식에 기재된 사업개수
⑥ 예산	- (여성부)작성양식에 기재된 예산액(단위: 천원)	작성양식에 기재된 예산액수

· 출처: 김양희 외(2009),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이행점검』, 여성부, 25쪽.

5) 민무숙 외(2011), <제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이행 점검>

점검지표	점검내용	조작적 정의
① 타당성	- 사업목표가 상위목표와 부합하는지 - 사업목표 및 계획이 구체적인지	① 그렇다 ② 보통 ③ 아니다
② 합목적성/ 충실성	-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세부사업)이 적절한지 - 세부사업의 예산, 인력, 프로그램 등이 적절하고 충분한지	① 그렇다 ② 보통 ③ 아니다
③ 목표 달성도	- 당초 계획한 사업이 충실히 이행되었는지 -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였는지(단위사업이 여러 가지인 경우 평균적 달성도를 의미)	① 초과 달성 ② 목표 100% 달성 ③ 목표 미달
④ 목표 달성도 의 근거	- 실적 보고 내용이 목표달성 기재 내용을 정당화하는지 (③ 목표 달성도 지표의 연계지표임)	① 적절 ② 부적절
⑤ 예산	- (여성가족부)작성양식에 기재된 예산액 (단위: 천원)	작성양식에 기재된 예산액수

· 출처: 민무숙 외(2011),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이행점검 및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여성가족부, 11쪽.

6) 기타

변화순 외(2008)에서는 16개 시도의 제2차 기본계획 시행실적을 분석한 결과 미진한 사업에 대한 분류 결과 ① 목표와의 불일치성, ② 과제선정의 부적합성, ③ 특수과제 분류의 목적 모호, ④ 계획수립 단위의 일관성 미흡, ⑤ 작성양식 기재 내용의 불명확성, ⑥ 정상추진의 근거 미약, ⑦ 사업계획의 불명확성 등으로 미진한 사업에 대한 원인을 항목으로 분류하였음.

○ 여러 기관의 이행점검 지표를 참조하여 이 연구에 적용할 이행점검 지표와 점검 내용은 <표 2>와 같음.

<표 2> 여성정책 중기계획 전반기 이행 점검 지표

점검 지표	점검 내용
①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표와 상위목표의 부합 여부 · 사업목표 및 계획의 구체성 - 사업목적의 명확성, 구체성, 적절성, 실현가능성 등
② 합목적성/충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세부사업)의 적절성 여부 - 성과목표와 사업계획의 인과 관계(추진체계, 추진방법) ·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과 프로그램의 적절성, 충분성 등 - 성과목표의 명확성 : 투입(예산 등) 대비 성과목표의 적극성
③ 목표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계획한 사업의 이행 정도 ·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여부 (세부사업이 여러 가지인 경우 평균적 달성도 의미) - 사업 계획 대비 사업 추진의 적절성 (추진일정, 수혜대상, 세부사업 내용, 예산집행도 등)
④ 목표달성도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적 보고 내용이 목표달성 기재 내용을 정당화하는지 여부 (③ 목표 달성도 지표의 연계지표임) - 사업추진 실적 보고의 충실성 - 사업에 대한 홍보의 적절성 - 수혜 대상자의 참여·호응 정도 - 사업 지속성 및 확대 가능성
⑤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기계획에 기재된 예산액(단위: 백만원)

II. 제4차 여성정책 중기계획 중간 평가

1. 영역별 중간 추진실적 평가

1 영역. 여성 가족 부문

1-1. 지역사회가 책임지는 일·가족 양립 지원 정책 강화

- 여성과 가족의 책임으로 인식되어 온 돌봄노동의 부담을 사회가 분담하는 정책 강화를 위해 도민 대상, 아동 양육 지원 시스템 운영을 목적으로 함.
- 세부 과제로는 육아휴직 제도 정착에 필요한 다양한 시스템 마련, 아동 양육과 교육비 지원 등이 있음.

1) 추진 실적

사업내용	전반기 추진실적(단위: 백만원)	
	2011년	2012년
1-1-1. 일·가족 양립에 대한 도민들의 의식전환 정책 실시	-	-
예산액(집행액)	-	-
1-1-2. 육아휴직 중 대체인력 지원과 남성육아휴직 확대 방안 마련 및 임신·출산·양육 지원시스템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연근무제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설명회 개최: 2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 스마트워크센터 운영실태 벤치마킹 - 시차출퇴근형: 995명 (도본청: 497, 행정시: 498) * 총 정원 4,290명 대비 23% - 스마트워크제: 108명 (도본청: 95 행정시: 13) ○ 예산현황: 비예산 ○ 육아휴직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연근무제 활성화 지속 ○ 육아휴직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 집중육아를 위한 육아휴직제도 장려 - 육아휴직자·출산휴가자에 대한 업무대행 공무원 지정: 업무대행 수당 월 5만원 지급(다수일 경우 월 3만원) ○ 산전후 휴가급여 지원 및 육아휴직 장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전후휴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산전·산후를 통하여 90

사업내용	전반기 추진실적(단위: 백만원)	
	2011년	20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배치: 14명(휴직자 14명) · 대체인력: 정규직 8, 행정도우미 1, 업무대행지정 5 - 육아휴직·출산휴가자 업무대행공무원 지정(7건·11명) ○ 산전후 휴가급여 지원 및 육아휴직 장려 - 산전후 휴가급여 및 유산·사산휴가에 대한 급여지원 -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유연근무제 활용률: 총 정원의 22%인 914명 활용 ○ 전국 최초 무기계약 근로자 대상 유연근무제 시행 확대(2011년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의 보호휴가를 주되,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 확보하도록 함. - 우선지원기업: 90일간 지원, 대규모기업: 30일간 지원 -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만6세 이하 취학 전 자녀('07. 12. 31. 이전 출생자는 1세 미만)가 있는 경우 최대 1년 동안 휴직을 할 수 있으며,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 ○ 유연근무제 활용률: 총 정원의 32.8%인 639명 활용 ○ 2012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가등급' ○ 2012 유연근무제 활용율 최종 결과 : 총 정원의 40% 예상
예산액(집행액)	13	21
1-1-3. 아동 양육 및 교육비 보조 확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보육료 지원: 74,748백만원 ○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1,442명·3,304백만원 ○ 국·공립 보육시설 이전 신축: 1개소 ○ 시간 연장형 등 특수보육시설 확대: 374개소·915백만원 ○ 평가인증 보육시설 확대: 412개소(비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민·중산층 보육지원 확대 -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료 지원 확대: 17,920명·81,455백만원 · 만 0~5세 보육료, 맞벌이 가구 보육료, 장애아 무상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등 ○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2,083명·3,818백만원 ○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충 - 우수 민간보육시설 대상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추진: 28개소·1,025백만원 - 평가인증 보육시설 확대: 440개소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1개소 ○ 맞벌이 가구 등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 시간 연장형 등 특수보육시설 확대 운영: 380개소·915백만원 ○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확대: 4,672명·6,881백만원
예산액(집행액)	7(78,052)	7.7(93,179)

2) 이행 점검 결과

□ 사업의 타당성

- 세부과제들이 전반적으로 사업의 상위 목표에 적합한 하위목표가 설정되어 있음. 다만 1-1-1 일·가족 양립에 대한 도민들의 의식전환 정책 실시는 추진 되지 못함.
- 사업 목표와 계획이 제대로 추진된 과제로는 1-1-2 육아휴직 중 대체인력 운영으로 유연근무제 활성화, 육아휴직 활성화, 산전·후 휴가 급여 지원 및 육아휴직 장려 등이 있음. 1-1-3 아동 양육비 보조 확대 지원 사업으로는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시간연장형 특수 보육시설 확대 운영,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확대 등을 추진하여 타당성 검증이 가능함.

□ 사업의 합목적성(충실성)

- 세부과제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 방법과 추진체계, 예산 등을 통해 점검함. 1-1-3 아동 양육비 보조 확대 지원 사업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시간 연장형 등 특수 보육시설 확대가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예산도 적절히 집행됨. 412개소의 평가인증 보육시설 점검과 확대는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됨.
- 2건의 세부과제는 사업의 충실성이 높으나 육아휴직 대체 지원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고용보험기금으로 집행됨.

□ 목표달성도

- 기 계획된 세부과제들이 2년간 연차적으로 세부계획에 적합하게 목표를 달성하였고, 사업 추진 부서의 실적 보고는 적절함. 일부 비예산 사업은 가능하면 예산사업으로 추진 필요

□ 총평 및 향후 과제

- 1-1 지역사회가 책임지는 일·가족 양립 지원 정책 강화 관련 3개의 세부과제 중 1개는 미추진이고, 2개는 계획대로 추진됨. 출산 장려 정책 시행에 필요한 여건 조성을 위해 보육료 지원 확대, 방과후 아동돌봄을 위한 기관에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됨.
- 1-1-1 일·가족 양립에 대한 도민들의 의식 전환 확대 사업은 전반기에 추진

되지 못했으나 여성들의 경제·사회 활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이므로 하반기 추진 사업에 반영하는 방안 검토.

1-2. 제주형 보육정책 개발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

- 가사와 육아 전담을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이 단절되므로 경력단절을 보완하고 경제활동 참여 기회 제공이 필요함.
-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증가에 따라 보육시설 운영 시간 확대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육 서비스 확대 필요.
- 세부과제로는 야간 돌봄 어린이집의 단계적 확대, 보육시설 종사자 전문성 강화 등이 있음.

1) 추진 실적

사업내용	전반기 추진실적(단위: 백만원)	
	2011년	2012년
1-2-1. 야간 돌봄 어린이집 단계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보육시설 운영: 400개소 · 915백만원 ○ 특수보육시설 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특수보육시설로 지정·운영하는 시설 - 지원기준: 개소당/월/600천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보육시설 운영: 400개소 ○ 특수보육시설 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특수보육시설로 지정·운영하는 시설 - 지원기준: 개소당/월/600천원 지원
예산액(집행액)	27(915)	20.2
1-2-2. 보육시설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	-
예산액(집행액)		
1-2-3. 보육시설 종사자 전문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종사자 보수교육 및 능력향상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실적: 어린이집 종사자 4,473명 · 4,838백만원 - 농어촌지역 보육교사: 1인/월/80천원(특수근무수당지원: 1인/월/110천 원) - 도시지역 보육교사: 1인/월/135천 원 - 시설장, 취사부, 운전기사 등: 1인/월/100천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종사자 보수교육 및 능력향상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실적: 어린이집 종사자 4,460명 · 4,774백만원 - 농어촌지역 보육교사: 1인/월/80천 원(특수근무수당지원: 1인/월/110천 원) - 도시지역 보육교사: 1인/월/135천 원 - 시설장, 취사부, 운전기사 등: 1인/월/100천 원
예산액(집행액)	(4,838)	(4,774)

2) 이행 점검 결과

□ 사업의 타당성

- 3개의 세부과제는 상위 목표에 적합하게 구성됨. 사업 목표와 추진 계획에 맞게 추진된 과제는 1-2-1 특수보육시설 운영과 1-2-3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임. 특히 야간돌봄 사업을 위해 시간연장형 시간대 보육서비스 확대 지원 등은 구체적으로 추진됨.
- 다만 1-2-2 보육시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은 정부 추진 과제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별도로 추진하지 않음.

□ 사업의 합목적성(충실성)

- 세부과제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 방법과 추진체계, 예산 등을 통해 사업의 충실성을 확인하였음. 1-2-1 야간돌봄 어린이집 단계적 확대 사업은 읍·면·동별 주민의 특수보육시설 수요가 높은 지역에 지정 운영(저소득 가정 등 지역별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우선 지정 운영)되고 있음.
- 1-2-3 보육시설 종사자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과 능력 향상비 지원을 계획대로 추진되었음. 특히 취약지역 보육시설 종사자(농어촌, 도서지역) 능력 향상비 지원 사업은 적절하게 추진됨.

□ 목표달성도

- 기 계획된 세부과제는 전반기 2년간 목적에 맞게 추진되고 있으며, 정부정책의 변화에 따라 일부 조정된 사업이 있음. 사업추진 부서의 실적보고는 구체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수혜자의 욕구를 반영하고 있음.

□ 총평 및 향후 과제

- 1-2 제주형 보육정책은 3개 중 2건은 추진되고 1건은 정부추진 과제여서 실적 산출이 어려움.
- 야간돌봄 서비스 확대 실시를 위해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현실화, 특히 취약보육시설 수(영아전담, 장애전담 등) 확대, 취약지역 보육교사 지원 확대 현실화가 필요함.

- 보육시설 종사자 전문성 강화를 위해 능력향상비의 지원 확대 사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함.

1-3. 여성의 출산을 증대 및 여성 일자리 확대

- 저출산이 이미 국가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제주지역 역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하여 출산 장려를 위한 육아정책으로 양육비 지원 확대 정책이 필요함. 또한 육아와 일 양립을 위한 일자리 시장의 확대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세부과제로는 영유아(0~5세) 무상보육, 8대(12살 이하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 무상 실시, 신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 등을 수립하였음.

1) 추진 실적

사업내용	전반기 추진실적(단위: 백만원)	
	2011년	2012년
1-3-1. 0~5세 영유아 전면 무상 보육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료 지원: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의 영유아 보육료 전액 지원 - 지원실적 : 19,406명 · 74,791백만원 - 만 0~5세 보육료 전액 지원 확대(소득하위 70% 이하) ※ 4인가족 기준 소득 인정액 480만원 이하 가구 ○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료 지원 - 지원실적 : 23,989명 · 97,532백만원 -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만 0~2세, 만 5세 보육료 전액 지원 확대 ○ 장애아, 다문화가족 무상 보육료 지원 - 만 3~4세 보육료는 소득기준에 의거 지원(소득 하위 70% 이하)
예산액(집행액)	10(74,791)	13.5(97,532)
1-3-2. 12살 이하 어린이 8대 필수예방접종 무상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필수 예방 접종비 지원 - 사업대상: 만 12세 이하 영유아(31,000명) - 예방접종기관: 84개소(보건소 · 보건지소 17, 병 · 의원 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필수 예방 접종비 지원 - 사업대상: 만 12세 이하 영유아 - 사업량: 106,616건 - 예방접종기관: 84개소(보건소 · 보건지소 17, 병 · 의원 67)
예산액(집행액)	5	5.5
1-3-3. 신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 확대 운영	-	-
예산액(집행액)		

2) 이행 점검 결과

□ 사업의 타당성

- 세부과제들이 대체로 정책과제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음. 목적에 부합되게 추진된 과제는 1-3-1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 시행과 1-3-2 8대 필수 예방접종 무상 시행이 있음. 맞벌이 가구 보육료 지원,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등을 추진하여 타당성 검증이 가능함.
- 1-3-3 신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 확대 사업은 출생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보험가입이 되므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에서 제외됨.

□ 사업의 합목적성(충실성)

- 세부과제 달성을 위한 사업 추진 방법과 추진 체계, 예산 등을 통해 점검 가능함. 1-3-1 무상보육 보육료 지원 사업은 525개소 보육시설에 24,815명의 아동이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이 중 보육대상 아동 수(만 0~5세 이하)는 34,496명으로 전액 지원 받음. 아동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아동에 대하여 보육료가 지원됨(보육료의 100% 지원).
- 1-3-2 12살 이하 어린이 8대 필수 예방 접종 무상 지원 사업은 병의원 접종 시 접종비 지원으로 계획대로 추진됨. 예방접종기관 지정은 비예산 사업으로 84개소(보건소·보건지소 17개소, 병·의원 67개소)가 지정됨.

□ 목표달성도

- 기 계획된 세부과제들이 추진 연도에 맞게 목표를 달성하였고, 추진 부서의 실적보고는 구체적임.

□ 총평 및 향후 과제

- 1-3 여성의 출산율 증대 및 여성 일자리 확대 정책 관련하여 3개 세부과제 중 2개는 목적대로 추진되었으며, 1개 과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실적이 없으며, 하반기 과제로는 삭제 검토.
- 만 0~2세, 만5세 무상 보육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예산 확보 필요.

1-4. 여성가구주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 사회적 취약계층에 속하는 여성가구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이 필요함.
- 세부과제로는 취약 여성가구주 대상 직업 훈련과 취업 지원, 자립·자활 지원 확대, 안정적인 주거 환경 마련을 위한 전세금지원제도 등이 수립됨.

1) 추진 실적

사업내용	전반기 추진실적(단위: 백만원)	
	2011년	2012년
1-4-1. 취약여성가장에 대한 직업 훈련 및 취업 촉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훈련 - 결혼이민여성 대상 통역안내원 과정: 1개 과정 24명 - 취약계층 여성 직업훈련 · 사무오피스과정 1개 과정 · 48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 여성대상 직업교육훈련 실시 - 직업교육훈련생 취업지원 등 사후관리: 1개 과정 24명
예산액(집행액)	4	4
1-4-2. 자립 및 자활에 대한 지원확대차원에서 자활강화지원조례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지원조례 제정 계획 및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지원조례 제정: 2012년 1월
예산액(집행액)	비예산	비예산
1-4-3.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제주도 현실에 맞게 전세금지원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여성 주택전세자금 융자: 1가구·1백만원 - 저소득여성 주택자금 융자(연중) ○ 주택전세자금 융자: 3가구·9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여성 주택전세자금 융자: 1가구·3천만원 - 저소득여성 주택자금 융자(연중)
예산액(집행액)	15	20.5

2) 이행 점검 결과

- 사업의 타당성
- 세부과제 3개는 정책과제의 목표에 적합하게 수립되어 추진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음. 1-4-1 취약 여성가구주에 대한 직업 훈련 및 취업촉진 지

원 사업은 취약계층 여성 대상 직업훈련 교육을 실시함. 1-4-2 자립 및 자활에 대한 지원확대차원에서 ‘자활강화지원’ 조례는 2012년 1월에 제정되어 타당성 검증이 가능함.

- 1-4-3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제주특별자치도 현실에 맞게 전세금지원제도 개선 사업은 행정시와 도의 협조로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 여성 주택전세 자금 용자가 추진되고 있어서 타당성 검증이 가능함.

□ 사업의 합목적성(충실성)

- 정책과제 달성을 위해 세부사업이 추진체계와 추진방법 면에서 적절하게 수행됨. 1-4-2 세부과제는 자활지원 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저소득층 자활·자립기반 조성 도모에 기여하게 됨. 이는 단독조례 제정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조례 제정 시 자활지원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추진함.
- 조례의 주요 내용은 매년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광역자활센터에 관한 사항 등임.
- 1-4-3 세부과제와 관련하여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용자결정 및 자금요청(행정시) → 자금배정(도) → 용자시행(행정시)’ 등의 추진체계로 진행되고 있음.

□ 목표달성도

- 기 계획된 세부과제 3개는 연차계획에 맞게 추진되었으며, 조례 제정은 전반기에 종료된 사업임. 각 추진 부서별 실적보고는 명확하여 목표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고, 향후 지속사업으로 추진 예정임.

□ 총평 및 향후 과제

- 전반기 정책 추진 결과 1개는 종료되고 2개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함.
- 1-4-1 취약여성 대상 직업 훈련과 취업 기회 확대 사업은 주로 결혼이주여성, 한부모 등 경제위기 여성 대상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유사한 사업의 통합 추진을 위해 후반기에는 경제활동이나 인력개발 정책으로 통합하는 방안 검토.

1-5. 다양한 가족에 대한 통합적 인프라 구축

- 한국사회가 다양한 가족으로 구성된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을 배려하는 여성정책 추진이 필요함.
- 이에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1세대 단독 가구 등 다양한 가족들의 성격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함.
- 세부과제로는 여성·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및 양성평등적 문화 프로그램 조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인식개선 프로그램 구축,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등이 있음.

1) 추진 실적

사업내용	전반기 추진실적(단위: 백만원)	
	2011년	2012년
1-5-1. 여성·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및 양성평등적 문화프로그램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숲 학교, 가족야영대회 등 25개 프로그램 운영 지원 ○ 가족단위 문화활동 분위기 조성 및 세대간 소통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44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Family day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전 실·국,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 - 추진방법: 매주 수요일 「Family day」 운영, 정시퇴근 가족과 함께하는 건강하고 명랑한 가족문화 조성 - 추진실적: 51회 - 예산현황: 비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올레트래킹, 가족극 공연 등 23개 프로그램 운영 지원 ○ 가족단위 문화활동 분위기 조성 및 세대간 소통계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45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Family day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전 실·국,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 - 추진방법: 매주 수요일 「Family day」 운영, 정시퇴근 가족과 함께하는 건강하고 명랑한 가족문화 조성 - 추진실적: 49회 - 예산현황: 비예산
예산액(집행액)	12(44)	12.5(45)
1-5-2.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인식개선 프로그램 구축	-	-
예산액(집행액)	-	-
1-5-3. 다문화여성 사회통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12가정 ○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0가정 ○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4명
예산액(집행액)	15 (572)	16.2

2) 이행 점검 결과

□ 사업의 타당성

- 세부과제는 정책과제를 실천하는데 차질 없이 계획되어 있음. 사업 목적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과제로는 1-5-1 여성·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및 양성평등적 문화프로그램 조성으로 가족친화적 문화 및 여가프로그램 지원, 유연근무제 활성화, Family day 운영 등이 돋보임.
- 1-5-3 다문화 여성 사회통합지원 사업으로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등이 정확하게 추진됨.
- 1-5-2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의식개선 프로그램 구축은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함.

□ 사업의 합목적성(충실성)

- 세부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 방법, 추진 체계, 예산 등을 점검한 결과 사업의 충실성이 높다고 봄. 1-5-1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으로는 가족야영대회 등 25개 프로그램 지원,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설명회 개최(2회),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집중 육아를 위한 육아휴직제도를 장려함으로써 육아휴직자 발생부서에 대체인력 보충으로 업무공백 최소화, 육아휴직자·출산휴가자에 대한 업무대행 공무원 지정, 업무대행수당 월 5만원 지급(다수일 경우 월 3만원) 등 사업 내용에 맞게 추진됨.
- 1-5-3 다문화 가족 관련 교육과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 사업은 목적에 맞게 추진됨.

□ 목표달성도

- 기 계획된 세부과제들이 2년간 추진계획에 의해 적합하게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추진부서의 실적 보고도 명확함.
- 1-5-1 세부과제는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 인력은 정규직 8, 행정도우미 1, 업무대행지정 5, 육아휴직·출산휴가자 업무대행공무원 지정은 7건에 11명이 혜택을 봄. 이는 비예산으로 추진되었는데 향후 이 사업이 지속되기 위하여 예산 배정이 필요함.

□ 총평 및 향후 과제

- 3개의 세부과제 중 2개는 계획대로 추진되었으며, 1개 사업은 미추진됨.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정책을 실천하기 위하여 도민 의식 개선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점검한 후에 하반기 사업으로 반영 여부 검토 필요.
- 도서지역과 소외지역의 다문화가족 여성들을 위한 사회통합 서비스 기회 확대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 필요.

2 영역. 여성 경제 부문

2-1. 여성인력활용 기반 구축

- 제주지역의 여성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짐에 따라 여성들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여성근로자 차별방지, 여성 일자리 창출 활성화,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 여성고용평등 및 고용안정성과 관련된 정책 수행이 필요한 시점임.
- 여성의 고용이 더욱 활성화되고 이직률과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 취업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함.
- 세부과제로는 청년여성의 경력개발 지원,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 체계 구축, 청년여성층의 맞춤형 직업교육 지원 등이 있음.

1) 추진실적

사업내용	전반기 추진실적(단위: 백만원)	
	2011년	2012년
2-1-1. 청년여성의 경력개발 지원 예산액(집행액)	-	-
	50	10
2-1-2.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여성, 경력단절여성대상 직업교육훈련 실시 - 여성인력개발센터: 28개 과정 650명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0개 과정 24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여성, 경력단절여성대상 직업교육훈련 실시 - 여성인력개발센터: 28개 과정 650명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0개 과정 240명

사업내용	전반기 추진실적(단위: 백만원)	
	2011년	2012년
예산액(집행액)	80	50
2-1-3. 청년여성층의 맞춤형 직업	2-1-2. 과제와 동일하게 추진	2-1-2. 과제와 동일하게 추진
예산액(집행액)	70(303)	40(288)

2) 이행 점검 결과

□ 사업의 타당성

- 세부과제 2개가 상위 정책목표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음. 1개의 세부과제는 추진 여건이 맞지 않아 타당성 검증이 어려움.
- 사업 목표와 계획이 부합한 과제는 2-1-2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 체계 구축과 2-1-3 청년여성층의 맞춤형 직업훈련교육 지원 사업임. 두 사업은 통합하여 추진되었는데, 주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 훈련 사업이 이루어졌으며 2년간 74개 교육과정에 1,692명이 수혜를 보았음.

□ 사업의 합목적성(충실성)

- 세부과제 달성을 위해 추진방법, 추진체계, 예산 등을 점검함으로써 사업의 합목적성을 검증함. 2-1-2와 2-1-3 사업은 목적에 충실하게 추진되었으며, 국비와 도비의 지원으로 예산이 배정되었음.
- 2-1-2 사업은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직업훈련 교육프로그램운영으로 청년여성,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능력 향상 및 경제활동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직업교육훈련생 취업지원 등 사후관리에 주력하고 있음.

□ 목표달성도

- 기 추진된 세부과제들이 2년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추진부서의 실적 기록이 명확함.
- 다만 미추진된 2-1-1 청년여성의 경력개발 지원 사업은 2-1-2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될 수 있음.

□ 총평 및 향후 과제

- 2-1 여성인력활용 기반 구축 정책과제 중 2개의 세부과제는 계획대로 추진되었으며, 1개의 세부과제는 다른 과제와 중복 가능성이 있음.
- 여성인력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이 1곳(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집중됨으로써 교육과 취업의 연계 측면에서는 효율적이나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 해소에는 미흡하다고 봄.
- 3개의 세부과제는 통합하여 후반기에 추진 검토.

2-2. 여성근로자 차별 방지

1) 추진 실적

사업내용	전반기 추진실적(단위: 백만원)	
	2011년	2012년
2-2-1. 여성근로자 차별 예방교육	-	-
예산액(집행액)	30	30
2-2-2. 여성고용 모니터링제 운영	-	-
예산액(집행액)	30	20
2-2-3. 특수직 고용 여성 법적 보호	-	-
예산액(집행액)	50	-

2) 이행 점검 결과

- 2-2 정책과제는 여성근로자의 인권 향상을 위하여 직장 내 인권 강화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계획이 수립되었음.
- 여성근로자 차별 방지를 위해 예방교육, 여성고용 모니터링제 운영, 특수직 고용여성 법적 보호 등이 세부과제로 구성됨.
- 이행 점검 결과 여성근로자 차별방지 정책은 전혀 추진되지 못함. 이는 개인 기업자의 자율적 의지에 달려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임.

- 따라서 이 과제는 민간 영역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유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후반기 사업으로 지속적 추진 여부 검토 필요.

2-3. 여성일자리 창출 활성화

- 급변하는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부문에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함.
- 세부과제로는 여성기업인 창업지원 확충, 여성벤처기업 육성 지원, 여성사회적기업 지원 확충 등이 있음.

1) 추진 실적

사업내용	전반기 추진실적(단위: 백만원)	
	2011년	2012년
2-3-1. 여성기업인 창업 및 능력개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비즈니스 지원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기업 지원 ○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창업지원 ○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 운영 ○ 소상공인 창업대전 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2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회 200명 ○ 소상공인 창업대전 참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20명
예산액(집행액)	30(364)	(30)
2-3-2. 여성벤처기업 육성 지원	2-3-1. 여성기업인 창업 및 능력개발 지원 사업과 통합 운영	2-3-1. 여성기업인 창업 및 능력개발 지원 사업과 통합 운영
예산액(집행액)	-	50
2-3-3. 여성 사회적기업 지원 확충	○ 모성보호사업 지원: 2,175명	○ 모성보호사업 지원: 1,765명
예산액(집행액)	200(6,279)	200(5,408)

2) 이행 점검 결과

- 사업의 타당성
- 세부과제는 상위 정책과제 목표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추진됨. 2개의 세부과제인 여성기업인 창업 및 능력 개발 지원과 여성벤처기업 육성 지원은 동시에 추진됨.

- 대체적으로 여성비즈니스 지원센터와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여성 기업인의 창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창업과 경영 컨설팅을 지원함.
- 2-3-3 여성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은 타당성이 미흡함. 계획 당시의 사회적 여건과 2년 후 사회적기업 운영에 변화가 생김으로써 이 과제는 추진 여건이 조성되지 못했다고 봄.

사업의 합목적성(충실성)

- 세부과제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 방법, 추진 체계, 예산 등을 점검함으로써 사업의 충실도 점검이 가능함. 2개의 과제는 426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됨.
- 여성 기업인 창업과 육성 지원을 위해 경영·기술 지원 등 사업 내용이 충실히 반영됨.
- 2-3-1 여성기업인 창업 및 능력개발 지원사업과 2-3-2 여성벤처기업 육성 지원은 통합 운영되어서 공통 실적으로 정리함.

목표달성도

- 기 계획된 세부과제들이 전반기 추진 계획을 준수하고, 100% 목표를 달성함.

총평 및 향후 과제

- 2-3 여성일자리 창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결과 2건은 목표에 적합하게 추진되고, 1건은 추진되지 못함.
- 2-3-3 여성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은 사회적 기업 재정 지원 기준에 따라 가능한 사업으로 여성에 국한하여 특별 지원하기 어려운 여건임. 후반기 과제 이행시 삭제 검토 필요.

2-4. 여성고용의 사회적 지원체제 구축

-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 체제에서 고용 안전을 위해 사회적 지원체제 구축이 필요함.
- 세부과제로는 가족친화기업 육성 및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충 등이 있음.

1) 추진실적

사업내용	전반기 추진실적(단위: 백만원)	
	2011년	2012년
2-4-1. 가족친화기업 육성 및 지원	-	-
예산액(집행액)	40	1,000
2-4-2.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운영비 지원: 64개소 · 2,856백만원 - 지원기준: 이용아동 및 상근종사자 수에 따라 월 200만원~430만원 차등지원 ○ 거점형 및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지원: 10개소 · 107백만원(2011년 신규사업) - 지원기준: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따라 월 70~100만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운영비 지원: 67개소 · 3,169백만원 - 지원기준: 이용아동 및 상근종사자 수에 따라 월 200만원~430만원 차등지원 ○ 거점형 및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지원: 6개소 · 65백만원 ○ 토요일운영 지역아동센터 지원: 30개소 · 120백만원
예산액(집행액)	2,700(2,963)	2,800(3,354)

2) 이행 점검 결과

사업의 타당성

- 세부과제는 상위 정책과제 목표 추진에 적합하게 설정되어 있음. 사업 목표와 계획이 구체적으로 추진된 과제는 2-4-2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충 사업으로 저소득층 아동의 보호·교육·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종합적인 아동 보호서비스를 제공함.
- 2-4-1 가족친화기업 육성 및 지원은 실태조사와 발굴에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되지 못함. 따라서 타당성 검증이 어려움.

사업의 합목적성(충실성)

- 세부과제 달성을 위한 사업 추진방법, 추진체계, 예산 등을 통해 합목적성을 점검함.
- 2-4-2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충 사업 선정 기준을 보면 운영기간 최소 3년 이상, 신고정원 29인 이상 시설과 별도 프로그램(다문화, 새터민 등 특수아동 전용, 초등과 중·고등 분리 운영 등) 운영 실적이 있는 시설에 지원함.
- 지역아동센터 기본 운영비 지원 기준을 보면 이용 아동 수 기준 도시 9인 이하는 3,560천원, 읍면 19인 이하·도시 29인 이하는 3,750천원, 읍면 29인 이

하는 3,950천원, 도시·읍면 30인 이상은 4,660천원으로 차등 지원되고 있음.

□ 목표달성도

○ 기 계획된 세부과제는 전반기 2년간 목표에 맞게 추진되고 100% 목표를 달성함. 추진부서의 관리와 실적보고도 충실함.

□ 총평 및 향후 과제

- 후반기 사업 추진 시에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현실 수요를 반영하여 집행이 필요함.
- 2-4-1 가족친화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은 후반기 추진 여부 검토 필요.

2-5. 여성고용평등 및 고용안정성 제고

-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받고, 직장 내에서 차별과 부당한 대우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여성고용평등 정책을 수립함.
- 세부추진과제로는 여성고용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고용할당제, 여성친화적 고용환경 조성, 여성고용네트워크 구축 등이 설정됨.

1) 추진실적

사업내용	전반기 추진실적(단위: 백만원)	
	2011년	2012년
2-5-1. 여성고용할당제	-	-
예산액(집행액)	-	50
2-5-2. 여성친화적 고용환경 조성	○ 모성보호사업 - 산전후 휴가급여 지원 - 육아휴직 급여 지원	○ 모성보호사업 - 산전후 휴가: 통상임금 기준 최대 월 1,350천원 - 육아휴직 통상임금의 40%(최소 월 500천원~월 1,000천원) ○ 예산액: 비예산 - 국비 100% 형태이나 중앙에서 고용보험기금으로 집행
예산액(집행액)	90	1,040
2-5-3. 여성 고용 네트워크 구축	-	-
예산액(집행액)	5	25

2) 이행 점검 결과

사업의 타당성

- 세부과제는 정책과제의 목표에 부합하게 제시되어 있음. 목표에 적합하게 추진된 과제로는 2-5-2 여성친화적 고용환경 조성 사업으로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 육아휴직 급여 지원 등이 추진됨.
- 2-5-1 여성고용할당제와 2-5-3 여성고용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추진되지 않음.

사업의 합목적성(충실성)

- 세부과제 달성을 위해 추진방법, 추진체계, 예산 등의 집행 정도를 점검함.
- 2-5-2 모성보호사업은 근로자의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지원 등 모성보호 지원을 통해 여성친화적 고용 환경 조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이 이루어짐. 지원 대상을 보면 피보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에 해당됨. 추진 절차로는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부여(사업주) → 산전 후 휴가자 및 육아휴직자지원금신청 → 지원금 지급(센터)의 과정을 거침. 예산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집행되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됨.

목표달성도

- 기 계획된 세부과제 1건은 2년간 계획대로 달성되었으며, 2건은 민간기업에 요청해야 하는 사업으로 여성정책 과제 달성에 미흡함.

총평 및 향후 과제

- 2-5 여성고용평등 및 고용안정성 제고 정책 관련 1건은 후반기에도 지속사업으로 유지 필요. 미추진된 2건은 후반기 추진 여부 검토 필요.

3 영역. 여성 인력개발 부문

3-1.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인력개발 기반 구축

1) 추진 실적

사업내용	전반기 추진실적(단위: 백만원)	
	2011년	2012년
3-1-1. 지역 여성의 인적자원 개발정책 수립	-	-
예산액(집행액)	-	-
3-1-2.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인력개발 관련 기관의 네트워크 구축	-	-
예산액(집행액)	11	5
3-1-3.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인력개발 기관 기능 정비 및 지원 확대	-	-
예산액(집행액)	300	300

2) 이행 점검 결과

- 제주특별자치도 실정에 적합한 여성인력 활용을 위해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지역 여성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수립,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인력개발 관련 기관의 네트워크 구축,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인력개발 기관 기능 정비 및 지원 확대’ 등을 계획했음.
- 전반기 2년간 이행 점검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인력개발 기반 구축’ 과제는 추진되지 못함으로써 후반기에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추진 여부 검토 필요. 특히 여성인력 기반 구축 사업은 경제활동 영역과 중복되므로 후반기에는 영역을 통합하여 사업 수립이 필요함.
- 다만 제주지역 소재 여성인력 개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은 필요하므로 향후 사업 조정 후 추진 필요.

3-2. 여성 재직자의 전문성 개발 및 심화

1) 추진 실적

사업내용	전반기 추진실적(단위: 백만원)	
	2011년	2012년
3-2-1. 재직여성인력의 핵심역량 및 자발적 직업능력 개발	-	-
예산액(집행액)	40	40
3-2-2.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개발 및 육성	-	-
예산액(집행액)	80	80
3-2-3. 여성경제인 육성 및 직업능력 개발	-	-
예산액(집행액)	40	40

2) 이행 점검 결과

- 여성 재직자의 직무능력을 개발하고 경력 개발 기회 확대를 통해 핵심 역량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세부과제로 ‘재직여성인력의 핵심역량 및 자발적 직업능력 개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개발 및 육성, 여성경제인 육성 및 직업능력 개발’ 등을 계획함.
- 전반기 2년간 추진실적을 이행 점검한 결과 3-2 여성 재직자의 전문성 개발 및 심화 과제는 세부과제 추진이 되지 않음. 즉 여성경제인 육성은 사회적 여건에 좌우되므로 정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경력단절 여성 대상 직업능력개발은 2영역인 여성 경제 부문에서 추진되었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는 추진 실적을 검증하기가 어려움.
- 이런 점을 고려하여 후반기에는 유사한 정책과제와 통합하여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함.

3-3.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차세대여성(청소년 및 대학생)의 능력 개발

- 차세대 여성의 능력 개발을 위해 여대생커리어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차세대여성 취업전담부서 운영을 통해 진로지도와 직업 연계에 목적이 있음.

- 세부과제로는 청소년 및 여대생의 직업육구조사·진로지도 강화, 여대생 취업 지원 및 인턴제 활성화, 해외취업 능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등이 있음.

1) 추진 실적

사업내용	전반기 추진실적(단위: 백만원)	
	2011년	2012년
3-3-1. 청소년(girl) 및 여대생의 직업육구조사 및 진로지도 강화	○ 여고생 WISE연구캠프 지원 - 6회, 20명 ○ 직업진로지도자료 개발 보급 - 자료집 개발 보급 2,500부	○ 여고생 WISE연구캠프 지원 - 28개 과정, 655명 ○ 직업진로지도자료 개발 보급 - 8개과정 192명
예산액(집행액)	60	60
3-3-2. 여대생 취업 지원 및 인턴제 활성화	○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 지원 운영 - 7,460명 참여	○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 지원 운영 - 7,600명 참여
예산액(집행액)	120	120
3-3-3. 해외취업능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
예산액(집행액)	100	100

2) 이행 점검 결과

사업의 타당성

- 세부과제들이 대체적으로 상위 정책 목표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음. 사업 목표와 계획에 맞게 추진된 과제로는 3-3-1 청소년(girl) 및 여대생의 직업육구조사 및 진로지도강화, 3-3-2 여대생 취업지원 및 인턴제 활성화 등임.
- 3-3-3 해외취업능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은 2년간 추진 기회가 부족했다고 봄.

사업의 합목적성(충실성)

- 세부과제 달성을 위해 사업 추진 방법과 추진체계, 예산 등을 통해 합목적성을 점검함.

- 3-3-1 과제로는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진로 교육 및 학습자료 개발 보급, 직업기초 능력 신장을 위한 직업진로지도 자료 제작 보급에 역점을 두고 있음. 이 과제의 추진체계를 보면 ‘사업계획수립(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 사업계획 검토(도, 산학협력단) → 사업계획서 심사(산학협력단) → 보조금신청(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 보조금 교부(도) → 사업시행’으로 10개월 동안 추진됨.

□ 목표달성도

- 기 계획된 세부과제들이 2년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목표를 달성하였고, 수혜자도 증가하였음.

□ 총평 및 향후 과제

- 3-3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차세대여성(청소년 및 대학생)의 능력 개발 관련 세부과제로 2개 추진, 1개 미추진 사업임.
- 해외취업 능력 개발을 위한 세부과제는 다른 부서에서 해외인턴십제도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하반기 지속 사업으로 삭제 검토 필요.

3-4. 여성의 취업능력 개발

-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 직업능력 개발 기회 확대, 사회적 취약계층(한부모, 미혼모 등), 여성노인 등 다양한 여성의 취업 연계 등을 목적함.
- 세부과제로는 한부모·미혼모 등 경제위기 여성에 대한 자립 및 취업 지원 교육,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커리어코칭 지원, 여성노인 능력 개발 교육 실시 및 지원 등이 있음.

1) 추진 실적

사업내용	전반기 추진실적(단위: 백만원)	
	2011년	2012년
3-4-1. 결혼이주여성, 한부모 등 경제위기 여성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 여성취약계층에 직업훈련 - 2개 과정, 48명	○ 여성취약계층에 직업훈련 - 1개 과정, 24명
예산액(집행액)	80(59,080)	80(23,800)

사업내용	전반기 추진실적(단위: 백만원)	
	2011년	2012년
3-4-2.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지원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2개소 (제주시1, 서귀포시1) ○ 일가정양립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사부담완화: 249명(밀반찬 145명, 요리교실 104명) -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 : 협약 77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2개소 (제주시1, 서귀포시1)
예산액(집행액)	500	500
3-4-3. 여성노인 능력개발 교육실시 및 지원	-	-
예산액(집행액)	50	60

2) 이행 점검 결과

□ 사업의 타당성

- 세부과제들이 상위 정책과제 목표 추진에 적합하게 구성됨. 3-4-1 결혼이주여성, 한부모 등 경제위기여성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사업은 주로 결혼이주여성 직업 훈련에 집중됨.
- 3-4-2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지원 인프라 구축 사업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사업과 중복됨. 3-4-3 여성노인 능력개발 교육실시 및 지원 사업은 미추진됨. 여성노인 대상 사업은 노인정책과 연관되어 다른 부서에서 추진함.

□ 사업의 합목적성(충실성)

- 세부과제 사업의 충실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 추진 방법과 추진체계, 예산 등으로 점검함. 3-4-1 여성취약계층에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을 위해 관광통역안내원과정, 결혼이주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 직업훈련 지원이 추진됨.
- 3-4-2 세부과제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위탁 사업으로 대체됨. 즉 취업실적을 보면 1,228명이 이수했으며, 새일여성인턴에 63명, 찾아가는 취업설계에 161건 3,545명, 집단상담프로그램에 447명, 직업교육훈련에 8개 과정 168명이 수료하여 직업훈련 교육을 받음.

□ 목표달성도

○ 계획대로 추진된 세부과제들은 2년간 투자와 관리가 이루어졌음. 사업추진 절차에 맞게 추진 결과가 제시되어 계획 대비 목표가 달성됨.

□ 총평 및 향후 과제

○ 3-4 여성의 취업능력 개발 과제는 추진내용에 적합하게 실행되었으며, 후반 기에도 지속사업으로 필요함.

○ 3-4-3 여성노인 능력개발 교육 실시 및 지원 사업은 다른 부서의 사업과 중복 여부 확인 후 삭제 검토.

3-5. 글로벌 여성리더십 개발

○ 글로벌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여성리더십 개발 기회 확대가 필요함. 특히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다문화사회에 따른 국제시민교육 등이 확대되어야 함.

○ 세부과제로는 글로벌 여성리더십 개발 기회 확대, 여성지도자 교육 강화, 여성의 공동체의식 강화 교육 확대 등이 있음.

1) 추진 실적

사업내용	전반기 추진실적(단위: 백만원)	
	2011년	2012년
3-5-1. 글로벌 여성 리더십 개발기회 확대	-	-
예산액(집행액)	-	-
3-5-2. 여성지도자 교육 강화	○ 양성평등의식교육: 5회 · 530명 ○ 제주여성사교육: 5회 · 498명	○ 양성평등의식교육: 2회 · 390명 ○ 제주여성사교육: 2회 · 1930명
예산액(집행액)	1.5	1.5
3-5-3. 여성의 공동체 의식 강화교육 확대	○ 여성자원봉사자 역량강화 교육 : 2회 · 782명 ○ 차세대여성리더십 향상교육 : 1회 · 48명	○ 여성자원봉사자 역량강화 교육 : 1회 · 370명 ○ 차세대여성리더십 향상교육 : 1회 · 30명 ○ 다문화가정대상 제주어교육 : 1회 · 10명
예산액(집행액)	4.5	5.5

2) 이행 점검 결과

□ 사업의 타당성

- 세부과제들이 상위 정책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적합하게 구성됨. 사업목표와 계획에 맞게 추진된 과제로는 3-5-2 여성지도자교육 강화, 3-5-3 여성의 공동체의식 강화교육 확대 등이 있음.
- 여성지도자(제주지역 여성단체 중심)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제주여성사교육을 통해 제주여성들의 문화유산을 재조명하는 기회를 제공함.

□ 사업의 합목적성(충실성)

- 세부과제의 목적에 맞는 수행 결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 추진 방법, 추진 체계, 예산 등을 점검함.
- 3-5-2 여성지도자교육 강화 실적을 보면 양성평등의식교육이 5회 · 530명이 이수했고, 제주여성사교육은 5회 · 498명이 이수했음.
- 2개 세부과제는 계획대로 추진되고, 1개 미추진 과제인 3-5-1 글로벌 여성리더십 개발기회 확대는 다른 과제와 중복됨.

□ 목표달성도

- 기 계획된 세부과제들이 2년간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추진부서의 계획과 실적이 제대로 보고됨.

□ 총평 및 향후 과제

- 3-5 글로벌 여성리더십 개발 과제는 시민의식 교육과 병행하여 후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4영역 여성 사회 · 문화로 이동하여 여성리더십 역량 강화에 포함하는 것이 효율적임.

4 영역. 여성 사회·문화 부문

4-1. 여성단체 역량강화

1) 추진 실적

사업내용	전반기 추진실적(단위: 백만원)	
	2011년	2012년
4-1-1. 여성단체별 정체성 확립	-	-
예산액(집행액)	10	13
4-1-2. 여성의 정치참여의식 강화	-	-
예산액(집행액)	8	8
4-1-3. 지방자치단체의 여성 정책 모니터링 강화	-	-
예산액(집행액)	6	7

2) 이행 점검 결과

- 여성단체 간 연대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한 역량 강화와 여성들의 리더십 각성과 과제를 진단하고 향후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
- 세부과제로는 여성단체별 정체성 확립, 여성의 정치참여의식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여성 정책 모니터링 강화 등이 계획되었으나 추진되지 못함.
- 이행점검 결과 4-1-1 여성단체별 정체성 확립 사업은 3-5-2 여성지도자 교육 강화 사업으로 추진되어 유사사업으로 평가됨. 4-1-2 여성의 정치참여의식 강화 사업은 이를 추진하기에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봄.
- 따라서 4-1 정책과제는 사업명을 수정·보완하여 후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4-2. 여성자원봉사자의 사회참여 활성화

- 여성들의 사회 참여 기회 제공 및 소외계층을 따뜻하게 품는 자발적 헌신의식의 위대함을 알리고, 여성자원봉사자의 위상을 강화하여 행동하는 여성으

로서 나눔과 베품의 철학을 실천할 수 있는 토양 마련을 목적으로 함.

- 세부과제로는 여성자율 소모임 및 참여활성화, 여성자원봉사자 복지지원 강화, 여성자원봉사자의 적극적 활용 등이 있음.

1) 추진 실적

사업내용	전반기 추진실적(단위: 백만원)	
	2011년	2012년
4-2-1. 여성 자율 소모임 및 시민 참여 활성화	-	-
예산액(집행액)	3	3
4-2-2. 여성자원봉사자 복지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여성자원활동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인원: 37개팀, 450명 - 봉사실적: 459회 4,921명 ○ 자원봉사자교육: 소양 등 역량 강화 교육, 연 2회 ○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450명(1인당 3,5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자교육(소양 등 역량 강화교육, 연 2회) ○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350명, 1인당 3,500원)
예산액(집행액)	7	7
4-2-3. 여성자원봉사자의 적극적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여성자원활동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인원: 37개팀, 450명 - 봉사실적: 659회 4,921명 ○ 사회복지시설 매일 방문 봉사 활동 실시: 27개소 ○ 독거노인, 노숙자, 장애인 급식 제공(3,000여명, 월1회, 시청어울림마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 손으로 함께 만드는 녹색세상프로그램 운영 ○ 사회복지시설 매일 방문 봉사 활동 실시: 25개소 ○ 독거노인, 노숙자, 장애인 급식 제공(3,000여명, 월1회, 시청어울림마당)
예산액(집행액)	5	6

2) 이행 점검 결과

사업의 타당성

- 세부과제들이 전반적으로 사업의 상위 목표에 적합하게 하위목표가 설정되어 있음. 사업 목표와 계획이 제대로 추진된 과제는 4-2-2 여성자원봉사자 복지지원 강화로, 제주여성자원봉사자 교육 및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등을 추진하였음.

○ 4-2-3 여성자원봉사자의 적극적 활용 사업은 녹색장터 운영, 사회복지시설 매일 방문 봉사활동, 독거노인·노숙자·장애인 급식제공 등을 추진하여 타당성 검증이 가능함.

□ 사업의 합목적성(충실성)

○ 세부과제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 방법과 추진체계, 예산 등을 통해 점검함.

4-2-2 여성자원봉사자 복지지원강화 사업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여성자원활동센터 등의 추진체계가 명확하고, 자원봉사 교육 및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등을 통해 추진방법 확인이 가능함. 예산항목도 적절히 집행됨.

○ 여성자원봉사자의 활동장소는 36개소(사회복지시설 27개소, 결연가구 9가구)이며, 녹색체험활동으로 희망 새싹 튀우기(녹색장터 운영), 연 2회 추진, 손끝에 담아내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등의 봉사실적이 있음.

○ 4-2-3 여성자원봉사자의 적극적 활동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속 제주여성자원활동센터라는 추진체계가 명확하고, 녹색장터운영,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독거노인 등 급식 제공 등의 추진 방법 확인이 가능함. 예산 집행 항목도 적절함.

○ 2건의 세부과제는 사업의 충실성이 높으나 4-2-1 여성자율 소모임 및 시민참여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체계 및 추진방법이 미흡함.

□ 목표달성도

○ 기 계획된 세부과제들이 2년간 연차적으로 세부계획에 적합하게 목표를 달성하였고, 사업 추진 부서의 실적 보고는 적절하며, 예산 집행도 적절함. 4-2-1 여성자율 소모임 및 시민참여 활성화 사업은 후반기 지속 추진 여부 점검이 필요함.

□ 총평 및 향후 과제

○ 4-2 여성자원봉사자의 사회참여 활성화 관련 3개의 세부과제 중 1개는 미추진이고, 2개는 계획대로 추진됨. 4-2-1 여성자율 소모임 및 시민참여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 및 추진체계와 추진방법을 점검하여 후반기 추진 여부 검토.

4-3. 여성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 여성문화예술인들의 활동 및 교류를 지원하고, 나아가 여성 문화예술정책 추진에 필요한 지표 개발과 사회적 취약계층 여성 예술인 발굴 지원을 목적으로 함.
- 세부과제로는 다양한 문화의 이해 증진을 위한 문화 교류 확대, 여성 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 등이 있음.

1) 추진 실적

사업내용	전반기 추진실적 (단위: 백만원)	
	2011년	2012년
4-3-1. 다양한 문화의 이해증진을 위한 문화교류 활동	○ 설문대 문화의 날 운영 8회 8,640명 참여	○ 설문대 문화의 날 운영 9,000명 참여 - 제주지역의 문화예술인(단체)들의 국내·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예산액(집행액)	13	15
4-3-2. 여성 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	-	-
예산액(집행액)	36	6

2) 이행 점검 결과

- 사업의 타당성
 - 세부과제들 중 4-3-1 사업은 상위 목표에 적합한 하위목표가 설정되어 있음. 사업 목표와 계획이 제대로 추진된 과제는 4-3-1 다양한 문화의 이해증진을 위한 문화 교류 활동으로 설문대문화의 날 운영 등을 추진하여 타당성 검증이 가능함.
- 사업의 합목적성(충실성)
 - 세부과제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 방법과 추진체계, 예산 등을 통해 점검함. 4-3-1 다양한 문화의 이해 증진을 위한 문화교류 확대 사업은 설문대여성문

화센터라는 추진체계가 명확하고, ‘설문대문화의 날’이라는 축제와 강연, 직거래 장터, 공연, 체험이라는 추진방법이 확인 가능함. 예산 집행 항목도 적절함.

- 1건의 세부과제는 사업의 충실성이 높으나 4-3-2 여성 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 사업은 추진되지 못함.

□ 목표달성도

- 4-3-1 다양한 문화의 이해 증진을 위한 문화교류 확대 사업은 2년간 연차적으로 세부계획에 적합하게 목표를 달성하였고, 사업 추진 부서의 실적 보고는 적절함.
- 다만 4-3-2 여성 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에 대해서는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파악하기 어려움.

□ 총평 및 향후 과제

- 4-3 여성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관련 2개의 세부과제 중 1개는 계획대로 추진됨. 4-3-2 여성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현황조사는 여성 문화예술인 정책과 관련하여 기초 조사이고, 사회적 취약 계층 여성 문화예술인 발굴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우선 조사가 필요함. 또한 지역 문화예술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관련 단체와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함.

4-4. 제주여성문화 정립 및 선양

- 제주여성문화에 대한 세계화 작업 및 홍보활동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제주여성문화와 관련된 구술자료 수집 및 해녀문화의 체계적 정립 등을 통해 제주여성문화자원 구축을 목적으로 함.
- 세부과제로는 여성문화 자료 구축, 여성문화유산 발굴 및 보급, 해녀문화 정립 및 선양 확대 등이 있음.

1) 추진 실적

사업내용	전반기 추진실적(단위: 백만원)	
	2011년	2012년
4-4-1. 여성문화 자료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내외 여성자료 소장자 및 여성 역사문화전시관 등 - 여성역사문화 자료 기증 안내 및 홍보 - 여성사 자료구입 공고 및 구입 - 여성작가 미술품 구입 심사 및 매입 - 기증증서 발급, 기증 자료 정리, 자료 훈증소독, 자료 등록 및 DB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내·외 여성자료 소장자 및 여성역사문화전시관 등 - 수집수량 : 총 50점 - 여성역사문화전시관 자료보완 - 현지자료조사, 자료기증, 자료구입, 전시관 보완 실시
예산액(집행액)	60	110
4-4-2. 여성문화유산 발굴 및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문화유산 발굴, 보전, 전시 - 여성문화유산 발굴과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전시 개최(연 6회)와 전시 자료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문화유산 발굴과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한 전시 개최(연 2회)와 전시 자료 발간 ○ 연간 여성문화유산 발굴 및 보급 추진 : 연중(기획전시 5회)
예산액(집행액)	41	21
4-4-3. 해녀문화 정립 및 선양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해녀 세계화 5개년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 수립 및 전승보존위원회 구성 ○ 제4회 제주해녀축제 개최 ○ 유네스코 등재 추진 - 한국무형유산 국가목록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해녀 UNESCO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진행 - 유네스코 등재용 영상 및 신청서 작성 완료 ○ 해녀문화센터 건립 준비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2012. 08.) ○ 해녀생태박물관 조성 용역 (2012. 07.~2013. 01.) ○ 해녀문화센터 건립 - 해녀문화센터 건립공사 발주 (2013. 12. 완공 예정)
예산액(집행액)	30	30

2) 이행 점검 결과

사업의 타당성

○ 세부과제들이 전반적으로 사업의 상위 목표에 적합한 하위목표가 설정되어 있음. 사업 목표와 계획이 제대로 추진된 과제는 4-4-1 여성문화 자료 구축으로

도내의 여성역사자료 기증안내 홍보 및 조사, 구입, DB 등을 추진하였음.

- 4-4-2 여성문화유산 발굴 및 보급 사업은 여성문화유산 발굴과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연 6회 전시 개최와 전시자료 등을 발간, 여성작가 및 예술 단체 발굴 지원, 여성역사문화전시관 보완공사를 위한 의견 수렴 회의 개최 등을 추진하였음.
- 4-4-3 해녀문화 정립 및 선양 확대 사업은 제주해녀 세계화 5개년 기본 계획 작성,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UNESCO)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 진행으로 제주해녀가 한국무형유산 국가목록에 선정(2012. 01.)되었고, 해녀축제 개최 등을 추진하여 타당성이 가능함.
- 매년 개최되고 있는 해녀축제 프로그램으로는 물질대회, 테왁수영대회, 불턱 가요제 등이 있고, 제주도내 해녀, 출가해녀, 일본아마, 관광객 등 2만 5천여 명이 참가했음. 2012년 현재 제주도내 해녀는 4,800여 명으로 집계됨.

□ 사업의 합목적성(충실성)

- 세부과제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 방법과 추진체계, 예산 등을 통해 점검함. 4-4-1 여성문화자료 구축 사업은 설문대여성문화센터라는 추진체계가 명확하고, '홍보→수집→구축→전시'라는 추진방법이 확인 가능함. 집행된 예산의 항목도 적절함.
- 4-4-2 여성문화유산 발굴 및 보급 사업은 설문대여성문화센터라는 추진체계가 명확하고, 전시 및 전시자료 발간이라는 추진방법이 확인 가능함. 집행된 예산 항목도 적절함.
- 4-4-3 해녀문화 정립 및 선양 확대 사업은 해양개발과라는 추진체계가 명확하고, 기본계획수립, 축제,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라는 추진방법이 확인 가능함. 예산 집행 항목도 적절함.

□ 목표달성도

- 기 계획된 세부과제들이 2년간 연차적으로 세부계획에 적합하게 목표를 달성하였고, 사업 추진 부서의 실적 보고는 적절함. 4-4-1 여성문화자료 구축 및 4-4-2 여성문화유산 발굴 및 보급 관련 예산의 집행액이 다소 미흡하나, 계획 대비 실적은 초과달성함.

□ 총평 및 향후 과제

- 4-4 제주여성문화 정립 및 선양 관련 3개 세부과제 모두 계획대로 추진됨. 다만, 여성자료 소장자 파악 및 자료 기증 홍보가 더욱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자료 수집 및 보관문제, 여성역사문화전시관 자료 보관을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이 설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4-5. 김만덕 나눔 정신 확산

- 김만덕의 애민정신을 통한 제주여성의 우수성을 선양하고 김만덕의 나눔과 베풀 정신을 여러 세대로 확산하기 위한 기념관 건립 및 자료 구축을 목적으로 함.
- 세부과제로는 김만덕 선양사업과 김만덕 기념관 건립 등이 있음.

1) 추진 실적

사업내용	전반기 추진실적(단위: 백만원)	
	2011년	2012년
4-5-1. 김만덕 선양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눔문화 실천 확산을 위한 범도민 교육 실시 ○ 초·중·고 학생 대상 김만덕 교육과정 등 운영 ○ 김만덕 위상 제고를 위한 조례 개정 ○ 제32회 만덕제 봉행 및 김만덕상 시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눔문화 실천 확산을 위한 범도민 교육 실시: 학생 및 일반도민 ○ 제33회 만덕제 봉행 및 김만덕상 시상 ○ 김만덕 추모 200주기 사업 추진 - 국제학술세미나, 나눔쌀 쌓기, 청소년을 위한 사업 등
예산액(집행액)	15	15
4-5-2. 김만덕기념관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만덕기념관 건립 추진 - 사업비: 141억 원 (국비 40, 도비 101) ※ 부지매입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만덕기념관 건립 추진
예산액(집행액)	35	-

2) 이행 점검 결과

사업의 타당성

- 세부과제들이 전반적으로 사업의 상위 목표에 적합한 하위 목표가 설정되어 있음. 4-5-1 김만덕 선양 사업은 범도민 교육 실시, 김만덕 위상 제고 조례 개정, 만덕제 봉행 및 만덕상 시상, 추모사업 등을 추진하였음.
- 4-5-2 김만덕기념관 건립 사업은 건립시기(2010년~2014년), 부지 선정(제주시 건입동 일대)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타당성 검증이 가능함.

사업의 합목적성(충실성)

- 세부과제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 방법과 추진체계, 예산 등을 통해 점검함. 4-5-1 김만덕 선양사업은 여성가족정책과라는 추진체계가 명확하고, 추모사업과 기념관 건립, 조례 개정이라는 추진방법이 확인 가능함. 예산 집행 항목도 적절함.
- 4-5-2 김만덕기념관 건립 사업은 여성가족정책과라는 추진체계와 예산 집행 항목이 명확함.

목표달성도

- 4-5-1 김만덕 선양사업은 계획된 세부과제들이 2년간 연차적으로 세부계획에 적합하게 목표를 달성하였고, 사업 추진 부서의 실적 보고는 적절함.
- 4-5-2 김만덕기념관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부지 선정, 부지매입비 확보 및 매입·보상(지방비) 등의 목표가 달성됨.

총평 및 향후 과제

- 4-5 김만덕 나눔 정신 확산 관련 2개의 세부과제 중 1개는 계획대로 추진됨. 향후 4-5-2 김만덕기념관 건립과 관련하여 추진과정 및 자료 수집,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후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임.

5 영역. 여성 인권 부문

5-1. 여성인권에 대한 사회의식 제고

- 여성인권정책의 실효성 증대를 위한 기반 마련으로 여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통합적 인권교육 및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여성 및 아동에 대한 폭력 방지 종합적인 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함.
- 세부과제로는 통합적 여성인권교육으로 여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여성에 대한 폭력범죄의 신고 확산을 위한 캠페인, 여성과 아동폭력 예방 조례 제정,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과 실질적 운영 등이 있음.

1) 추진 실적

사업내용	전반기 추진실적(단위: 백만원)	
	2011년	2012년
5-1-1. 통합적 여성인권교육으로 여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여성폭력 예방교육: 32회 · 758명 · 3,200천원 ○ 역할극을 활용한 성폭력 예방교육: 12개교 3,500명 ○ 평화의 섬 안전지킴이 프로젝트 (272명) ○ 직원대상 성폭력 · 성매매예방교육 (33회) ○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25명 · 11,2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 찾아가는 여성폭력 예방교육
예산액(집행액)	12(15)	12
5-1-2. 여성에 대한 폭력범죄의 신고 확산을 위한 캠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추방의 날 운영 및 성폭력예방 캠페인전개(200명) ○ 여성주간 여성폭력예방 캠페인 (400명) ○ 여성폭력 추방 캠페인(200여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폭력 추방의 날 행사(1회) ○ 아동학대 추방의 날 운영 및 성폭력예방캠페인 전개(1회) ○ 여성주간 여성폭력예방 캠페인 (1회) ○ 여성폭력 예방캠페인 전개(2회)
예산액(집행액)	13	13
5-1-3. 여성과 아동 폭력예방 조례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 지원 조례 제정(2011. 10. 12.) 	2011년 완료 과제

사업내용	전반기 추진실적(단위: 백만원)	
	2011년	2012년
예산액(집행액)	비예산	-
5-1-4.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과 실질적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아동 보호 지역연대 협의회 운영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폭력 예방캠페인 전개: 2회 - 협의회 개최: 1회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추진체계 운영 활성화 및 연계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법률 서비스 24시간 제공 및 보호 - 여성폭력피해 보호 관련시설 : 14개소 - 위기대책 전담상담원 지정 운영 : 7개소 ○ 경찰청 및 전문기관 간 지역공동 안전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705개소 - 집배원수호천사 운영: 172명 - 태권브이수호천사 운영: 74명 - 배움터 지킴이 운영: 184개교 ○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 등 방범용 CCTV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아동 보호 지역연대 협의회 운영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폭력 예방캠페인 전개: 2회 - 협의회 개최: 2회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추진체계 운영 활성화 및 연계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법률 서비스 24시간 제공 및 보호 - 여성폭력피해 보호 관련시설 : 14개소 - 위기대책 전담상담원 지정 운영 : 7개소 ○ 경찰청 및 전문기관 간 지역공동 안전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705개소 - 집배원수호천사 운영: 172명 - 태권브이수호천사 운영: 74명 - 배움터 지킴이 운영: 184개교 ○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 등 방범용 CCTV 설치 : 110개소·523개소
예산액(집행액)	5	5

2) 이행 점검 결과

□ 사업의 타당성

- 세부과제들이 전반적으로 사업의 상위 목표에 적합한 하위목표가 설정되어 있음. 5-1-1 통합적 여성인권교육으로 여성폭력 예방 교육 강화 사업을 보면 찾아가는 여성폭력 예방교육, 역할극을 활용한 성폭력 예방교육, 평화의 섬 안전지킴이 프로젝트, 직원대상 성폭력·성매매예방교육,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등이 추진됨.

- 찾아가는 여성폭력 예방교육 대상은 학생, 이주여성 등이고,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강사활용 현지 예방교육이 진행되었음. 역할극을 활용한 성폭력 예방교육은 도내 11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성폭력 예방 역할극단 순회공연을 실시함.
 - 평화의 섬 안전지킴이 프로젝트는 도내 거주 군부대 대원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 등으로 추진됨.
 - 직원대상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은 도 소속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도 정영상 TV를 통한 예방교육(매월 마지막 주 월수금 13:00~13:30)을 진행함.
 -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은 여성폭력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음.
 - 5-1-2 여성에 대한 폭력범죄의 신고 확산을 위한 캠페인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 운영 및 성폭력 예방 캠페인 전개, 여성폭력예방 예·추방 캠페인 등을 추진하였음.
 - 5-1-3 여성과 아동 폭력예방 조례 제정 사업은 2011년 10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음.
 - 5-1-4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과 실질적 운영 사업은 여성·아동 보호 지역연대 협의회 운영활성화,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추진체계 운영, 경찰청 및 전문기관 간 지역공동안전네트워크 구축, 어린이 보호 구역·학교 등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하여 타당성 검증이 가능함.
- 사업의 합목적성(충실성)
- 세부과제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 방법과 추진체계, 예산 등을 통해 점검함. 5-1-1 통합적 여성인권 교육으로 여성폭력 예방 교육 강화 사업은 여성가족정책과라는 추진체계가 명확하고, 공공·민간 부분 성매매예방 교육 및 종사자 보수 교육, 찾아가는 프로그램 등의 추진방법이 확인 가능함. 예산 집행 항목도 적절함.
 - 5-1-2 여성에 대한 폭력범죄의 신고 확산을 위한 캠페인 사업은 여성가족정책과라는 추진체계가 명확하고, 캠페인이라는 추진방법이 확인 가능함. 예산 집행 항목도 적절함.
 - 5-1-3 여성과 아동 폭력 예방 조례 제정은 비예산 영역으로 여성가족정책과라는 추진체계가 명확하고, 추진방법이 확인 가능함.

○ 5-1-4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과 실질적 운영 사업은 여성가족정책과라는 추진체계가 명확하고, 실질적 추진방법이 확인 가능함. 예산 집행 항목도 적절함.

□ 목표달성도

○ 기 계획된 세부과제들이 2년간 연차적으로 세부계획에 적합하게 목표를 달성하였고, 5-1-1 통합적 여성인권 교육으로 여성폭력 예방교육 강화에서 찾아가는 여성폭력 예방교육은 초과 달성됨. 다만 5-1-4 여성아동지역연대 협의회 운영의 2011년 목표달성도는 50%임.

○ 5-1-3 여성과 아동 폭력 예방 조례 제정은 2011년 10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로 제정됨. 사업 추진 부서의 실적 보고는 적절함.

□ 총평 및 향후 과제

○ 5-1 여성인권에 대한 사회의식 제고 관련 4개의 세부과제는 계획대로 추진됨. 다만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의 실질적 작동 체계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나 제안이 필요함.

5-2.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방지를 위한 기반 조성

○ 여성 및 아동에 대한 폭력 방지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기본 통계 구축 및 지원시설 상담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시스템 점검을 목적으로 함.

○ 세부과제로는 성폭력·가정폭력 등 관련 통계 구축, 지원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강화 및 처우 개선, 폭력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 확대, 가해자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등이 있음.

1) 추진 실적

사업내용	전반기 추진실적(단위: 백만원)	
	2011년	2012년
5-2-1. 여성폭력 관련 통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가정폭력 관련실태조사: 2010년 여성가족부 실태조사 활용 ○ 여성폭력 피해자의 시설 이용 실태조사 등을 통한 피해자 욕구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소 및 보호시설을 통한 만족도 조사(3년 주기로 여성가족부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단위로 실태 조사가 진행되므로 2013년 조사 예정
예산액(집행액)	10	1
5-2-2. 지원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 강화 및 처우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폭력피해시설 및 종사자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5개소·20명 - 성매매피해자 이용시설 : 1개소·6명 - 성·가정폭력·성매매 상담소 : 9개소·43명 ○ 여성폭력피해자 관련 시설 종사자 교육: 25명·11,200천원 ○ 관련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지원: 63명·98,28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폭력피해자 관련 시설 종사자 교육 ○ 여성폭력피해자 관련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급
예산액(집행액)	234(110)	234
5-2-3. 폭력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마을(따뜻한 동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자생단체와 간담회: 5회 -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 32회기 20명 수료 - 마을 축제: 성폭력 없는 세상으로 조금 더 가까이 추진 ○ 관련기관과 연계한 안전지킴이 집 운영 등 ○ 경찰청 및 전문기관 간 지역공동 안전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705개소 - 집배원수호천사 운영: 172명 - 태권브이수호천사 운영: 74명 - 배움터 지킴이 운영: 184개교 ○ 어린이보호 구역, 학교 등 방법용 CCTV설치: 76개소·321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청 및 전문기관 간 지역공동 안전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705개소 - 집배원수호천사 운영: 172명 - 태권브이수호천사 운영: 74명 - 배움터 지킴이 운영: 184개교 ○ 어린이보호 구역, 학교 등 방법용 CCTV설치: 51개소·457개소

사업내용	전반기 추진실적(단위: 백만원)	
	2011년	2012년
예산액(집행액)	7	8
5-2-4. 가해자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 가해자 치료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 부부상담, 부부캠프 ○ 성폭력 가해자 치료프로그램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 부부상담, 부부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 가해자 치료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 부부상담, 부부캠프 ○ 성폭력 가해자 치료프로그램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 부부상담, 부부캠프
예산액(집행액)	72	109

2) 이행 점검 결과

사업의 타당성

- 세부과제들이 전반적으로 사업의 상위 목표에 적합한 하위목표가 설정되어 있음. 5-2-1 여성폭력 관련 통계 구축 사업은 성폭력·가정폭력 관련 실태조사, 여성폭력 피해자의 시설 이용 실태조사 등을 통한 피해자 욕구 조사가 추진되었음.
- 5-2-2 지원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강화 및 처우 개선 사업은 여성폭력피해자 관련 시설 종사자 교육(25명) 및 처우 개선 사업(63명)이 추진되었음.
- 5-2-3 폭력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 확대는 지역자생단체와 간담회(5회),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32회기), 관련 축제, 관련기관과 연계한 안전지킴이 집 운영, 경찰청 및 전문기관 간 지역공동안전네트워크 구축, 방법용 CCTV 설치 사업 등이 추진되었음. 특히 ‘마을 축제: 성폭력 없는 세상으로 조금 더 가까이’를 추진하여 여성폭력에 관한 영상 상영 및 노래공연·데이트폭력 어워드 뽑기 등 시민참여 코너 운영·성폭력에 관련된 공소시기 폐지 서명코너 등을 운영함.
- 5-2-4 가해자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 사업으로는 가정폭력 가해자 치료프로그램 운영 및 성폭력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타당성 검증이 가능함.

□ 사업의 합목적성(충실성)

- 세부과제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 방법과 추진체계, 예산 등을 통해 점검함.
5-2-1 성폭력·가정폭력 등 관련 통계 구축 사업은 여성가족정책과, 행정시, 상담소 및 지원시설이라는 추진체계가 명확하나, 통계구축은 2010년 여성가족부 실태조사 활용과 상담소 및 보호시설을 통한 만족도 조사로 이루어짐.
- 5-2-2 지원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강화 및 처우 개선 사업은 여성가족정책과라는 추진체계가 명확하고, 여성폭력 피해자 관련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종사자 교육이라는 추진방법이 확인 가능함. 예산 집행 항목도 적절함.
- 5-2-3 폭력 없는 안전한 지역 만들기 사업 확대는 여성가족정책과라는 추진체계가 명확하며, 구체적인 추진방법이 확인 가능함. 예산 집행 항목도 적절함.
- 5-2-4 가해자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사업은 여성가족정책과라는 추진체계가 명확하며, 가정폭력 가해자 치료프로그램 운영 등의 추진방법이 확인 가능함. 예산 집행 항목도 적절함.

□ 목표달성도

- 기 계획된 세부과제들이 2년간 연차적으로 세부계획에 적합하게 목표를 달성하였고, 사업 추진 부서의 실적 보고는 적절함.

□ 총평 및 향후 과제

- 5-2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방지를 위한 기반 조성 관련 세부과제들은 계획대로 추진됨. 성폭력·가정폭력 지원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은 제도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도록 확대될 필요가 있음.

5-3. 여성폭력(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내실화

- 폭력피해 여성들의 주거(쉼터)와 일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관기관들 간의 연계 강화, 주거지원, 자활 등 통합적인 지원시스템 마련을 목적으로 함.
- 세부과제로는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의 내실화,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주거 지원 확대,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적 자활센터 운영 등이 있음.

1) 추진 실적

사업내용	전반기 추진실적(단위: 백만원)	
	2011년	2012년
5-3-1.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 시설 운영 지원의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상담소 3개소, 보호시설 1개소, 291,222천원 지원) ○ 가정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상담소 2개소, 보호시설 2개소, 311,700천원 지원) ○ 여성긴급전화 1366 제주센터 지원(1개소 · 286,142천원 지원) ○ 제주여성 · 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1개소 · 214,47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지원(4개소 · 296,894천원) ○ 가정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지원(4개소 · 346,285천원) ○ 여성긴급전화 1366 제주센터 지원(1개소 · 282,226천원) ○ 제주여성 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 지원센터 지원 (1개소 · 232,647천원)
예산액(집행액)	1,081(1,103,534)	1,158(1,158,052)
5-3-2.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피해여성주거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기관: 사단법인 제주상담센터 부설 가족사랑쉼터 - 사업비: 287,029천원 · 사업운영비: 17,963천원 - 기능보강비: 269,066천원 - 사업량: 10호(4호 계약체결) - 입주인원: 7세대 · 1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피해여성주거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기관: 사단법인 제주상담센터 부설 가족사랑쉼터 - 사업비: 25,423천원(운영비) - 사업량: 10호
예산액(집행액)	20(574,058)	100(25,423)
5-3-3.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적 자활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폭력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 정착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시설 퇴소자 - 지원기준: 1세대당 3백만원 ○ 직업훈련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여성복지시설 입소자 중 취업 준비 등을 위한 직업훈련 또는 진학을 위한 수강을 받는 자 - 지원기준: 1인당/30만원/6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훈련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여성복지시설 입소자 중 취업 준비 등을 위한 직업훈련 또는 진학을 위한 수강을 받는 자 - 지원기준: 1인당/30만원/6개월 ○ 여성폭력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 정착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시설 퇴소자 - 지원기준: 1세대당 3백만원
예산액(집행액)	45	100

2) 이행 점검 결과

□ 사업의 타당성

- 세부과제들이 전반적으로 사업의 상위 목표에 적합한 하위목표가 설정되어 있음. 5-3-1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의 내실화 사업은 성폭력피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지원, 가정폭력피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지원, 여성긴급전화 1366 제주센터 지원, 제주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등이 추진되었음.
- 5-3-2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확대 사업은 (사)제주상담센터 부설 가족사랑 쉼터를 통해 폭력피해 여성 주거 지원 등이 추진되었음.
- 5-3-3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적 자활센터 운영 사업은 여성폭력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및 직업 훈련비 지원 등이 이루어져 타당성 검증이 가능함.

□ 사업의 합목적성(충실성)

- 세부과제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 방법과 추진체계, 예산 등을 통해 점검함. 5-3-1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의 내실화 사업은 추진체계와 추진방법이 확인가능하며, 예산집행 항목도 적절함.
- 5-3-2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확대 사업은 (사)제주상담센터 부설 가족사랑 쉼터 등 추진체계가 명확하고, 주거 지원이라는 추진방법이 확인 가능함. 예산 집행 항목도 적절함.
- 5-3-3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적 자활센터 운영 사업은 추진체계, 추진방법, 예산 집행 항목이 명확하며, 확인 가능함.

□ 목표달성도

- 기 계획된 세부과제들이 2년간 연차적으로 세부계획에 적합하게 목표를 달성 하였고, 사업 추진 부서의 실적 보고는 적절함. 다만 5-3-3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적 자활센터 운영에서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 정착금 지원 2011년 집행액이 예산액에 미치지 못함.

□ 총평 및 향후 과제

- 5-3 여성폭력(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내실화 관련 3개의 세부과제는 추진됨. 다만 5-3-2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주거지원은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음. 또한 피해자 트라우마 치료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필요함.

5-4. 성매매 방지 집행력 강화와 성매매 피해자 지원 강화

- 성매매 근절을 위해 민·관·경의 협력시스템을 마련하여 감시와 구조부터 자활까지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네트워킹 구축을 목적으로 함.
- 세부과제로는 지역맞춤형 성매매 방지대책 수립 집행력 강화, 성매매 예방교육 강화, 성매매 피해자 구조 지원 시설 운영의 내실화, 성매매 피해 청소년과 이주여성 보호 및 지원 강화,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 대책 강화 등이 있음.

1) 추진 실적

사업내용	전반기 추진실적(단위: 백만원)	
	2011년	2012년
5-4-1. 지역맞춤형 성매매 방지대책 수립 및 집행력 강화	-	-
예산액(집행액)	7	108
5-4-2. 성매매예방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공무원 대상 성매매예방교육: 33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도 소속 전 공무원 - 도정영상TV를 통한 예방교육(매월 마지막 주 월수금 13:00~13:30) ○ 찾아가는 여성폭력 예방교육: 32회 · 758명 · 3,2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학생, 이주여성 등 - 방법: 제주여성인권상담소 · 시설협의회 강사활용 현지 예방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대상 성폭력 · 성매매예방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도 소속 전 공무원 - 도정영상TV를 통한 예방교육(매월 마지막 주 월수금 13:00~13:30) ○ 찾아가는 여성폭력 예방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학생, 이주여성 등 - 방법: 제주여성인권상담소 · 시설협의회 강사활용 현지 예방교육
예산액(집행액)	10(3,200)	12

사업내용	전반기 추진실적(단위: 백만원)	
	2011년	2012년
5-4-3. 성매매 피해자 구조 지원시설 운영의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 : 2개소 - 인건비 및 운영비 등 261,470천원 지원 ○ 성매매 자활지원센터 운영: 1개소 - 공동작업장운영,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일자리제공사업 참여자 지원 ○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 - 의료·법률·직업훈련 지원: 1인당 760만원 한도 내·1년간 지원(최장 3년 연장 가능) -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 탈성매매 여성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 : 2개소 - 인건비 및 운영비 등 261,470천원 지원 ○ 성매매 자활지원센터 운영: 1개소 - 공동작업장운영,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일자리제공사업 참여자 지원 ○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 - 의료·법률·직업훈련 지원: 1인당 760만원 한도 내·1년간 지원(최장 3년 연장 가능) -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 탈성매매 여성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예산액(집행액)	303(261,470)	383(261,470)
5-4-4. 성매매 피해 청소년과 이주여성 보호 및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성 문화센터 운영(제주시, 서귀포시) - 생명체험관, 성자료전시관, 건강성가치관형성관 등 운영 - 성문화캠프 등 지역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찾아가는 성교육실시 ○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운영: 1개소 - 인건비 및 운영비 125,090천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성 문화센터 운영(제주시, 서귀포시) - 생명체험관, 성자료전시관, 건강성가치관형성관 등 운영 - 성문화캠프 등 지역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찾아가는 성교육실시 ○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운영: 1개소 - 인건비 및 운영비 134천원 지원
예산액(집행액)	5(125,090)	26(134)
5-4-5.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 대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지원센터: 1개소·362,860천원 - 취업·진학 및 기술교육 - 직업훈련수당 지원 - 의료·법률지원 - 전업 및 사회통합 지원 - 일자리제공사업: 공동작업장 운영 ○ 탈성매매 여성의 직업전환 생계비 지원: 10명 5,85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지원센터: 1개소·362,860천원 - 취업·진학 및 기술교육 - 직업훈련수당 지원 - 전업 및 사회통합 지원 - 일자리제공사업: 공동작업장 운영 - 의료·법률지원 ○ 탈성매매 여성의 직업전환 생계비 지원: 10명 7,500천원
예산액(집행액)	309(368,710)	452(370,360)

2) 이행 점검 결과

사업의 타당성

- 세부과제들이 전반적으로 사업의 상위 목표에 적합하도록 하위목표가 설정되어 있음. 사업 목표와 계획이 제대로 추진된 과제는 5-4-2 성매매예방 교육 강화 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공무원 대상 성매매 예방교육, 찾아가는 여성폭력 예방 교육 등이 추진되었음.
- 5-4-3 성매매 피해자 구조 지원 시설 운영의 내실화 사업은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성매매 자활지원센터 운영 및 성매매 피해자 구조 지원 사업 등이 추진되었음.
- 5-4-4 성매매 피해 청소년과 이주여성 보호 및 지원 강화 사업은 청소년 성문화 센터 운영,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등이 추진되었음.
- 5-4-5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 대책 강화 사업은 자활지원센터 지원, 탈성매매 여성의 직업전환 생계비 지원 등이 추진되어 타당성 검증이 가능함.

사업의 합목적성(충실성)

- 세부과제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 방법과 추진체계, 예산 등을 통해 점검함. 5-4-1 지역맞춤형 성매매 방지대책 수립 및 집행력 강화 부분은 비예산영역이나,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파악하기 어려움. 나머지 과제들은 추진체계, 추진방법, 예산 집행이 확인 가능함.

목표달성도

- 기 계획된 세부과제들이 2년간 연차적으로 세부계획에 적합하게 목표를 달성하였고, 사업 추진 부서의 실적 보고는 적절함.

총평 및 향후 과제

- 5-4 성매매 방지 집행력 강화와 성매매 피해자 지원 강화 관련 세부과제 중 1개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며, 나머지 4개의 사업에 대해서 추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하반기 보완 사업 추진 시 내용 조정 검토.

5-5. 여성장애인과 이주여성 폭력 방지

- 여성장애인 및 이주여성 소수자 여성 등이 겪는 폭력과, 언어장벽 등 어려움을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일상적인 차별과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함.
- 세부과제로는 여성장애인 폭력 피해자 쉼터 등 지원 강화, 여성장애인 종합상담소 설치 및 운영,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강화, 국제결혼 중개업 관리 강화, 위반업소 행정 처분 강화 등이 있음.

1) 추진 실적

사업내용	전반기 추진실적(단위: 백만원)	
	2011년	2012년
5-5-1. 여성장애인 폭력 피해자 쉼터 등 지원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성폭력피해여성장애인 치유회복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상담, 개별상담, 원예치료, 심신회복캠프 등 ○ 여성장애인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및 주간보호시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생활가정 3개소, 단기보호시설 1개소, 주간보호시설 3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성폭력피해여성장애인 치유회복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상담, 개별상담, 원예치료, 심신회복캠프 등 ○ 여성장애인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및 주간보호시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생활가정 3개소, 단기보호시설 1개소, 주간보호시설 3개소 - 미지원시설 지원 강화 등 단계적 추진
예산액(집행액)	24	104
5-5-2. 여성장애인 종합상담소 설치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여성장애인 상담소 운영 : 1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및 운영비 62,578천원, 상담지원인력 및 교통비 25,540천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여성장애인 상담소 운영 : 1개소 · 87,976천원
예산액(집행액)	(88,118)	55(87,976)
5-5-3.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운영 : 1개소 · 109,646천원 ○ 폭력피해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 13,989천원 ○ 이주여성 자활지원 강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교육 및 종이접기, 수예, 압화 등, 114명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운영 : 1개소 ○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사업내용	전반기 추진실적(단위: 백만원)	
	2011년	2012년
예산액(집행액)	3(123,635)	58(88)
5-5-4. 국제결혼 중개업 관리 강화, 위반업소 행정처분 강화	-	-
예산액(집행액)	비예산	비예산

2) 이행 점검 결과

□ 사업의 타당성

- 세부과제들이 전반적으로 사업의 상위 목표에 적합하도록 하위 목표가 설정되어 있음. 사업 목표와 계획이 제대로 추진된 과제는 5-5-1 여성장애인 폭력피해자쉼터 등 지원 강화 사업은 장애인 성폭력 피해 여성장애인 치유회복프로그램, 여성장애인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및 주간보호시설 운영 등이 추진되었음.
- 5-5-2 여성장애인 종합상담소 설치 및 운영 사업으로는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가 운영됨.
- 5-5-3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강화 사업은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운영, 폭력피해 치료 회복 프로그램 운영, 이주여성 자활지원 강화 사업 등이 추진되어 타당성 검증이 가능함.

□ 사업의 합목적성(충실성)

- 세부과제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 방법과 추진체계, 예산 등을 통해 점검함. 사업은 전반적으로 추진체계와 추진방법, 예산 집행 항목이 적절함. 5-5-1 여성장애인 폭력피해자 쉼터 등 지원강화는 국비와 지방비로 구성됨.
- 3건의 세부과제는 사업의 충실성이 높으나 5-5-4 국제결혼중개업 관리 강화, 위반업소 행정처분 강화 사업은 비예산 사업임.

□ 목표달성도

- 기 계획된 세부과제들이 2년간 연차적으로 세부계획에 적합하게 목표를 달성하였고, 사업 추진 부서의 실적 보고는 적절함. 다만 5-5-3 폭력피해 이주 여성 지원 강화에서 집행액이 예산액에 미치지 못함. 또한 5-5-4 국제결혼중개업 관리 강화, 위반업소 행정 처분 강화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파악이 되지 않음. 하반기 추진 시 사업 내용을 조정하여 추진 검토.

□ 총평 및 향후 과제

- 5-5 여성장애인과 이주여성 폭력 방지 관련 4개의 세부 과제 중 3개는 추진되고, 1개는 추진되지 못함. 소외계층 여성들의 폭력피해에 대한 쉼터 및 치유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5-6. 성희롱 예방체계 확립 및 교육 강화

- 공공부문 및 민간 부문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를 파악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내실화 및 실질적인 예방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함.
- 세부과제로는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 강화, 민간부분 성희롱 실태 조사, 다차원적 성희롱 예방교육 체계 구축과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실화 등이 있음.

1) 추진 실적

사업내용	전반기 추진실적(단위: 백만원)	
	2011년	2012년
5-6-1.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병행 실시 - 성희롱 예방교육의 날 지정 운영 - 11회, 1,154명(현원대비 93%참석) ○ 교육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전 공무원(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등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날 지정 운영(매월 셋째주 수·금요일 13:00 ~ 13:30(1일 1회), 전 직원 대상) - 집합교육 총 3회, 총 450명(기별 150명) · 여성가족부 성희롱 예방지침 필수 내용 ·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시행(2008. 04.)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예방관련 내용 포함
예산액(집행액)	5	13

사업내용	전반기 추진실적(단위: 백만원)	
	2011년	2012년
5-6-2. 민간부분 성희롱 실태 조사	-	-
예산액(집행액)	-	10
5-6-3. 다차원적 성희롱 예방교육 체계 구축과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희롱 방지 조치 관리 체계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속기관·사업소, 행정시에서는 기관별 성희롱방지 자체 계획 수립 시행 - 행정시에서는 읍·면·동 포함 전반사항 관리 및 평가 ○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설치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정책과 내 ○ 제주특별자치도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 성희롱 사안 처리 관련 고충전담창구 책임관이 부치는 사항 심의 	2011년 완료과제
예산액(집행액)	5	10

2) 이행 점검 결과

□ 사업의 타당성

- 세부과제들이 전반적으로 사업의 상위 목표에 적합도록 하위 목표가 설정되어 있음. 사업 목표와 계획이 제대로 추진된 과제는 5-6-1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 강화 사업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의 날 지정 및 예방 교육 실시 등이 추진되었음.
- 5-6-3 다차원적 성희롱 예방교육체계 구축과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실화 사업은 성희롱 방지 조치 관리 체계 확립 및 성희롱 고충 상담 창구가 설치·운영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성희롱 고충 심의위원회가 운영되었음.

□ 사업의 합목적성(충실성)

- 세부과제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 방법과 추진체계, 예산 등을 통해 점검함. 5-6-2 민간부분 성희롱 실태 조사를 제외하고 추진방법, 추진체계, 예산 집행 항목 등이 확인 가능함. 특히 민간부분과 관련하여 추진실적 확인이 어렵고, 정책 추진이 어려우므로 후반기 사업으로 고려 대상임.
- 5-6-1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 강화 및 성희롱예방교육의 내실화, 5-6-3 다차원적 성희롱 예방교육 체계 구축 등은 여성가족정책과가 추진담당 부서로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날 지정, 집합교육 및 전문가 강의 등 구체적인 추진방법이 설계됨.
- 5-6-3 추진 내용을 좀더 제시하면 성희롱 고충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접수·상담 및 조언,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합의 권고, 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 에 관한 사항,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 등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음.

□ 목표달성도

- 기 계획된 세부과제들이 2년간 연차적으로 세부계획에 적합하게 목표를 달성하였고, 사업 추진 부서의 실적 보고는 적절함. 5-6-1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 강화 및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실화는 지방비로 실시되며, 90%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교육에 참여함.
- 5-6-3 다차원적 성희롱 예방교육 체계 구축은 비예산 사업으로 2011년 완료 과제임.

□ 총평 및 향후 과제

- 5-6 성희롱 예방체계 확립 및 교육 강화 관련 3개 사업 중 2개 사업은 추진됨. 5-6-3 다차원적 성희롱 예방 교육 체계 구축은 관공서만이 아닌 지역 상황에 맞는 성희롱 예방 교육안 및 교육체계 마련을 위해서 예산 사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6 영역. 여성 건강·복지 부문

6-1. 여성의 건강 증진과 건강한 생활

- 여성건강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확충하고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며 여성의 임신 및 출산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보건의료 서비스체계의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 건강 문제에 대한 정책적 개입을 목적으로 함.
- 세부과제로는 임신 및 건강한 출산지원 사업 확대, 여성의 건강권 확립 및 건강증진 강화 등이 있음.

1) 추진 실적

사업내용	전반기 추진실적(단위: 백만원)	
	2011년	2012년
6-1-1. 임신 및 건강한 출산지원 확대	-	-
예산액(집행액)	2,290	2,505
6-1-2. 여성의 건강권 확립과 건강증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모건강관리사업 - 임신부 신고·등록관리 - 임신부 철분제 및 산모수첩 지원 - 모유수유클리닉 운영(6개 보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모건강관리사업 - 임신부 신고·등록관리 - 임신부 철분제 및 엽산제, 산모수첩, 엠블럼 등 지원 - 모유수유클리닉 운영(6개 보건소)
예산액(집행액)	-	-

2) 이행 점검 결과

- 사업의 타당성
- 세부과제들이 전반적으로 사업의 상위 목표에 적합한 하위목표가 설정되어 있음. 사업 목표와 계획이 제대로 추진된 과제는 6-1-2 여성의 건강권 확립과 건강증진 강화로 산모건강관리사업 등이 추진되었음.

□ 사업의 합목적성(충실성)

- 세부과제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 방법과 추진체계, 예산 등을 통해 점검함.
6-1-2 여성건강증진 사업은 보건위생과를 통해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산모건강관리 사업을 통해 추진방법이 확인 가능함. 예산 집행 항목도 적절함.
6-1-1 임신 및 건강한 출산지원 확대는 근거자료가 부족하여 파악이 어려움.

□ 목표달성도

- 기 계획된 세부과제들 중 6-1-2 여성건강증진 사업만이 연차적으로 세부계획에 적합하게 목표를 달성하였고, 사업 추진 부서의 실적 보고는 적절함.
- 다만 6-1-1 임신 및 건강한 출산지원 확대는 여부를 알 수 없음.

□ 총평 및 향후 과제

- 6-1 여성의 건강 증진과 건강한 생활 관련 2개의 세부과제 중 1개는 미추진이고, 1개는 계획대로 추진됨. 특히 6-1-2 여성건강증진 사업은 임신부, 아동 건강관리 및 임신부 등록관리 사업 등이 목표를 초과 달성함.

6-2. 여성노인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

- 여성노인의 복지정책은 물성적인 영역으로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요구가 다름에도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는 실정임. 평균적인 노인의 특성에 기초하여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여성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제공을 통해 여성노인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함.
- 세부과제로는 여성노인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여성노인의 사회참여 활동 지원, 저소득 여성노인의 소득지원 사업 확대, 여성노인을 위한 일시보호시설 확대 및 수발 서비스 확대 등이 있음.

1) 추진 실적

사업내용	전반기 추진실적(단위: 백만원)	
	2011년	2012년
6-2-1. 여성노인 건강을 위한 보건 의료서비스 확대	-	-
예산액(집행액)	50	60
6-2-2. 여성노인의 사회참여 활동 지원	○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 사업기간 7개월, 월 보수액 1인당 월 200,000원	○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 사업기간 7개월, 월 보수액 1인당 200,000원
예산액(집행액)	215	270
6-2-3. 저소득 여성노인의 소득지원사업확대	○ 저소득 여성노인의 기초노령연금 지원 - 소득 인정액 월 74만원 이하의 노인에게 월 20,000~91,200원 지급	○ 저소득 여성노인의 기초노령연금 지원 - 소득 인정액 월 78만원 이하의 노인에게 월 20,000원~91,200원 지급
예산액(집행액)	310	415
6-2-4. 여성노인을 위한 일시 보호시설 확대 및 수발서비스 확대	○ 노인복지시설 신·증축 등 지원 - 사업량: 6개소(신축 4개소-3,818백만원, 증축 2개소-724백만원) - 사업금액: 4,542백만원 (국비 2,271, 지방비 2,271) - 지원형태: 국고 50%, 지방비 50%	○ 노인복지시설 신·증축 등 지원 - 사업량: 3개소(신축 2개소-1,750백만원, 증축 1개소-250백만원) - 사업금액: 2,000백만원 (국비 1,000, 지방비 1,000) - 지원형태: 국고 50%, 지방비 50%
예산액(집행액)	(9,084)	(4,000)

2) 이행 점검 결과

□ 사업의 타당성

- 세부과제들이 전반적으로 사업의 상위 목표에 적합한 하위 목표가 설정되어 있음. 사업 목표와 계획이 제대로 추진된 과제는 6-2-2 여성노인의 사회참여 활동 지원 및 6-2-3 저소득 여성노인의 소득지원 사업 확대로 저소득 여성노인의 기초노령연금 지원 및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이 추진되었음.
- 6-2-4 여성노인을 위한 일시 보호시설 확대 및 수발 서비스 확대 사업은 노인복지시설 신·증축사업 지원 등이 추진되어 타당성 검증이 가능함.

□ 사업의 합목적성(충실성)

- 세부과제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 방법과 추진체계, 예산 등을 통해 점검함.
6-2-1 여성노인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 사업은 추진체계, 추진방법, 예산 집행 항목 등이 적절함.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추진 부서로 저소득노인기초 노령연금 지원 사업 및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등으로 추진되고 있음.
- 다만 6-2-2 여성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지원과 6-2-3 저소득 노인의 소득지원 사업 확대 부분은 사업 혼재가 보임. 체계적인 정리 및 과제 정리가 필요함.
6-2-1 여성노인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6-2-3 저소득 여성노인의 소득지원 사업 확대 등은 추진되지 못함. 이는 다른 사업에 포함되어 추진되어 여성정책 추진 실적으로 자료 도출이 어려움.

□ 목표달성도

- 6-2-3 저소득 노인의 소득지원 사업 확대는 연차적으로 세부계획에 적합하게 목표를 달성하였고, 사업 추진 부서의 실적 보고는 적절함. 2011년 저소득노인 기초노령연금 지원 사업은 초과달성함.
- 6-2-4 여성노인을 위한 일시보호시설 확대 및 수발서비스 사업도 세부계획에 적합하게 목표 달성함. 사업비는 국비 50%, 지방비 50%임.

□ 총평 및 향후 과제

- 6-2 여성노인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 사업 중 일부는 상호 중복되거나 전체 노인 복지 서비스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정리가 필요함. 또한 여성노인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기초노령 연금 지급 확대의 향후 개선사항이 필요함. 일부 중복되는 사업은 후반기 계획 시 내용 변경이 필요함.

6-3. 여성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

- 여성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기반 확충 및 사회적 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제도 및 프로그램 마련 등 사회적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

- 세부과제로는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정보 기회 확대, 여성장애인 정책의 성주류화, 여성장애인 고용확대 및 취업률 제고, 여성 장애인 모성권 확보 및 사회 참여 확대 등이 있음.

1) 추진 실적

사업내용	전반기 추진실적(단위: 백만원)	
	2011년	2012년
6-3-1.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정보 기회 확대	-	-
예산액(집행액)	3,080	3,590
6-3-2. 여성장애인 정책의 성주류화	-	-
예산액(집행액)	-	-
6-3-3. 여성장애인 고용확대 및 취업률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 575명 · 1,552백만원(도비 100%) - 지원기준: 성별 및 장애등급별 차등지원(20만원~50만원) - 시행주체: 각 행정시 - 지원 실적: 59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 630명 · 1,596백만원(도비 100%) - 지원 기준 · 2003. 4. 1. 이후 장애인을 고용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 -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고용장애인 40명 범위 내에서 지원
예산액(집행액)	30(1,552)	35(1,596)
6-3-4. 여성장애인 모성권 확보 및 사회참여 확대	-	-
예산액(집행액)	500	650

2) 이행 점검 결과

사업의 타당성

- 세부과제들 중 6-3-3 여성장애인 고용확대 및 취업률 제고 사업만이 하위목표가 설정되어 있음. 6-3-3 여성장애인 고용확대 및 취업률 제고 사업은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원 등이 추진되었음.

□ 사업의 합목적성(충실성)

- 세부과제 달성을 위한 사업 추진방법과 추진체계, 예산 등을 통해 점검함.
- 6-3-3 여성장애인 고용확대 및 취업률 제고 사업은 추진체계와 추진방법, 예산 집행 항목이 명확함. 다만 나머지 세부과제에 대해서는 파악이 어려움. 사업 대상을 보면 2003년 4월 1일 이후 장애인을 고용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에 한하며, 사업자 등록업체로서 4대 보험 가입업체, 장애인 고용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이상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 장애인 표준 사업장으로서 고용장애인 40명 범위 내에서 지원(2008년 지침 개정)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
- 6-3-1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정보 기회 확대 6-3-2 여성장애인 정책의 성주류화 6-3-4 여성장애인 모성권 확보 및 사회참여 확대 등의 사업은 추진되지 못했으며 후반기 보완 시에 사업 내용 변경 검토.

□ 목표달성도

- 6-3-3 여성장애인 고용확대 및 취업률 제고 사업은 600여명에 대한 고용장려금 지급과 도비 100%로 충당됨. 사업들 간의 조정이 필요함.

□ 총평 및 향후 과제

- 6-3 여성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 관련 4개의 세부과제 중 1개만 추진됨. 세부과제 통폐합 및 조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6-4. 여성 농·어업인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

- 농어업경영의 파트너로서 여성 농어업인의 직업적 지위인정과 농어촌지역 보육 환경 개선 및 잠수어업인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함.
- 세부과제로는 여성농업인 지위향상 및 전문인력화 지원, 여성농업인 복지서비스 확대 및 정책 추진 기반 조성, 여성 잠수어업인을 위한 소득사업 지원 강화, 여성 잠수어업인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강화 등이 있음.

1) 추진 실적

사업내용	전반기 추진실적(단위: 백만원)	
	2011년	2012년
6-4-1. 여성농업인 지위향상 및 전문인력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창출 농식품 창업지원 및 수제품 직판장 시설지원(11개소) ○ 소비자 체험 활성화 지원 및 농외소득제품 품질향상지원(2개소) ○ 향토자원 상품화사업장 조성(1개소) ○ 여성농업인 및 소비자 농업 교육(10,210명) ○ 소비자 도농교류 사업 및 견학(10회) ○ 농촌여성 정보지 보급(1,2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창출 농식품창업 지원 및 품질향상 지원(7개소) ○ 여성농업인 및 생활개선회 교육 지원(10,000명) ○ 소비자초청 도농교류 사업 추진(5회 200명) ○ 농촌여성 정보지 보급지원(1,200명)
예산액(집행액)	2,720	3,325
6-4-2. 여성농업인 복지서비스 확대 및 정책추진 기반 조성	-	-
예산액(집행액)	2,280	2,580
6-4-3. 여성 잠수어업인을 위한 소득사업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수어업인 지원 대책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어장 휴식년 직불제 및 투석사업 확대방안 마련 ○ 잠수어업인 소득사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조류투석사업 등 4개 사업(3,127백만원) ○ 수산종묘매입방류: 74개소, 5종, 3,620천 마리(2,471백만원) ○ 패조류 투석 : 24개소, 61ha(954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종묘매입방류: 40개소, 6종, 2,455천 마리(1,723백만원) ○ 패조류 투석 : 25개소, 58ha(928백만원)
예산액(집행액)	3,000(6,552)	4,000(2,651)
6-4-4. 여성 잠수어업인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수어업인 진료비, 안전공제료 지원 등 복지사업 확대방안 마련 ○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등 의료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등 2개사업(3,617백만원) ○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184,032명, 3,533백만원) ○ 잠수어업인 안전공제료 지원(4,470명, 84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수어업인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예산 확보 ○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162,240명(3,156백만원) ○ 잠수어업인 안전공제료 지원: 4,802명(80백만원)
예산액(집행액)	2,450(7,234)	2,950(3,236)

2) 이행 점검 결과

□ 사업의 타당성

- 세부과제들이 전반적으로 사업의 상위 목표에 적합한 하위목표가 설정되어 있음. 사업 목표와 계획이 제대로 추진된 과제는 6-4-1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 및 전문인력화 지원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국내 원료를 기반으로 한 창업활동 지원으로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 증진 및 농업인의 경제활동 역량 향상,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 및 우수 지역 벤치마킹,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가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 생활지도자 양성교육 및 연찬회 개최, 농업, 농촌문화, 농산물 가공 등 체험활동 및 도농교류 직거래, 여성농업인 교육, 소비자 농업 교육 등이 추진되었음. 6-4-3 여성 잠수어업인을 위한 소득사업 지원 강화 사업은 잠수어업인 지원 대책 수립, 잠수어업인 소득사업 지원 등이 추진되었음.

6-4-4 여성 잠수어업인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강화 사업은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사업 등이 추진되어 타당성 검증이 가능함.

□ 사업의 합목적성(충실성)

- 세부과제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 방법과 추진체계, 예산 등을 통해 점검함. 6-4-1 여성농업인 지위향상 및 전문인력화 지원 사업은 농업기술원 주관으로 교육, 직거래 등 구체적인 추진체계가 확인 가능함. 예산 집행 항목도 적절함.
- 즉 국내 원료를 기반으로 한 창업활동 지원으로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 증진 및 농업인의 경제활동 역량 향상이 있어서 창업 활동을 위한 작업장 및 시설 설치, 가공장비 구입 설치 등, 포장 개발, 유통개선, 상표등록 및 출원, 홍보 등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함.
또한 기술습득을 위한 교육 및 우수 지역 벤치마킹 등,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가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생활지도자 양성교육 및 연찬회 개최, 농업, 농촌문화, 농산물 가공 등 체험활동 및 도농교류 직거래, 여성농업인 교육, 소비자 농업교육 등이 추진됨.
- 3건의 세부과제는 사업의 충실성이 높으나 1건의 세부과제에 대해서는 미흡함. 즉 6-4-2 여성농업인 복지서비스 확대 및 정책추진 기반 조성은 추진되지 못함.

□ 목표달성도

- 6-4-2 여성농업인 복지서비스 확대 및 정책 추진 기반 조성 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부과제들은 2년간 연차적으로 세부계획에 적합하게 목표를 달성하였고, 사업 추진 부서의 실적 보고는 적절함.
- 다만 6-4-3 여성 잠수어업인을 위한 소득사업 지원 강화 중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 및 패조류 투석 사업의 목표 달성이 다소 미흡함.

□ 총평 및 향후 과제

- 6-4 여성 농·어업인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 관련 4개의 세부과제 중 1개는 미추진이고, 3개는 계획대로 추진됨. 6-4-2 여성농업인 복지서비스 확대 및 정책 추진 기반 조성 사업은 6-4-1 여성농업인 지위향상 및 전문인력화 지원 사업의 하위 단위 혹은 상호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점검 및 조정이 필요함.

6-5. 도서지역 여성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

- 사회·문화적 사각지대에 놓인 도서지역 여성들을 위한 문화·사회 복지서비스 기회 확대가 필요함.
- 세부과제로는 도서지역 여성의 자기계발 지원 강화 및 평생 교육·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확대, 도서지역 여성의 소득 향상 지원과 복지서비스 확대 등이 계획됨.

1) 추진 실적

사업내용	전반기 추진실적(단위: 백만원)	
	2011년	2012년
6-5-1. 도서지역 여성의 자기계발 지원 강화 및 평생 교육·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확대	-	-
예산액(집행액)	30	30
6-5-2. 도서지역 여성의 소득 향상 지원과 복지서비스 확대	-	-
예산액(집행액)	130	130

2) 이행 점검 결과

- 도서지역 여성에 대한 교육, 문화 복지, 소득, 건강 등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 제공을 목적으로 하여 ‘도서지역 여성의 자기개발 지원강화 및 평생교육·문화·여가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확대 및 도서지역 여성의 소득향상 지원과 복지서비스 확대’ 등이 계획됨.
- 이행 점검 결과 6-5 정책과제는 다른 사업에 통합되어 추진되었으며, 여기서 추진실적을 확인하기는 어려움. 따라서 후반기 보완 시 지속여부 검토 필요.

6-6. 이주 여성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

- 이주여성들이 제주사회에 정착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과 문화적응 프로그램 서비스 지원정책이 필요함.
- 세부과제로는 이주여성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사업 확대와 이주여성의 사회문화 적응을 위한 자립·자활 교육과 훈련 확대 등이 계획됨.

1) 추진 실적

사업내용	전반기 추진실적(단위: 백만원)	
	2011년	2012년
6-6-1. 이주여성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사업 확대	-	-
예산액(집행액)	340	440
6-6-2. 이주여성의 사회문화 적응을 위한 자립·자활 교육과 훈련 확대	-	-
예산액(집행액)	140	120

2) 이행 점검 결과

- 결혼이주여성들 대부분 불안정한 신분 때문에 결혼제도 안에서 인권을 보장받을 수 없는 실정이므로, 인권보호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이 겪는 언어, 문화, 자녀갈등, 가족 갈등 등을 지역 실정에 맞게 정책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이주여성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사업 확대, 이주여성의 사회문화적응을 위한 자립·자활 교육과 훈련 확대’ 등이 계획됨.

- 전반기 이행점검 결과 다른 과제에 통합되어 추진되었으므로 후반기 과제 보완 시 반영 여부 검토.

6-7. 미혼모를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

- 미혼모 중 대부분은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어 건강, 빈곤, 교육, 가족통합의 문제 등 다중적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구조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음. 미혼모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의식주 해결뿐만 아니라, 교육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을 목적으로 함.
- 세부과제로는 미혼모 자립지원시설 확대 및 미혼모 지원 정책, 미혼모 발생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미혼모 상담소 지정 확대 등이 있음.

1) 추진 실적

사업내용	전반기 추진실적(단위: 백만원)	
	2011년	2012년
6-7-1. 미혼모 자립지원시설 확대 및 미혼모 지원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혼모자시설 운영(정원확대 35명→50명): 1개소·299,585천원 ○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 운영(정원확대(10명→20명):1개소·61,602천원 ○ 미혼모자시설 자활프로그램비 지원: 1개소 6,000천원 ○ 미혼모시설 입소자 의료비 지원(1개소) ○ 미혼모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4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혼모자시설 운영(1개소·327,394천원) ○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 운영(1개소·61,009천원) ○ 미혼모자시설 자활프로그램비 지원(1개소 6,000천원) ○ 미혼모시설 입소자 의료비 지원(1개소 4,000천원) ○ 미혼모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15,000천원)
예산액(집행액)	250(368)	250(414)
6-7-2. 미혼모 발생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미혼모 상담소 지정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혼모·부자지원기관 운영(1개소) ○ 예비부부 기초교육(느영나영사랑만들기) ○ 예비부부 심화교육(행복한 결혼준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혼모·부자지원기관 운영(1개소) ○ 예비부부 기초교육(느영나영사랑만들기) ○ 예비부부 심화교육(행복한 결혼준비하기)
예산액(집행액)	50	50

2) 이행 점검 결과

□ 사업의 타당성

- 세부과제들이 전반적으로 사업의 상위 목표에 적합한 하위 목표가 설정되어 있음. 6-7-1 미혼모 자립지원시설 확대 및 미혼모 지원 정책 사업은 미혼모자 시설 운영,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 운영, 미혼모자시설 자활프로그램비 지원, 미혼모시설 입소자 의료비 지원, 미혼모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등이 추진되었음
- 6-7-2 미혼모 발생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미혼모상담소 지정 확대 사업은 미혼모·부자지원 기관 운영, 예비부부 기초교육, 예비부부 심화 교육 등이 추진 되어 타당성 검증이 가능함.

□ 사업의 합목적성(충실성)

- 세부과제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 방법과 추진체계, 예산 등을 통해 점검함. 6-7-1 미혼모 자립지원시설 확대 및 미혼모 지원 정책은 추진체계와 추진방법이 명확함. 예산 집행 항목도 적절함.
- 6-7-2 미혼모 발생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미혼모 상담소 지정 확대 사업은 추진체계, 추진방법, 예산 집행 항목이 확인 가능함.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미혼모·부자지원 기관 운영에는 미혼모·부를 대상으로 하여 상담을 통한 미혼모·부의 정서지원, 출산 및 양육 시 생필품 등 위기지원 등을 추진함. 예비부부 기초교육(느영나영 사랑만들기)은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하여 자연가족계획방법, 만남과 관계 등을 교육함. 예비부부 심화교육(행복한 결혼 준비하기)은 기초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하여 결혼과 가족, 올바른 의사소통, 임신과 출산, 자아반성을 통한 관계회복 등을 교육함.

□ 목표달성도

- 기 계획된 세부과제들이 2년간 연차적으로 세부계획에 적합하게 목표를 달성 하였고, 사업 추진 부서의 실적 보고는 적절함.
- 다만 6-7-1 미혼모 자립지원시설 확대 및 미혼모지원 정책 중 미혼모자시설 운영의 예산 집행액이 다소 미흡하나 시설 수 목표는 달성함.

- 6-7-2 미혼모 발생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미혼모 상담소 지정 확대 사업 중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 및 예비부부 심화교육 목표 달성도가 다소 미흡함. 그러나 예비부부 기초교육은 초과달성함.

□ 총평 및 향후 과제

- 6-7 미혼모를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 관련 2개의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됨. 향후 미혼모·부자 지원 기관 운영 및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6-8. 빈곤여성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

- 양극화의 심화 속에 여성근로 빈곤층의 증가, 여성노인의 빈곤화, 가족해체로 여성 한부모가구 증가 등 빈곤의 여성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적극적인 빈곤 여성친화적인 제도 대응을 목적으로 함.
- 세부과제로는 빈곤여성 기초생활 보장, 한부모가족 빈곤여성 지원 강화 등이 있음.

1) 추진 실적

사업내용	전반기 추진실적(단위: 백만원)	
	2011년	2012년
6-8-1. 빈곤여성 기초생활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가정 발굴 및 긴급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지원 ○ 근로능력자에 대한 사회서비스 일자리제공, 공동모금회 등 민간 자원 연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여성가정 생계급여 등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 ○ 근로능력 있는 여성가장에게 일자리제공 및 창업자금 융자지원
예산액(집행액)	550	570
6-8-2. 한부모가족 빈곤여성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자보호시설(1개소·220백만원) - 모자일시보호시설(1개소·179백만원) - 미혼모자시설(1개소·299백만원) -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1개소·59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자보호시설(1개소·210백만원) - 모자일시보호시설(1개소·186백만원) - 미혼모자시설(1개소·327백만원) -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1개소·61백만원)

사업내용	전반기 추진실적(단위: 백만원)	
	2011년	20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4개소 · 21,400천원) - 직업훈련생계비 지원 (35명 · 31,275천원) -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 지원 (89세대 · 264,000천원) - 한부모가족 월동준비금 지원 (206명 · 61,800천원) - 한부모가족 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612명 · 170,500천원) - 대학신입생 등록금 지원 (205명 · 205,000천원) - 자녀 학습비 지원 (515명 · 148,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2,340명 · 1,103,627천원) ○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4개소 · 21,400천원) - 직업훈련생계비 지원 (33명 · 32,400천원) -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 지원 (80세대 · 240,000천원) - 한부모가족 월동준비금 지원 (206명 · 61,800천원) - 한부모가족 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630명 · 220,500천원) - 대학신입생 등록금 지원 (220명 · 220,000천원) - 자녀학습비 지원 (606명 · 170,000천원) - 한부모가족 자녀 학용품 지급 (1,478명 · 73,900천원)
예산액(집행액)	500(2,408)	500(2,391)

2) 이행 점검 결과

□ 사업의 타당성

- 세부과제들이 전반적으로 사업의 상위 목표에 적합한 하위 목표가 설정되어 있음. 6-8-1 빈곤여성 기초 생활 보장 사업은 위기가정 발굴 및 긴급지원, 저소득층 여성 가정 생계 급여 지원, 여성근로 능력자에게 일자리 제공 등이 추진되었음.
- 6-8-2 한부모가족 빈곤여성 지원 강화 사업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지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등이 추진되어 타당성 검증이 가능함.

□ 사업의 합목적성(충실성)

- 세부과제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 방법과 추진체계, 예산 등을 통해 점검함.
6-8-1 빈곤여성의 기초생활 보장은 복지청소년과 중심으로 추진체계가 형성됨. 저소득층 여성가정 생계급여 지원,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 등이 추진방법이 확인 가능하며, 예산 집행항목이 적절함.
- 6-8-2 한부모가족 빈곤여성 지원 강화 사업은 여성가족정책과 중심으로 추진체계가 형성됨. 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 등의 추진방법이 확인 가능하며, 예산 집행 항목이 적절함.

□ 목표달성도

- 기 계획된 세부과제들이 2년간 연차적으로 세부계획에 적합하게 목표를 달성하였고, 사업 추진 부서의 실적 보고는 적절함.
- 6-8-1 빈곤여성의 기초생활 보장 사업 중 2011년 저소득층 여성가정 생계급여 지원과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 등은 초과 집행됨. 다만 저소득층 여성가정 생계 급여 지원 수혜 대상자는 계획대비 초과 달성되었으나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 수혜 대상자는 목표 달성에 미흡함.

□ 총평 및 향후 과제

- 6-8 빈곤여성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 관련 2개의 세부과제는 계획대로 추진됨. 다만 경제난의 장기화로 복지제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수혜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추가 발굴 및 지원이 개선 과제로 제안됨.

7 영역. 여성 권익 · 성주류화 강화 부문

7-1. 성분석 기반 확립 및 성인지 정책 실행

- 1995년 북경대회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성주류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제도화하여 성인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함.
- 세부과제로는 성인지통계 조사 및 성별영향평가 확대, 성인지예산 제도 기반 조성, 공무원 성인지교육 활성화, 성인지정책 관리분석팀 운영 등이 수립됨.

1) 추진실적

사업내용	전반기 추진실적(단위: 백만원)	
	2011년	2012년
7-1-1. 성인지통계 추진 및 성별영향평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평가 46개 과제 분석평가 ○ 성별영향평가 정책제도 개선안 환류강화를 위해 상·하반기 2회 점검(76개 과제) ○ 2011 제주여성가족통계 발간 ○ 성별영향평가 실시(46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평가 50개 과제 분석평가 ○ 성별영향평가 정책제도 개선안 환류강화를 위해 상·하반기 2회 점검(86개 과제) ○ 조례·규칙 제·개정예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32건) ○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지정 운영 : 1개소(2012. 04.)
예산액(집행액)	25	10
7-1-2. 성인지예산 제도 기반 조성	7-1-3. 사업과 통합 추진	7-1-3. 사업과 통합 추진
예산액(집행액)	28	28
7-1-3. 공무원 성인지교육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성별영향평가 교육 - 교육대상: 도 산하(읍·면·동 포함) 4급 이하 전 직원 800여명 ○ 성별영향평가 과제 담당자 컨설팅 교육 ○ 공무원 성별영향평가 교육 총 709명 수료 ○ 성별영향평가 과제 담당자 컨설팅 교육(1회 18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성별영향평가 교육 - 교육대상: 도 산하(읍·면·동 포함) 4급 이하 전 직원 ○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담당자 컨설팅 교육 ○ 공무원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총 540명 수료 ○ 각 행정시별로 공무원 대상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200명 이상)
예산액(집행액)	28	28

사업내용	전반기 추진실적(단위: 백만원)	
	2011년	2012년
7-1-4. 성인지정책 관리 분석팀 구성 운영	-	-
예산액(집행액)	-	-
7-1-5. 여성정책 관련 기초 수요조사 확대	7-1-1. 과제와 공통 추진	7-1-1. 과제와 공통 추진
예산액(집행액)	-	-

2) 이행 점검 결과

□ 사업의 타당성

- 세부과제 3개는 정책과제의 목표에 적합하고 추진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7-1-1 성인지통계 추진 및 성별영향평가 확대 사업은 2년간 96개 과제가 분석 평가됨.
- 7-1-3 공무원 성인지교육 활성화 사업은 2년간 전 공무원 대상 교육이 이루어짐으로써 사업의 타당성 검증이 가능함.
- 7-1-4 성인지정책 관리분석팀 구성 운영과 7-1-5 여성정책 관련 기초 수요조사 확대는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함.

□ 사업의 합목적성(충실성)

- 정책과제 달성을 위해 세부사업이 추진 체계와 추진 방법 면에서 적절하게 수행됨.
- 7-1-1 성인지통계 추진 및 성별영향평가 확대 사업은 2011년에 76개 과제(2009년: 36개 과제, 2010년 : 40개 과제), 2012년 86개 과제(2010년: 40개 과제, 2011년: 46개 과제)가 환류 과제 대상으로 평가됨. 『2011제주여성가족통계』는 10개 부문(인구, 가족, 보육, 교육, 경제활동, 건강, 복지, 정치 및 사회 참여, 문화, 안전과 환경), 41개 영역, 358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2012년에는 각종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1부서 1과제), 중장기계획(3년

단위 이상)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를 유도하고 있음.

- 7-1-1 사업과 7-5-1 공공기관 성인지 교육 체계화는 통합하여 추진되어서 추진 실적이 동일함.
- 7-1-2 성인지예산 제도 기반 조성과 7-1-3 공무원 성인지교육 활성화도 통합 추진되어 추진실적이 같음.

□ 목표달성도

- 기 계획된 세부과제들이 2년간 추진계획에 적합하게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추진부서의 실적 보고도 명확함. 다만 2건의 과제는 추진되지 못함.
- 7-1-1 세부과제는 조례·규칙·개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 평가 32건이 실시됨. 7-1-2 세부과제는 공무원 성인지 교육 확대를 위해 연 총 4회, 16시간 4급 이하 전 공무원 대상으로 2년간 교육이 추진되었음.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담당자 컨설팅교육도 병행하는 등 목표달성도가 높음.

□ 총평 및 향후 과제

- 성인지정책 추진을 위해 5개의 과제 중 3개는 추진되고 2개는 미추진 사업이나 이는 다른 정책과제에 포함 가능함.
- 공무원 성별영향평가교육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2012년 4월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지정·운영됨으로써 향후 성인지예산 제도 확대 등 성인지정책이 활성화될 것임. 다만 미추진 2개 과제는 하반기 사업에 반영 여부 검토.

7-2.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 확대

- 지방자치단체의 여성권익과 성주류화를 위한 정책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여성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
- 특히 공공기관의 관리직에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제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
- 세부과제로는 일반직·관리직 여성공무원의 지속적 확대,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의 지속적 확대, 여성정책담당관 신설 및 임무 부여, 제주여성포럼 운영 등이 계획되어 있음.

1) 추진실적

사업내용	전반기 추진실적(단위: 백만원)	
	2011년	2012년
7-2-1. 일반직·관리직 여성공무원의 지속적 확대	○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 52명 (9.8%)	○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 10.0%
예산액(집행액)	비예산	비예산
7-2-2.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의 지속적 확대	○ 중점관리대상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확대 - 여성위원 위촉률 상향: 2010년 30% → 2011년 32% ○ 여성 전문인력 지속 발굴(128명)	○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여성 참여 확대: 2011년 29.8% → 2012년 30.4% ○ 중점관리대상 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 참여 확대: 2011년 32.9% → 2012년 35% ○ 전문직 여성인력 지속 발굴
예산액(집행액)	비예산	비예산
7-2-3. 여성정책담당관 신설 및 임무 부여	-	-
예산액(집행액)	-	-
7-2-4. 제주여성포럼 운영	○ 제주여성거버넌스포럼 창립 준비	○ 제주여성거버넌스포럼 창립·운영
예산액(집행액)	-	50

2) 이행 점검 결과

□ 사업의 타당성

- 세부과제 4개가 상위 정책 목표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음. 1개의 세부과제는 전반기에는 추진되지 않아 타당성 검증이 어려움.
- 사업 목표와 계획이 부합된 과제는 7-2-1 일반직·관리직 여성공무원의 지속적 확대, 7-2-2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의 지속적 확대, 7-2-4 제주여성포럼 운영 등임.
- 7-2 정책과제는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의 참여비율을 높이고 있음. 다만 여러 사업은 비예산으로 추진되었음.

□ 사업의 합목적성(충실성)

- 세부과제 달성을 위해 추진방법, 추진체계, 예산 등을 점검하여 사업의 합목적성을 검증함.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과 위원회에 여성위원의 참여율을 높이는 사업은 비예산 사업임.
- 7-2-2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의 지속적 확대 사업을 보면 중점관리대상 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 참여확대 추진(40% 이상), 여성위원 위촉이 부진한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의 참여확대를 유도하여 각종 위원회 임기 만료 시 위촉직 여성 참여확대 추진(40% 이상), 여성참여 확대가 용이한 위원회는 위촉비율 상향 조정(50% 이상)에 노력하고 있음. 또한 제주 정착 인사 및 도내외 거주 제주를 사랑하는 전문직 여성 인재 발굴을 위해 총 1,218명의 여성 전문인력 DB가 구축되어 있음.
- 7-2-4 과제는 ‘제주여성거버넌스포럼 운영’으로 추진됨. 도내외 제주여성 네트워크 구성에 역점을 두고 2011년 4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2년 3월 창립됨.

□ 목표달성도

- 기 추진된 세부과제들이 2년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추진부서의 실적 기록이 명확함.

□ 총평 및 향후 과제

- 7-2 정책과제는 타당하게 추진되었으며 일반직 여성공무원 확대는 정책적으로 시행이 어려우므로 후반기 추진 시에는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 목표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의 참여 비율을 높이는 사업은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여성인재 발굴과 육성에도 주력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함.
- 7-2-3 여성정책담당관 제도 도입은 미추진 과제이나 후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 노력이 필요함.

7-3. 공공부문 여성정책 추진

- 여성권익·성주류화 확대를 위한 여성정책 추진이 필요하고, 여성공무원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중요함. 또한, 제주 지역의 여성정책 전반을 계획·추진할 수 있는 공공연구기관 설립이 필요함.
- 세부과제로는 여성정책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정례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여성정책 연계체계 마련, 여성가족개발원 설립 준비, 국제교류사업 추진 등이 계획되어 있음.

1) 추진실적

사업내용	전반기 추진실적 (단위: 백만원)	
	2011년	2012년
7-3-1. 여성정책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정례화	-	-
예산액(집행액)	-	-
7-3-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여성정책 연계체계 마련	-	-
예산액(집행액)	-	-
7-3-3. 여성가족정책개발원 설립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기관·단체 등 의견수렴 실시(3회) ○ 여성·가족, 아동·청소년복지, 인권분야 조사·연구 실시(3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정책개발원 설립 준비 위원회 구성 운영
예산액(집행액)	-	-
7-3-4. 국제교류사업 추진	-	-
예산액(집행액)	-	-

2) 이행 점검 결과

사업의 타당성

○ 4개의 세부과제는 상위 정책과제 목표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추진됨.

- 7-3-3 여성가족정책개발원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 중임. 7-3-4 국제교류 사업은 실적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나 여성발전기금 지원 사업으로 일부 추진됨.
- 7-3-1 실무협의회 운영은 전반기에 추진되지 못했고, 7-3-2는 정부(여성가족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상호 협력하여 여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별도의 정책과제로 계획하지 않아도 됨.

- 사업의 합목적성(충실성)
 - 세부과제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 방법, 추진 체계, 예산 등을 점검하면 사업의 충실도 점검이 가능함. 7-3-3은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 목표달성도
 - 기 계획된 세부과제들이 전반기 추진 계획을 준수하여 목표를 달성함.

- 총평 및 향후 과제
 - 7-3-3 과제는 후반기에도 추진될 수 있도록 반영하고, 7-3-1 여성정책협의회 운영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다만 7-3-4 국제교류 사업 추진은 후반기 지속 여부 검토 필요.

7-4. 시민사회 연계 여성정책 추진

-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사회와 연계하는 정책이 필요함.
- 여성권익·성주류화를 위한 정책 계획·추진에 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함.
- 세부과제로는 여성정책을 위한 시민단체 협력체계 구축, 여성발전기금 조성 확대, 지역기반 정당 여성정책 참여 활성화 등이 계획되어 있음.

1) 추진실적

사업내용	전반기 추진실적 (단위: 백만원)	
	2011년	2012년
7-4-1. 여성정책을 위한 시민단체 협력 체계 구축	-	-
예산액(집행액)	-	-
7-4-2. 여성발전기금 조성 확대	○ 여성발전기금 운용 내실화 및 기금지원 사업 추진으로 기금 65억 원 조성함. - 여성발전기금 지원 사업 공모 및 지원: 48개 사업 216백만원	○ 여성발전기금 지원 사업 공모 및 지원: 34개 사업 162백만원 - 지원금 250백만원
예산액(집행액)	250	250
7-4-3. 지역기반 정당 여성정책참여 활성화	-	-
예산액(집행액)	-	-

2) 이행 점검 결과

사업의 타당성

- 3개의 세부과제는 상위 정책과제 목표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음.
- 이중 1개만 추진되고, 7-4-1 여성정책을 위한 시민단체 협력체계 구축과 7-4-3 지역기반 정당 여성정책 참여 활성화는 추진되지 못함.

사업의 합목적성(충실성)

- 여성발전기금이 2011년 기준 65억원이 조성되었으며, 매년 2억 5천만으로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2012년에는 여성발전기금 지원 방법을 달리하여 기획공모와 자유공모로 구분하여 신청을 받았음. 또한 여성발전기금 사업평가체계 구축을 위해 사업평가단을 구성하여 진행하였으며, 여성발전기금 사업 사후평가 및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음.

□ 목표달성도

○ 기 계획된 여성발전기금 지원 사업은 3차 중기계획부터 지속된 사업으로 4차 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2건의 과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인식되어 추진되지 못했다고 봄.

□ 총평 및 향후 과제

- 여성발전기금이 목표대로 확대 조성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이 기금을 활용한 지원은 제주지역 여성들의 사회적·정치적 대표성 정립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필요.
- 시민단체 연계 협력과 지역기반 정당의 여성정책 참여도 관련 사업은 후반기에는 다른 과제로 흡수하는 방안 검토.

7-5. 공공·민간부문 양성평등교육 활성화

- 여성권익·성주류화를 위한 공공기관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양성평등교육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위원과 도의회 의원들의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성평등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함.
- 세부과제로는 공공기관 성인지교육 활성화, 각종 위원회 위원 및 도의원 성인지력 향상 교육, 양성평등 교육전문가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이 계획되어 있음.

1) 추진실적

사업내용	전반기 추진실적(단위: 백만원)	
	2011년	2012년
7-5-1. 공공기관 성인지 교육 체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성별영향평가 교육 총 709명 수료 ○ 성별영향평가 과제 담당자 컨설팅 교육(1회 18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총 540명 수료 ○ 각 행정시별로 공무원대상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 행정시별 200명 이상
예산액(집행액)	28	28

사업내용	전반기 추진실적(단위: 백만원)	
	2011년	2012년
7-5-2. 각종 위원회 및 도의원 성인지력 향상교육	-	-
예산액(집행액)	-	-
7-5-3. 양성평등교육 전문가 양성 및 교 육프로그램 개발	-	-
예산액(집행액)	-	-

2) 이행 점검 결과

- 사업의 타당성 측면에서는 7-5-1 공공기관 성인지 교육 체계화는 7-1-1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었으며, 추진 결과도 유사함.
- 7-5-2, 7-5-3 사업은 추진되지 못했으며 후반기 사업 조정 시에는 글로벌 여성리더십 교육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방안 검토.

8 영역. 여성친화도시 부문

8-1.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 체계 구축

-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 협의체가 구성되어 2011년 제주특별자치도가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음.
- 세부과제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 마련, 여성친화도시 관련 조례 제정,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민간 참여 확대 등이 있음.

1) 추진 실적

사업내용	전반기 추진실적(단위: 백만원)	
	2011년	2012년
8-1-1.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강력한 추진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친화도시조성추진체계구축 ○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구성 ○ 제주여성거버넌스포럼 구성 ○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구성 	2011년 완료사업
예산액(집행액)	36	16
8-1-2. 여성친화도시 관련 조례 제정	조례 제정 준비	2012년 4월 6일 조례 제정
예산액(집행액)	-	-
8-1-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민간참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활용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단 활용 모니터링
예산액(집행액)	2	3

2) 이행 점검 결과

- 사업의 타당성
- 세부과제들이 전반적으로 사업의 상위 목표에 적합한 하위 목표로 구성됨. 8-1-1 세부과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실무 추진협의체 운영,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조직 등 추진 등을 통해 타당성이 검증됨.

□ 사업의 합목적성(충실성)

- 세부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추진방법, 추진체계, 예산 등으로 점검함.
8-1-1 과제는 여성친화도시조성 실무 추진협의체 130명,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17명, 제주여성거버넌스포럼 133명,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452명 등이 조직되어 사업의 목적에 적합하게 추진됨.

□ 목표달성도

- 기 계획된 세부과제들이 전반기 일정에 맞게 추진되어 목표를 달성함. 8-1-2 과제는 2012년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서 사업이 종료됨.
- 8-1-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민간참여 확대 사업 실적을 보면 지역별 서포터즈 중심으로 생활 속 불편사항 개선 및 지역 내 여성친화도시 과제 발굴을 추진하였고, 서포터즈활동 활성화에 기여함.

□ 총평 및 향후 과제

- 2011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후반기에도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8-2.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 여성친화도시는 여성과 노약자 등 도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정책 목적이 있음.
- 세부과제로는 생활공간의 안정성 확보 및 쾌적성 증대,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동체 친화적 공간 만들기,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교통시스템 마련 등이 있음.

1) 추진 실적

사업내용	전반기 추진실적(단위: 백만원)	
	2011년	2012년
8-2-1. 생활공간의 안정성 확보 및 쾌적성 증대	-	-
예산액(집행액)	69	74

사업내용	전반기 추진실적(단위: 백만원)	
	2011년	2012년
8-2-2.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동체 친화적 공간 만들기	○ 유모차, 자전거,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도보 정비 - 인도보수정비 공량단가 사업 추진(50개소, 140백만원)	○ 유모차, 자전거,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도보 정비 - 인도보수정비 공량단가 사업 추진(35개소, 90백만원)
예산액(집행액)	333(140)	70(90)
8-2-3.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교통 시스템 마련	○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편의 제공 ○ 교통약자 사회활동 보장	○ 사)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 특별교통수단 차량 5대 구입 - 제주도 전지역 운행(2012. 05.)
예산액(집행액)	332(70)	70(77)

2) 이행 점검 결과

사업의 타당성

- 세부과제들이 상위 정책 목표에 부합되게 구성되어 있음. 2개 세부과제는 도민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함.
- 8-2-1 생활공간의 안정성 확보 및 쾌적성 증대 세부과제는 미추진됨.

사업의 합목적성(충실성)

- 세부과제 달성을 위해 추진방법, 추진체계, 예산 등의 적절 여부를 점검함. 2건은 계획 대비 목표에 맞게 추진되었으며, 여성친화도시 운영에 적합함.
- 8-2-3 교통약자를 위한 시스템 운영으로는 특별수송차량 12대(리프트 3, 슬로프 9)를 보유하고 있음. 2014년까지 40대 운행(운행요원: 17명)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제주시 동지역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점차 제주도 전 지역으로 확대 운영 계획임. 특별수송 차량 이용자는 1급~2급 장애인과 임산부 및 노약자 등에 한정함.

목표달성도

- 기 계획된 세부과제가 2년 목적에 맞게 추진되어 목표 달성도가 높음. 8-2-3 교통약자 배려 정책으로는 대중교통이용 요금할인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총평 및 향후 과제

- 8-2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정책과제는 2개 시행, 1개 미시행됨.
8-2-1 세부과제는 8-2-2와 유사하므로 후반기 추진 시 보완 검토.

2. 영역별 중간 추진실적 평가 결과 시사점

1) 여성 가족 부문

- 1-1 지역사회가 책임지는 일·가족 양립 지원 정책 강화 관련 3개의 세부과제 중 1개는 미추진이고, 2개는 계획대로 추진됨. 출산 장려 정책 시행에 필요한 여건 조성을 위해 보육료 지원 확대, 방과 후 아동돌봄을 위한 기관에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됨.
- 1-2 제주형 보육정책은 3개 중 2건은 추진되고 1건은 정부추진 과제여서 실적 산출이 어려움.
- 야간돌봄 서비스 확대 실시를 위해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현실화, 특히 취약 보육시설(영아전담, 장애전담 등) 수 확대, 취약지역 보육교사 지원 확대 현실화가 필요함. 보육시설 종사자 전문성 강화를 위해 능력향상비의 지원 확대 사업이 지속되어야 함.
- 1-3 여성의 출산을 증대 및 여성 일자리 확대 정책과 관련하여 3개 세부과제 중 2개는 목적대로 추진되었으며, 1개 과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실적이 없으며, 후반기 과제로는 삭제 검토.
- 만 0~2세, 만 5세 무상 보육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예산 확보 필요.
- 3개의 세부과제 중 2개는 계획대로 추진되었으며, 1개 사업은 미추진됨.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정책을 실천하기 위하여 도민 의식 개선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점검한 후에 후반기 사업으로 반영 여부 검토 필요.
- 도서지역과 소외지역의 다문화가족 여성들에게 사회통합 서비스 기회 확대 필요.
- 전반적으로 가족 영역은 15개 세부과제 중 11개가 추진되고, 4개는 미추진됨. 이는 국비사업과 다른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서 추진실적이 집계되지 못하여 후반기 과제에는 반영하지 않음.

2) 여성 경제 부문

- 2-1 여성인력활용 기반 구축 정책 과제 중 2개의 세부과제는 계획대로 추진되었으며, 1개의 세부과제는 다른 과제와 중복 가능성이 있음.
- 여성인력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이 1곳에 집중 지원되어 교육과 취업의 연계 측면에서는 효율적이나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 해소에는 미흡하다고 봄. 3개의 세부과제는 통합하여 후반기에 추진 검토.
- 2-3 여성일자리 창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결과 2건은 목표에 적합하게 추진되고, 1건은 추진되지 못함. 2-3-3 여성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은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기준에 따라 가능한 사업으로 여성에 국한하여 특별 지원하기 어려운 여건임. 후반기 사업 추진 시에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현실 수요를 반영하여 집행이 필요함.
- 2-4-1 가족친화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은 후반기 추진 여부 검토 필요.
- 2-5 여성고용평등 및 고용안정성 제고 정책 관련 1건은 후반기에도 지속사업으로 유지 필요. 미추진된 2건은 후반기에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봄.
- 경제 영역은 14개 세부과제 중 6개가 추진되고, 8개는 추진되지 못함. 이는 여성의 취·창업과 경제활동 기회 제공에 필요한 정책이 수립되었으나 2년간 특정 교육훈련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내용은 풍부하나 추진결과가 부족하게 집계됨.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공간을 가족친화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에도 권장하는 정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함. 즉 정책 추진부서의 의지는 높으나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를 위한 환경 조성이 미흡한 결과로 보임. 따라서 후반기 과제 수립 시 수정·보완하였음.

3) 여성 인력개발 부문

- 3-3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차세대여성(청소년 및 대학생)의 능력 개발 관련 세부과제로 2개 추진, 1개 미추진 사업임.
- 해외취업 능력 개발을 위한 세부과제는 다른 부서에서 해외인턴십제도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후반기 지속 사업으로 삭제 검토.

- 3-4 여성의 취업능력 개발 과제는 추진내용에 적합하게 실행되었으며, 후반 기에도 지속사업으로 필요함. 3-4-3 여성노인 능력개발 교육 실시 및 지원 사업은 다른 부서의 사업과 중복 여부 확인 후 조정 검토.
- 3-5 글로벌 여성리더십 개발 과제는 시민의식 교육과 더불어 점검이 필요함.
- 인력개발 영역은 15개 세부과제 중 6개가 추진되고, 9개가 추진되지 못함. 이는 미래세대 여성 대상 능력개발 정책 지원이 일부 대학기관에 집중되면서 다양한 정책 추진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결과로 보임. 또한 취업 능력개발정책은 경제 영역과 중복 추진됨으로써 추진 실적이 저조하게 드러남. 따라서 이런 점을 보완하여 하반기 과제에 반영하였음.

4) 여성 사회·문화 부문

- 4-2 여성자원봉사자의 사회참여 활성화 관련 3개의 세부과제 중 1개는 미추진이고, 2개는 계획대로 추진됨. 4-2-1 여성자율 소모임 및 시민참여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 및 추진체계와 추진방법을 점검하여 하반기 추진 여부 검토.
- 4-3 여성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관련 2개의 세부과제 중 1개는 계획대로 추진됨. 4-3-2 여성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현황조사는 여성 문화예술인 정책과 관련하여 기초 조사이며 사회적 취약 계층 여성 문화예술인 발굴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우선 조사가 필요함. 또한 지역 문화예술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관련 단체와 협조체계 구축 필요.
- 4-4 제주여성문화 정립 및 선양 관련 3개 세부과제 모두 계획대로 추진됨. 다만, 여성자료 소장자 파악 및 자료 기증 홍보가 더욱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자료 수집 및 보관문제, 여성역사문화전시관 자료 보안을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이 설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4-5 김만덕 나눔 정신 확산 관련 2개의 세부과제 중 1개는 계획대로 추진됨. 향후 4-5-2 김만덕기념관 건립과 관련하여 자료 수집,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사회·문화 영역은 13개 세부과제 중 8개가 추진되고, 5개가 추진되지 못함. 이는 여성들의 자율적 소모임 활성화와 여성 문화예술 활동 관련으로 문제점을 반영하여 하반기 과제에 수정하였음.

5) 여성 인권 부문

- 5-1 여성인권에 대한 사회의식 제고 관련 4개의 세부과제는 계획대로 추진됨. 다만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의 실질적 작동 체계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나 제안이 필요함.
- 5-2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방지를 위한 기반 조성 관련 세부과제들은 계획대로 추진됨. 성폭력 및 가정폭력, 지원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은 제도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도록 확대될 필요가 있음.
- 5-3 여성폭력(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내실화 관련 3개의 세부과제는 추진됨. 다만 5-3-2 성폭력·가정 폭력 피해자 주거지원은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음. 또한 피해자 트라우마치료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필요함.
- 5-4 성매매 방지 집행력 강화와 성매매 피해자 지원 강화 관련 세부과제 중 1개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며, 나머지 4개의 사업에 대해서 추진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음. 하반기 보완 시 내용 조정 검토.
- 5-5 여성장애인과 이주여성 폭력 방지 관련 4개의 세부 과제 중 3개는 추진됨. 1개는 파악이 안 됨. 소외계층 여성들의 폭력피해에 대한 쉼터 및 치유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5-6 성희롱 예방체계 확립 및 교육 강화 관련 3개 사업 중 2개 사업은 추진됨. 5-6-3 다차원적 성희롱 예방 교육 체계 구축은 공공기관 외의 지역 상황에 맞는 성희롱 예방 교육안 및 교육체계 마련을 위해서 예산 사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 인권 영역은 23개 세부과제 중 20개 과제가 추진되어 8개 영역 가운데 추진 실적이 가장 높게 나타남. 이는 성평등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 잘되고 있음을 보여줌. 하반기 과제에도 지속 사업으로 반영함.

6) 여성 건강·복지 부문

- 6-1 여성의 건강 증진과 건강한 생활 관련 2개의 세부과제 중 1개는 미추진이고, 1개는 계획대로 추진됨. 특히 6-1-2 여성건강증진사업은 임신부, 아동건강관리 및 임신부 등록관리 사업 등이 목표를 초과 달성함.

- 6-2 여성노인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 사업 중 일부는 상호 중복되거나 전체 노인 복지 서비스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정리가 필요함. 또한 여성노인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기초노령 연금 지급 확대는 향후 개선이 필요함. 일부 중복되는 사업은 후반기 계획 시 내용 변경이 필요함.
- 6-3 여성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 관련 4개의 세부과제 중 1개만 추진됨. 세부과제 통폐합 및 조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6-4 여성 농·어업인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 관련 4개의 세부과제 중 1개는 미추진이고, 3개는 계획대로 추진됨. 6-4-2 여성농업인 복지서비스 확대 및 정책 추진 기반 조성 사업은 6-4-1 여성농업인 지위향상 및 전문인력화 지원 사업의 하위 단위 혹은 상호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점검 및 조정이 필요함.
- 6-7 미혼모를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 관련 2개의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됨. 향후 미혼모·부자 지원 기관 운영 및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6-8 빈곤여성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 관련 2개의 세부과제는 계획대로 추진됨. 다만 경제난의 장기화로 복지제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수혜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추가 발굴 및 지원이 개선 과제라고 봄.
- 건강·복지 영역은 23개 세부과제 중 11개 과제가 추진되고, 11개 과제는 추진되지 못함. 도서지역 여성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지 못했으며, 여성장애인, 여성농어업인, 이주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을 위한 복지정책은 후반기에 수정·보완하여 지속성 유지에 역점을 두었음.

7) 여성 권익·성주류화 강화 부문

- 성인지정책 추진을 위해 5개의 과제 중 3개는 추진되고 2개는 미추진 사업이나 이는 다른 정책과제에 포함 가능함.
- 공무원 성별영향평가교육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2012년 4월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지정·운영됨으로써 향후 성인지예산 제도 확대 등 성인지정책이 활성화될 것임. 다만 미추진 2개 과제는 후반기 사업에서 제외하는 방안 검토.
- 7-2 정책과제는 타당하게 추진되었으며 일반직 여성공무원 확대는 정책적으

로 시행하기 어려우므로 하반기 추진 시에는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 목표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의 참여 비율을 높이는 사업은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여성인재 발굴과 육성을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함.
- 7-2-3 여성정책담당관 제도 도입은 미추진 과제이나 하반기 사업으로 반영 필요.
- 여성정책협의회 운영은 미추진 사업이나 하반기에도 추진 노력이 필요하고, 국제교류추진 사업은 하반기 보완 사업으로 검토 필요.
- 여성발전기금이 매년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또한 여성발전기금을 활용한 지원금이 제주지역 여성들의 사회적·정치적 대표성 정립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필요.
- 시민단체 연계 협력과 지역기반 정당의 여성정책 참여도 관련 사업은 하반기에는 다른 과제로 흡수하여 추진 검토.
- 권익·성주류화 강화 영역은 19개 세부과제 중 10개는 추진되고, 9개는 추진되지 못함. 주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와 민간인 대상 성평등교육 정책이 미흡하므로 하반기에는 과제를 수정·보완하여 성인지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려했음.

8) 여성친화도시 부문

- 2011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하반기에도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8-2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정책과제는 2개 시행, 1개 미시행됨. 8-2-1 세부과제는 8-2-2와 유사하므로 하반기 추진 시 보완 검토.
- 여성친화도시 영역은 6개 세부과제 중 5개가 추진되어 계획 대비 추진실적이 높은 편임. 이 과제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반영했음.

Ⅲ. 제4차 여성정책 중기계획 보완계획 구조

1. 여성정책의 현황과 환경 전망

- 지난 10년간 국제사회 및 한국에서는 여성을 둘러싼 환경변화로 여성관련 정책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
 - 특히 참여정부와 MB정부에서는 여성정책을 추진하는 행정조직과 정부부처의 여성관련 정책이 상당한 변화를 보였음.
- 현재 국가차원에서는 제3차 여성정책중장기기본계획(2008~2012) 시행 중에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는 제4차 여성정책중기계획(2011~2014) 시행 중에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1999년부터 4년 단위로 4차에 걸쳐 여성정책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왔음.

1) 여성 가족 부문

-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해 있는데 이는 보육비와 교육비 등 자녀양육비, 청년층 취업난, 결혼시기의 지연, 결혼에 대한 의식변화로 미혼의 증가,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사회, 노동시장 환경 등 다양한 요인을 들 수 있음.
- 저출산 현상이 단기간에 회복될 수 없는 대상이고, 기혼여성의 가치관에 대한 변화 및 경제 불황에 따른 여성 가구주의 증가와 결혼 이주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형성 등이 우리나라의 가족 문제와 관련하여 정책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도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인구 구조의 변동이 예상됨(<표 3> 참조). 이는 가족구조의 변동 및 사회구조의 변동을 예견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1)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비롯하여, 2) 공공성을 강화한 보육정책개발, 3) 출산율 증대를 위한 정책, 4) 여성가구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 5) 다양한 가족을 위한 지원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음.

<표 3> 제주지역 인구구조(Population Structure by Sex, 2005~2010)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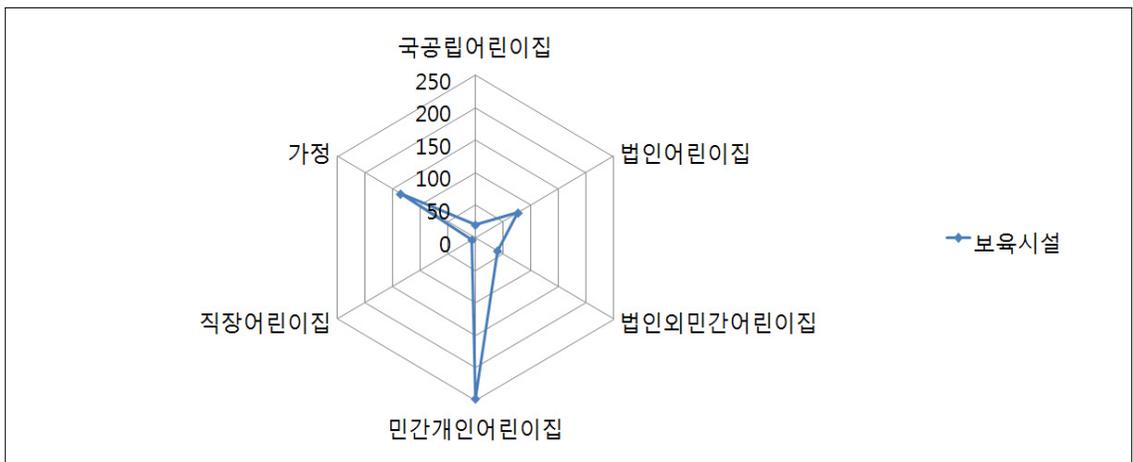
구분		전체	연소연령인구 (14세 이하)	생산연령인구 (15~64세)	노령인구 (65세이상)	노령인구비율
2005	전체	557,569	118,228	383,046	55,795	10.0
	여자	279,288	56,418	186,303	36,567	13.1
	남자	278,281	62,310	196,743	19,228	6.9
2006	전체	558,496	115,978	383,833	58,685	10.5
	여자	279,642	55,003	186,611	38,028	13.6
	남자	278,854	60,975	197,222	20,657	7.4
2007	전체	559,258	113,218	384,306	61,734	11.0
	여자	280,012	53,839	186,646	39,527	14.1
	남자	279,246	59,379	197,660	22,207	8.0
2008	전체	560,618	109,831	429,855	64,191	11.5
	여자	280,530	52,235	187,613	40,628	14.5
	남자	280,088	57,596	198,983	23,509	8.4
2009	전체	562,663	106,283	389,674	66,706	11.9
	여자	281,344	50,655	188,760	41,929	14.9
	남자	281,319	55,628	200,914	24,777	8.8
2010	전체	571,255	103,551	398,063	69,641	12.2
	여자	285,673	49,404	192,923	43,346	15.2
	남자	285,582	54,147	205,140	26,295	9.2

· 주: 외국인 제외임, 노령인구비율=(65세 이상 인구/총인구)×100

· 자료: 제주특별자치도(2011), 주민등록인구통계, 『2011 제주여성가족 통계』, 93쪽 재인용.

-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여성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주요 선진국과 달리 보육지원 및 모성보호제도가 취약하고 남성의 가사와 육아에 대한 낮은 참여율로 일·가정이 양립하기 힘든 노동시장과 사회구조 및 관행을 가지고 있음.
- 또한 장시간 경직적인 근로방식 때문에 우리나라의 유연근무제 활용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임.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도 2009년 기준 여성 31.8%, 남성 27.4%만이 근로시간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일·가정 양립의 가장 어려운 요인으로 육아부담을 꼽고 있음. 2009년 기준 여성취업 장애요인으로 육아부담은 연령별, 학력별, 성별에 관계없이 40~50%를 유지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남성 육아휴직 확대 방안 등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하여 지원 시스템 마련 및 아동 양육 및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음.

- 보육정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향후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는 인구규모와 구조임. 우리나라 아동의 사망률과 인구 이동을 감안하여 2010년 출생아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2025년까지 경제활동인구 규모는 거의 확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2010년 이후 출산율이 점진적으로 회복되더라도 2025년부터 15세 인구부터 증가하기 때문에 출산율 회복효과가 노동력 규모에 미치는 효과는 중장기적으로 나타남. 따라서 출산율 회복을 위한 보육정책은 아주 시급한 분야임.
- 이에 국가에서는 아동 돌봄 공공성 강화를 여성 정책 12대 과제 중의 하나로 선정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비롯하여 야간 돌봄 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음.
- 『2011 제주여성가족통계』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제주지역의 0~5세 보육 대상 아동 수는 33,345명이며, 이 중 여아는 16,053명, 남아는 17,292명으로 성비는 107.7%임. 2010년 어린이집은 총 525개로 민간어린이집(법인 외 및 민간개인)이 287개소로 가장 많아 전체의 54.7%를 차지함. 다음으로 가정어린이집 135개소(25.7%), 법인어린이집 77개소(14.7%), 국공립어린이집 20개소(3.8%), 직장어린이집 6개소(1.1%)로 나타남. 어린이집의 총 정원수는 29,210명이고,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인원은 24,809명으로 이용률은 84.9%임.



·자료: 제주특별자치도(2011), 『2011 제주도여성통계』, 51쪽 재구성.

<그림 2> 제주지역 보육시설(2010)

- 출산율 증대 정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1990년 649천명(1,59명)에서, 2000년 634천명(1,45명), 2009년에는 445천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함. 2016년 이후 생산가능인구의 감소현상은 피할 수 없음.
- 2016년 36,039명을 정점으로 하여 2025년 이후 생산가능 인구가 점차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기대수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10년 5,364명(전체 인구의 11.1%)에서 2015년에는 6,499천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이러한 추이가 지속되어 2020년 7,897천 명(15.9%)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 제주지역의 경우 2006년부터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8년부터 2년간 일시 감소하였음. 2010년을 기준으로 출생아 및 조출생률이 증가함. 또한 성비 차이도 좁혀지고 있음(<표 4> 참조).

<표 4> 출생아수 및 조출생률

(Number of Live Births by Sex and Crude Birth Rate, 2005~2010)

(단위: 명, %)

구분	전체	여아	남아	조출생률
2005	5,673	2,662	3,011	10.2
2006	5,806	2,763	3,043	10.4
2007	6,143	2,986	3,157	11.0
2008	5,593	2,709	2,884	10.0
2009	5,433	2,608	2,825	9.7
2010	5,657	2,728	2,929	10.0

- 주: 조출생률=특정 1년간 총출생아수/당해 연도의 연앙인구x1,000
- 자료: 통계청 KOSIS, 인구동향조사, 『2011 제주여성통계』, 106쪽 재인용.

- 이에 국가에서는 여성의 건강권 확보 기반 구축을 여성정책의 12대 과제로 선정하였으며, 건강권 확보기반 구축에는 성인기 여성 건강을 비롯하여 청소년기 여성 건강권 기반 구축을 담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0~5세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 및 12살 이하 아동 필수 예방접종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여성가구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가구전망을 보면, 먼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될 것으로 전망됨.

특히 이혼, 사별 유배우 상태에 있는 여성가구주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 14.5%, 그리고 2005년 16.7%였음. 장래가구추계에 의하면 여성 가구주 가구는 2010년 16.9%, 2030년에는 17.5%로 전망됨.¹⁾

- 제주지역의 경우 2005년부터 전체 가구수에서 25%가 여성가구주 구성 비율을 보이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 가구주 구성 비율을 보이고 있음(<표 5> 참조).
- 2010년 인구센서스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0년에 이미 20.2%를 나타냄에 따라 향후 이들 가구는 전망치보다 훨씬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1인 가구는 여성(2010년 222만 가구)이 가구주인 경우가 남성(192만 가구)에 비해 많음.
- 제주지역의 경우 여성 가구주 가구 비율이 전체가구수의 25%이상을 웃돌고 있음(<표 5> 참조).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취약계층에 놓인 여성가구주에 대한 직업훈련을 비롯하여 자립 및 자활에 대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표 5> 제주지역 여성 가구주 추계 가구
(Projected Householders by Sex, 2001~2020)

(단위: 가구, %)

구분	총가구수	여성가구주 가구	남성가구주 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구성 비율
2005	179,105	45,401	133,704	25.3
2010	191,646	48,240	143,406	25.2
2015	203,104	51,326	151,778	25.3
2020	212,124	54,126	157,998	25.5

· 자료: 통계청 KOSIS, 장래가구추계, 『2011 제주여성가족통계』, 127쪽 재구성.

○ 다양한 가족을 위한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산의 지속으로 결혼 및 가족 가치의 변동 및 고령화의 지속과 생애주기 변화로 나타난 노년기의 확대, 결혼으로 국가 간 이주 등 가족 형태에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다양화되고 있음.

- 주목할 만한 가족형태 및 구조변화는 확대가족형 가구의 지속적인 감소, 2세

1)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통계청(2007), 『장래가구 추계』(한국여성정책연구원, 『최근 10년간 여성정책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2012. 6~8쪽 재인용).

대 가구의 감소, 1세대 가구 비율 증가(2010년 17.5%), 1인가구의 증가(2010년 23.9%)임. 이와 같은 세대 구성은 결과적으로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증가시키고 있음.

- 이에 국가는 다양한 가족 지원 및 성평등 가족제도 정착을 여성정책 12대 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양성평등적 문화프로그램 조성 및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2) 여성 경제부문

- 우리나라는 여성의 취업난이 증가하고 있으며, 낮은 경제활동 및 비정규직 여성의 증가, 소득 양극화에 의한 근로빈곤층 여성의 확대,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난, 성평등에 기반한 근로여건이 미비함.
 - 특히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여대생 취업률과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편견 및 차별문제가 심각한데, 이는 한국사회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
 - 이에 국가차원에서는 2010년대 중반까지 여성친화적인 일자리 창출, 고용의 질적 제고 등의 논의되었음.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1) 여성인력활용기반 구축, 2) 여성근로자 차별 방지, 3) 여성일자리 창출 활성화 4) 여성고용의 사회적 지원 체제 구축 5) 여성고용 평등 및 고용안정 제고를 위한 정책 등을 추진해 왔음.
- 여성인력활용기반 구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 54.8%임. 그러나 국제적인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이후 크게 하락하여 2009년 53.9%를 나타냈음. 경기회복과 함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도 2011년 54.9%로 증가되었으나, 여전히 OECD회원국 중에서 참가율이 낮은 국가에 속함(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 11). 제주 지역의 경우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0년 기준 58.2%에 해당함(<표 6> 참조).
 - 이에 여성인력활용기반 구축을 위하여 국가차원에서는 청년층 여성의 취업난 해소 및 비정규직 여성의 고용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이

를 통해 공공부문 인턴제의 일정 비율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여학생 진로교육 및 취업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 또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 및 청년여성층의 맞춤형 직업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음.

<표 6> 제주지역 경제활동인구 추이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and Employment Status by Sex, 2000~2010)

(단위: 1,000명, %)

구분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2000	126	142	123	137	3	5	61.2	75.5	2.4	3.5	59.7	72.9
2002	133	145	130	141	2	4	63.6	75.5	1.5	2.8	62.2	73.4
2004	133	152	130	148	3	4	62.4	77.5	2.3	2.5	60.9	75.6
2006	138	157	136	153	3	4	63.5	77.0	1.9	2.3	62.3	75.2
2008	135	161	133	158	2	3	61.0	77.2	1.8	1.9	60.0	75.7
2010	131	158	128	155	3	3	58.2	74.1	2.1	1.7	57.0	72.9

· 자료: 통계청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2011 제주여성가족통계』, 261쪽 재구성.

- 여성근로자 차별 방지와 관련하여, 국가차원에서는 여성근로자를 둘러싼 대표적인 복합차별(Multiple Discrimination)인 성별과 고용형태에 기초한 각종 고용차별을 개선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또한 여성이 다수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성희롱 및 폭력 예방을 위한 성희롱 교육실시 여부에 대한 감독 및 지도를 시행하고 있음.
- 여성 일자리 창출 활성화와 관련하여, 국가차원에서는 청년층 여성 집중 업종 및 직종인 개인 및 사회서비스업 일자리의 열악한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청년층 일자리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여성기업인 창업 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여성 고용의 사회적 지원 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 여성근로자 고용 형태별로 보면,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 구성비가 2011년 42.8%(남성

27.8%)로, 여성근로자의 40~45%정도가 비정규직임.

- 이에 국가차원에서는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시행 및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모성보호제도를 강화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특히 제주지역의 여성취업 장애요인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꼽는 것이 육아 부담에 대한 것임(<표 7> 참조).

<표 7> 여성취업 장애요인에 관한 견해
(Attitudes toward Female Employment by Sex, 2009)

(단위: %)

구분	사회적 편견	직업의식 및 책임감 부족	불평등한 근로여건	여성의 능력부족	구인정보 구하기 어려움	육아부담	가사부담	기타	
성별	평균	23.3	4.4	8.8	2.8	3.8	46.3	5.3	5.3
	여자	22.5	3.3	8.1	2.0	4.0	49.9	6.0	4.3
	남자	24.2	5.5	9.5	3.7	3.7	42.5	4.5	6.4
학력 별	초졸 이하	14.6	5.1	4.7	3.1	4.3	50.3	4.7	13.1
	중졸	28.9	5.8	11.6	1.4	3.7	39.7	5.4	3.4
	고졸	25.6	4.0	10.9	3.8	3.5	42.6	5.3	4.3
	대졸 이상	23.5	3.7	7.3	2.2	4.0	51.6	5.5	2.3

· 주 : 기타에는 ‘모르겠음’ 포함됨.

· 자료 : 통계청 KOSIS, 사회조사, 『2011 제주여성가족통계』, 313쪽 재구성.

○ 여성고용 평등 및 고용안정 제고를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연령별 남녀 고용률의 구조를 보면 남성은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15세 이후부터 30대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30대 후반까지 유지하다가 40대 후반부터 하락하는 추이를 보임. 지난 2000년 이후 변화를 보면 남성고용률은 30대 초반 이전까지는 소폭 하락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소폭 증가함.

- 2000년 이후 여성고용률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결혼, 출산, 육아로 30대 초반의 경력단절 현상은 여전히 구조적인 문제로 남아 있음. 특히 20대 후반과 30대 초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는 등 경력단절문제가 거의 개선되지 않았음.

- 이에 국가차원에서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고용평등과 관련된 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여성친화적 고용환경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3) 여성 인력개발 부문

- 국가차원에서는 청년층 여성 및 비정규직 여성의 고용구조 개선 문제,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 문제 등 지속적인 여성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인력개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1) 여성인력개발 기반 구축, 2) 여성재직자의 전문성 개발 및 심화, 3) 차세대여성 능력개발, 4) 여성취업 능력개발, 5) 글로벌 여성 리더십 개발 등의 정책을 시행했음.
- 여성인력개발 기반 구축과 관련하여, 지역 여성의 인적자원 개발 정책 수립 및 여성인력개발 관련 기관의 네트워크 구축, 여성인력 개발 기관 기능 정비 및 지원 확대 사업을 설계하고 있으나 시행되고 있지 않음.
- 여성 재직자의 전문성 개발 및 심화와 관련하여 재직여성인력의 핵심 역량 및 자발적 직업 능력 개발을 비롯하여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개발 및 육성, 여성 경제인 육성 및 직업 능력 개발 등의 사업을 설계하고 있으나 이 또한 시행되고 있지 않음.
- 차세대여성 능력개발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연령별 여성 실업률을 보면 15~19세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은 20대 초반, 20대 후반 순임. 즉 청년층 여성의 실업률이 가장 높음. 실업률 추이를 보면 15~19세는 상당한 개선을 보이고 20대 초반은 정체상태를 보이는 반면에 30대 초반을 지속적으로 증가함. 여성의 저고용률, 고실업률 현상이 지속되면 청년층 여성의 향후 정규직 취업을 어렵게 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 동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청년층 취업과 관련해서 ‘일하지 않고 교육, 직업 훈련도 받지 않는’ 니트(neet)상태에 있는 청년층 현황을 보면 2011년 15~24세 청년층 니트 인구는 453천 명이고, 15~29세를 보면 1,081천명으로 백만 명을 넘음. 여성 니트 인구는 15~19세 20천명, 20~24세 199천명 그리고 25~29세는 445천명으로 전체 664천 명에 달함(김태홍 외, 2012:14~15).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 여성취

업난이 현재뿐만 아니라 향후 취업 및 경력개발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냄.

- 이에 국가차원에서는 청년층 여성의 취업난 해소 문제를 여성정책 12대 과제로 선정하여 세부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청소년 및 여대생 직업육구조사 및 진로 지도 강화 및 여대생 취업지원 및 인턴제 활성화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여성의 취업 능력 개발과 관련하여, 한부모 및 미혼모 등 경제 위기 여성에 대한 자립 및 취업 지원 교육과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지원 인프라 구축 및 커리어코칭 지원 사업 등을 벌이고 있음. 특히 제주지역은 전체 한부모가족 중 모자 가족이 75% 이상을 상회하고 있음(<표 8> 참조).

<표 8> 제주지역 한부모가족(Single Parent Families, 2000, 2005, 2010)

(단위: 가구, %)

구분		전체	모자가족	부자가족
2000	전체	13,481	10,650	2,831
	구성비	100.0	79.0	21.0
2005	전체	16,489	12,485	4,004
	구성비	100.0	75.7	24.3
2010	전체	18,048	13,591	4,457
	구성비	100.0	75.3	24.7

· 자료: 통계청 KOSIS, 인구주택총조사, 『2011 제주여성가족통계』, 133쪽 재구성.

- 글로벌 여성리더십 개발과 관련하여 여성지도자 교육 및 여성 공동체 의식 강화 교육 등이 시행되고 있음.

4) 여성 사회·문화 부문

-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 중에서 문화여가 지출비 등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 또한 이주민에 대한 문화적 편견 및 차별문제, 여성 문화예술 종사자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문제가 있음. 그러나 소득증대 및 노동시간 감소로 문화여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문화부문 여성일자리 문제, 문화적

포용력 제고 등에 대한 정책수요가 증가할 것임.

- 이러한 사회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는 여전히 낮은 성평등의식과 의사결정직의 낮은 여성 참여, 취약한 여성을 위한 문화여가 인프라 부족 등 사회문화와 관련된 여성 문제가 존재함.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1) 여성단체역량강화, 2) 여성자원봉사자 사회 참여 활성화, 3) 여성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4) 제주여성문화정립 및 선양, 5) 김만덕 나눔 정신 확산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음.
- 여성단체역량강화와 관련하여 여성단체별 정체성 확립을 비롯하여 여성의 정치참여의식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여성 정책 모니터링 사업이 설계되었으나 시행되고 있지 않음.
- 여성자원봉사자의 사회참여활성화와 관련하여 여성자원봉사자의 복지지원 강화를 비롯하여 여성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는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음. 현재 제주지역 여성 자원봉사 참여율은 20%이상 됨(<표 9> 참조).

<표 9> 자원봉사 참여율
(Participation Rate in Voluntary Services by Sex, 2009)

(단위: %)

구분	없음	있음						
		평균	환경보전 범죄예방	국가 및 지역행사	자녀교육 관련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재소자 관련	재해지역 주민돕기 및 시설복구	기타
전체	76.8	23.2	31.7	11.7	13.1	54.0	12.9	12.7
여자	78.3	21.7	23.9	5.4	21.4	62.8	6.6	10.4
남자	75.3	24.7	38.9	17.6	5.5	45.9	18.8	14.9

· 주 :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 자료 : 통계청 KOSIS, 사회조사, 『2011 제주여성가족통계』, 421쪽 재구성.

- 여성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문화의 이해 증진을 위한 문화교류 활동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음. 제주지역의 경우 『2011 제주여성가족통계』에 따르면 지역문화예술 행사 참여율이 2007년 기준 여성 참여자가 남성참여자를 추월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여성 문화예술 활동가들

의 교류뿐만 아니라, 제주지역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토대 지원이 요구됨.

- 제주여성문화 정립 및 선양과 관련하여, 제주지역 여성문화유산 발굴 및 해녀문화 정립 및 선양 확대 사업을 벌이고 있음. 제주지역의 경우 다른 지방과는 다른 여성문화를 형성하여 옴. 해녀의 경우 1995년 5,886명을 최고 정점으로 하여 2011년 4,881명으로 해녀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음. 해녀문화는 제주 여성문화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에 대한 문화 정립 및 선양 사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김만덕 나눔 정신 확산 사업과 관련하여, 김만덕의 나눔 정신을 기리기 위한 선양사업과 기념관 건립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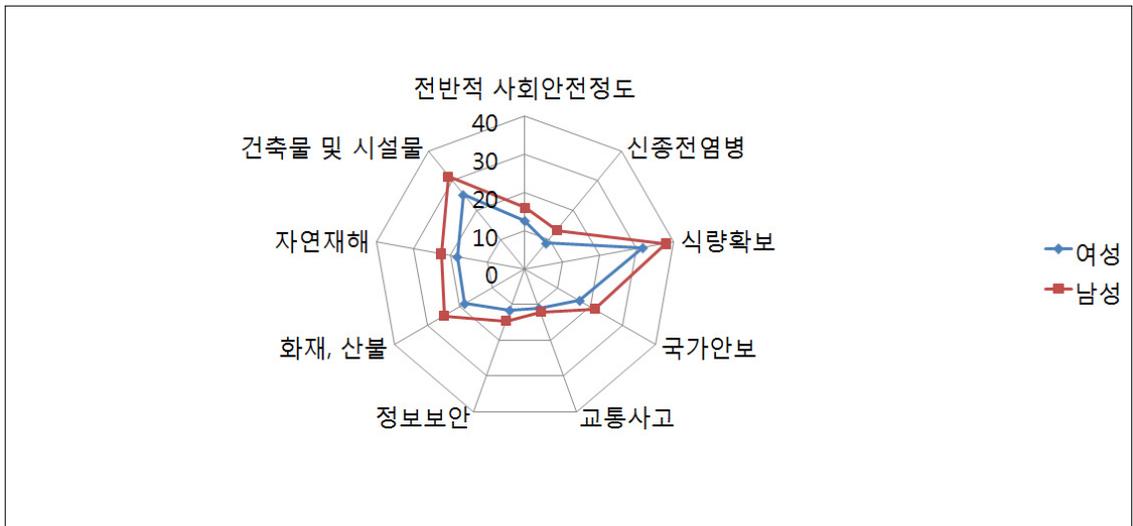
5) 여성인권 부문

- 우리나라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이 사회문제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며, 여성 및 아동의 안전 및 인권과 관련된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시행되었음. 그 결과 범죄 피해에 대한 여성들이 갖는 두려움은 인구비율상 2005년 67.8%에서 2008년 49.1%로 상당히 감소되었음.
 - 사회 안전도를 나타내는 지표 중의 하나인 야간보행의 두려움을 느끼는 인구 비율을 보면 2008년 기준 우리나라는 40.8%인데 비해서 아이슬란드는 6.0%, 노르웨이와 핀란드는 각각 14.0%, 일본 35.0%, 미국 19.0%, 영국 31.0%임. 즉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교하면 사회안전도가 상당히 낮음(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 19).
- 우리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안전을 나타내는 지표인 강력범죄 피해자수를 보면 여성피해자가 2005년 14,847명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 19,254명임. 남성피해자도 2005년 3,736명에서 2009년 5,649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여성피해자보다 훨씬 적음.
 - 강력범죄 여성 피해자수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2009년 우리나라는 여성 10만 명당 79명으로, 미국 여성 17.3명, 일본 5.7명보다 훨씬 높아서 여성의 사회안전도가 상당히 낮음.
 - 1995년 이후 강력범죄 여성 피해자수 변화 추이를 감안하면 2015년에는 여성

10만 명당 피해자수가 1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됨. 즉 현행 강력범죄와 관련된 정책 기초가 유지되면 2015년 우리나라 강력범죄 여성 피해자수는 인구 10만 명당 100명으로, 2009년 일본의 피해자 수준보다 15배, 그리고 2008년 미국의 5배나 많은 수준이 됨(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 20).

- 『2011 제주여성가족통계』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제주지역의 여성은 제주도의 전반적 사회안전정도에 대해 불안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33.6%, 안전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12.6%였으며, 남성의 경우 불안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26.4%, 안전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16.0%로 남녀 모두 제주특별자치도의 전반적 사회안전정도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 자료: 제주특별자치도(2011), 『2011 제주여성가족통계』, 78쪽 재구성.

<그림 3>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2010)

- 특히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에 있어서도 2010년 기준 불안함(비교적 불안과 매우 불안을 포함)을 느끼는 정도는 여성의 경우 61.1%, 남성의 경우 52.3%로 여성이 더욱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제주특별자치도, 2011:78).
- 또한 우리나라 부부폭력 발생률은 2004년 44.6%에서 2010년 53.8%로 크게 증가함. 폭력 유형별로는 중한 신체적 폭력은 4.8%에서 3.3%로 감소하였으나

경한 신체적 폭력은 11.1%에서 16.3%, 정서적 폭력은 33.1%에서 42.8%로, 경제 폭력은 4.1%에서 10.1%로, 방임의 경우에는 19.6%에서 30.5%로 증가함.

- 향후 가정폭력관련법과 관련 정책과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여성들의 가정폭력에 대한 민감성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그 결과 여성들의 파트너인 남성들의 폭력에 대한 인식과 행동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가정폭력에 따른 이혼율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 20).
- 여성인권 부문은 국가차원에서 제도적 논의가 상당부분 일어나고 있는 영역 중의 하나로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보호지원-집행-예방의 통합적 접근 강화가 여성정책 12대 과제 중의 하나로 시행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1) 여성인권에 대한 사회의식 제고, 2)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방지를 위한 기반 조성, 3)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내실화, 4) 성매매 방지 집행력 강화와 성매매 피해자 지원 강화, 5) 여성장애인과 이주 여성 폭력 방지, 6) 성희롱예방체계 확립 및 교육 강화 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음.
- 여성인권에 대한 사회의식 제고와 관련하여 해마다 주요 범죄의 여성 피해자 수가 증가에 있음. 특히 폭행, 상해, 성매매 등과 관련하여서는 큰 폭으로 증가함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비롯하여, 관련 조례 제정 및 관련기관들의 네트워크 구축과 실질적 운영을 시행하고 있음.
-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방지를 위한 기반 조성과 관련하여 여성폭력 관련 통계 구축을 비롯하여 지원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 강화 및 처우 개선, 폭력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 가해자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음. 이외에도 아동안전지킴이집 등이 시행되고 있음(<표 10> 참조).

<표 10> 아동안전지킴이집 현황(Number of Child Safety House, 2010)

(단위: 건)

선정위치별							선정업소형태별					
전체	유치원	학교	아파트 단지	놀이터	공원	통학로	전체	24시간 편의점	약국	문구점	상가	기타
705	52	281	58	24	40	250	705	85	28	65	147	380

· 자료: 제주지방경찰청, 경찰통계연보(2010), 『2011 제주여성가족통계』, 460쪽 재구성.

-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내실화와 관련하여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의 내실화,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주거 지원 확대,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적 자활센터 운영 등이 시행되고 있음.
- 성매매 방지 집행력 강화와 성매매 피해자 지원 강화와 관련하여, 지역맞춤형 성매매 방지 대책 수립 및 집행력 강화, 성매매 예방 교육 강화, 성매매 피해자 구조 지원 시설 운영의 내실화, 성매매 피해 청소년과 이주 여성 보호 및 지원 강화,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 대책 강화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음. 제주지역의 경우 성폭력 상담건수는 2004년 기준 3개 상담소 4,577건이었으나 2009년 기준 1,631건수로 감소함.

<표 11> 성폭력 상담소 상담건수

(Number of Counselling by the Types of Sexual Violence, 2005~2009)

(단위: 건)

구분	전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	
	상담소	상담건수	상담소	상담건수	상담소	상담건수	상담소	상담건수
2004	7	9,197	3	4,562	3	4,577	1	58
2005	10	10,530	6	5,466	3	4,152	1	912
2006	9	10,192	5	6,385	3	3,197	1	610
2007	7	10,759	3	6,686	3	3,292	1	781
2008	7	6,581	3	4,013	3	1,921	1	647
2009	7	9,968	3	7,545	3	1,631	1	792
제 주 시	6	9,581	2	7,158	3	1,631	1	792
서귀포시	1	387	1	387	-	-	-	-

· 자료: 제주특별자치도(2011), 『2011 제주여성가족통계』, 461쪽 재구성.

- 여성장애인과 이주여성 폭력 방지와 관련하여, 여성장애인 폭력 피해자 쉼터 등 지원 강화, 여성장애인 종합상담소 설치 및 운영,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강화 등이 시행되고 있음.
- 성희롱예방체계 확립 및 교육 강화 사업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 강화, 다차원적 성희롱 예방 교육체계 구축과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실화 등이 시행되고 있음.

6) 여성 건강·복지 부문

- OECD 복지지표(Well-being indicators)에 의하면 건강은 여성의 삶과 경제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므로, 일반적으로 건강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보다 높은 평균소득 및 삶의 만족도와 함께 높은 경제 및 정치활동 참여를 보임.
- 우리나라 국민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일본 다음으로 자신의 건강상태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혹은 건강문제로 고통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성별로 보면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그리고 고령층은 청년층보다 더 자신의 건강상태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혹은 건강문제로 고통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여성 고령인구 구성비를 보면 2000년 65세 이상 구성비가 8.2%, 2010년 11.6% 그리고 2015년 13.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80세 이상 여성 고령인구가 2000년 348천명에서 2010년 675천명 그리고 2015년 973천명으로 거의 1,000천 명에 육박하게 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고령 여성인구 증가는 노인건강, 돌봄, 노후 소득 보장 등에 대한 정책 수요를 증가시킬 것임.
- 여성의 건강상태를 생애주기별로 보면 노인기, 성인기, 청소년기마다 처한 문제의 특수성을 발견할 수 있음. 노인기 여성의 경우 과거 남편의 경제적 능력이나 자녀의 경제적 수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저소득계층으로 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신의 건강관리나 투자에 소홀하게 되는 상황을 야기함.
 - 성인기 여성의 경우 고령 임신에 따른 출산 및 산육에 대한 문제, 우울 및 자살에 대한 생각이 남성보다 2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여성의 우울경험률이나 자살생각률 혹은 시도율은 남녀 사회적 역할 차이가 뚜렷하고 성불평등 정도가 큰 국가의 경우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미혼 1인 단독 여성가구를 비롯하여 노인부부 가구 등의 구성비가 전체 가구 중에서 증가함에 따라 사회서비스 확충이 논의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의 확충으로 여성의 돌봄 노동을 국가 및 사회가 분담하는 계기가 되고 있음.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1) 여성 건강 증진과 건강한 생활, 2) 여성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3) 여성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 4)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 5) 도서지역 여성을 위한 사회

복지서비스 강화, 6) 이주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7) 미혼모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8) 빈곤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여성 건강증진과 건강한 생활과 관련하여, 여성의 건강권 확립과 건강증진 강화를 위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2005년 기준 연령별 기대여명은 0세 여아가 86.48세, 남아가 79.17세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여성노인에 대한 건강권 확립 문제가 주목됨.
- 여성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강화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노인의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 하는 사업을 비롯하여 저소득 여성노인의 소득지원 사업 및 여성노인을 위한 일시보호시설 및 수발서비스 등이 시행되고 있음. 향후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로 가장 부각되고 있는 것은 노인돌봄 서비스임. 2009년 기준 성별, 교육수준별에 관계없이 노인돌봄 서비스는 42.1%를 차지하고 있음(<표 12> 참조). 이는 노인문제가 전체 복지 문제에서 점차 중요 문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표 12> 향후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

(Areas of Improvement Needed in the Welfare Policies, 2009)

(단위: %)

구분	노인 돌봄 서비스	산모 신생아 돌봄 서비스	장애인 돌봄 서비스	맞벌이 및 한부모가구의 자녀양육 지원서비스	비만 아동관리 서비스	저소득층 아동자립자금 지원서비스	장애인 재활 지원 서비스	장애아 교육 서비스	기타
전체	42.1	6.0	7.5	21.0	2.6	15.5	4.3	1.0	-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11 제주여성가족통계』, 385쪽 재구성.

- 또한 전체 노인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꼽고 있음. 전체 노인이 겪는 문제 중 2005년 기준 36.8%, 2009년 기준 43.0%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특히 저소득 노인 및 여성노인 계층이 겪는 어려움은 더욱 큼. 이는 소득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함.

- 여성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강화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여성장애인의 고용 확대 및 취업률 제고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2009년 기준 우선적으로 확대 실시되어야 할 여성장애인 복지사업으로 가장 우선시 시행되어야 할 사업으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이었으며, 전체 항목 중 20.9%를 차지하였음.

<표 13> 우선적으로 확대 실시되어야 할 장애인 복지사업
(Priority New Welfare Programs for the Disabled, 2009)

(단위: %)

구분	장애수당지급	의료비지원	교육비지원	주거비지원	자립자금지원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전체	20.2	14.0	5.5	4.1	5.9	23.9
여자	19.2	14.2	5.2	4.5	5.9	20.9
남자	21.3	13.7	5.9	3.8	5.8	26.8
구분	장애인 생활시설 및 복지관 확충	재활보조기구 배부	장애인활동 보조인 지원	장애인의 문화예술행사 참여지원	장애인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분위기 조성	기타
전체	10.4	3.0	3.0	0.9	9.0	-
여자	10.9	3.0	3.8	1.0	11.3	-
남자	9.9	3.0	2.2	0.9	6.7	-

· 자료: 통계청 KOSIS, 사회조사, 『2011 제주여성가족통계』, 398쪽 재구성.

- 여성 농어업인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농업인 지위향상 및 전문인력화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여성 잠수어업인을 위한 소득사업 지원 및 여성 잠수어업인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의 해녀수는 2010년 기준 4,995명으로 50세 이상이 97.5%를 차지하고 있음.
- 도서지역 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강화와 관련해서는 도서지역 여성들의 교육, 문화 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소득향상 지원과 복지서비스 등에 대한 사업이 설계되어 있음.

- 이주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강화와 관련하여서는 제주지역의 결혼이민자는 2010년 기준 1,614명으로 1,099명이 제주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1,022명이 여성임. 이 중 293명은 귀화하였지만, 729명은 미귀화자임. 이주여성과 관련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업은 사회문화 적응을 위한 자립, 자활 교육 등이 설계되어 있음.
- 미혼모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강화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미혼모 자립지원 시설 확대 등의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빈곤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강화와 관련하여, 현재 제주지역 저소득 및 한부모 가족은 2009년 기준 3,361가구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는 빈곤여성 기초 생활보장, 한부모가족 빈곤여성 지원 강화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음(<표 14> 참조).

<표 14> 저소득 및 한부모가족
(Low Income Single-Parent Families, 2005~2009)

구분	합계		한부모가족지원법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수	가구원수	가구수	가구원수	가구수	가구원수
2005	2,228	5,987	1,370	3,536	858	2,451
2006	2,441	6,717	1,537	4,099	904	2,618
2007	2,808	7,614	1,747	4,556	1,061	3,058
2008	3,051	8,179	1,948	5,145	1,103	3,034
2009	3,361	9,192	2,219	5,944	1,142	3,248

· 자료: 제주통계연보, 저소득 및 한부모 가족, 『2011 제주여성가족통계』, 388쪽 재구성.

7) 여성 권익·성주류화 강화 부문

- 국제기구에 의하면 성평등한 국가일수록 경제성과가 좋고 삶의 질과 복지 수준이 높게 나타남.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성평등 수준이 상당히 낮은 국가에 속함. 특히 우리나라는 정치부문의 대표성 영역, 정부 및 민간부문의 의사결정직 여성 참여가 저조함.

- 이에 따라 국가 성평등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부문의 성평등정책과 함께 정부 및 민간 부문 여성의 의사결정직 참여, 정치부문 대표성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제안되고 있음.
- 또한 주요국의 성평등 수준과 1인당 국민소득을 보면 남녀평등한 국가일수록 1인당 국민소득도 높은 특징을 보임. 우리나라는 남녀차별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였으나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및 중동국가들은 경제수준이나 국민소득수준에 비해서 남녀평등 수준이 상당히 낮음.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은 주요 OECD 회원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보다도 낮음.
- 우리나라에서 여성 대표성이 낮은 주요 영역으로는 정치, 행정, 민간기업 부문임. 이들 영역 중에서 정치 영역의 여성대표성과 관련된 국회의원 여성비율을 보면 과거에 비해서 여성비율이 개선되었으나 아직 13.7%로 상당히 낮음. 즉 우리나라 국회의원 여성비율은 13.7%인데 비해, OECD회원국 평균 국회의원의 여성비율은 20.6%이고, 스웨덴 47.0%, 핀란드 41.5%, 네덜란드 39.1, 덴마크 38.0%, 벨기에 36.2%, 노르웨이 36.1%, 뉴질랜드 33.6% 등임(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 26~27).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1) 성분석 기반 확립 및 성인지 정책 실행, 2)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 확대, 3) 공공부문 여성정책 추진, 4) 시민사회 연계 여성정책 추진, 5) 공공 및 민간부문 양성평등 교육 활성화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성평등 기반 조성을 위하여 2012년 4월 ‘성별영향분석평가 기관’으로 지정받아 성주류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공공부문 여성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6.3%, 2009년 8.3%, 그리고 2010년 9.0%로 극히 낮음. 민간기업에서도 여성관리직 진출은 아주 저조함.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 대상 사업체의 2010년 기준을 보면 종업원 1,000인 이상인 사업체에서 여성관리자가 한 명도 없는 사업체가 16.4%, 5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31.2%임(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145~146). 이와 같이 여성이 하위직에 집중 종사하고 있는 현상은 승진차별 등과 같은 유리천장존재 등에 기인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2010년 기준 5급 여성공무원의 경우 8.9%(제주시청 12.7%, 서귀포시청 12.2%)이며, 4급 2.6%, 3급 18.8%를 차지하고 있어 국가 전체보다는 나은 상황이나 여전히 공공부문 여성 진출은 어려운 편임.
- 그 외 제주특별자치도는 시민사회 연계 여성정책 및 공공 및 민간부문 양성평등 교육 활성화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8) 여성친화도시 부문

-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여성정책의 정착된 완결적 행정단위를 말함.
-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의지가 강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지속가능한 성평등사회의 실현을 위해 정책을 수립, 집행함에 있어 젠더 관점을 도입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2011년 12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2012년 현재 여성친화적인 지역만들기 사업을 진행 중임.

2. 보완계획 수립 방향과 절차

1) 보완계획 수립 방향

- 여성정책 중기계획 중간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보면 인권 부문이 23개 과제 중 20개가 추진되어 8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여성친화도시 부문이 6개 중 5개(83%), 가족 부문이 15개 중 11개(73%), 사회·문화 부문이 13개 중 8개(61%), 권익·성주류화 강화 부문이 19개 중 10개(52%), 건강·복지 부문이 22개 중 11개(50%), 경제 부문이 14개 중 6개(42%), 인력개발 부문이 15개 중 6개(40%) 순으로 추진되었음(<표 15> 참조).

<표 15> 제4차 여성정책 중기계획 전반기(2011~2012) 추진 실적

	구분	정책과제 수	세부과제 수	추진과제 수 (비율)
1영역	여성 가족 부문	5	15	11(73%)
2영역	여성 경제 부문	5	14	6(42%)
3영역	여성 인력개발 부문	5	15	6(40%)
4영역	여성 사회·문화 부문	5	13	8(61%)
5영역	여성 인권 부문	6	23	20(87%)
6영역	여성 건강·복지 부문	8	22	11(50%)
7영역	여성 권익·성주류화 강화 부문	5	19	10(52%)
8영역	여성친화도시 부문	2	6	5(83%)
합계	8	41	127	77(60%)

- 가족 영역에는 국비사업과 다른 기관의 추진 사업이 포함된 경우 실적 집계
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후반기 과제에는 반영하지 않음.
- 경제 영역에서는 여성의 취·창업과 경제활동 기회 제공에 필요한 정책이 수
립됨. 2년간 특정 교육훈련 기관에 위탁하여 내용은 풍부한 반면 추진결과가
부족하게 집계됨.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공간을 가족친화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에도 권장하는 정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했음. 즉 정책 추진
부서의 의지는 높으나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를 위한 환경 조성이 미흡한 결
과로 보임. 따라서 후반기 과제 수립 시 수정·보완하였음.
- 인력개발 영역을 보면 미래세대 여성 대상 능력개발 정책 지원이 일부 대학
기관에 집중되면서 다양한 정책 추진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임. 또
한 취업 능력개발 정책은 경제 영역과 중복 추진됨으로써 추진실적이 저조
함. 따라서 이런 점을 보완하여 후반기 과제에 반영하였음.
- 사회·문화 영역에서는 여성들의 자율적 소모임 활성화와 여성 문화예술 활동
등이 추진되지 못한 점을 참고하여 후반기 과제에 수정하였음.
- 인권 영역의 추진실적이 높은 것은 성평등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민·관 협력
체제 구축이 잘되고 있음을 보여줌. 후반기 과제에도 지속 사업으로 반영함.
- 건강·복지 영역에서는 도서지역 여성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지 못했으며, 여성
장애인, 여성농어업인, 이주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을 위한 복지 사업은 추진
실적이 저조하나 후반기에 수정·보완하여 지속성 유지에 역점을 두었음.

- 권익·성주류화 강화 영역에서는 주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와 민간인 대상 성평등교육 정책이 미흡하므로 후반기에는 과제를 수정·보완하여 성인 지체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려했음.
- 여성친화도시 영역은 계획 대비 추진실적이 높은 편임. 이 과제는 후반기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반영했음.
- 제4차 여성정책 중기계획은 2010년 계획 수립 시점에서 국가와 지방의 사회·경제·문화적 여건을 고려하여 정책과제와 세부추진과제를 설정하였음.
 - 8영역, 41개 정책과제, 127개 세부과제를 수립하여 시행한 결과 전반기에는 77개의 세부과제가 추진되어서 60%의 목표가 달성됨.
 - 이는 제3차 여성정책 중기계획(2007~2010) 추진실적 68.8%(138개 과제 중 95개 추진)과 비교하면 목표 대비 성과 목표 달성도가 높은 편임.
- 2년간 여성정책 중기계획을 적용하여 사업을 추진한 결과 2011년이나 2012년에 단기적으로 종료된 사업이 있음. 또한 사업에 따라 전액 국비(일시적 지원금) 부담인 사업은 지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져 추진 실적이 단발적이고, 후반기에도 지속 여부는 고정적이지 못함.
- 4년간 추진되는 여성정책이므로 반드시 모든 사업이 이 기간 동안 지속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보며, 사업에 따라 1년, 2년, 3년, 4년이라는 기간이 적용되어야 함. 계획수립 당시 중요한 정책으로 판단하여 계획에 반영하였으나 4년 후 평가 시점에서 추진이 되지 않았더라도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평가되면 5차 여성정책 중기계획에도 반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봄.
- 다만 정책과제 설정 시 사업 추진 가능성에만 초점을 두게 되면 다양한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음. 이런 점을 고려하여 제4차 중기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전반기 이행점검 결과 미추진 사업으로 남게 되어 계획의 적합성 여부가 문제될 소지도 있음.
- 전반기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정책과제에 따라 추진부서의 변경, 성별분리 통계가 잡히지 않는 과제, 특정 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으로 추진되는 사업 등이 있으므로 이런 점을 토대로 하여 후반기(2013~2014) 추진 과제를 보완하는 데 반영했음.
 - 전반기 추진실적을 참고하여 후반기 계획은 영역과 정책과제 수를 조정하여 구체적인 사업 발굴에 역점을 두었음. 유사한 영역과 정책과제를 통합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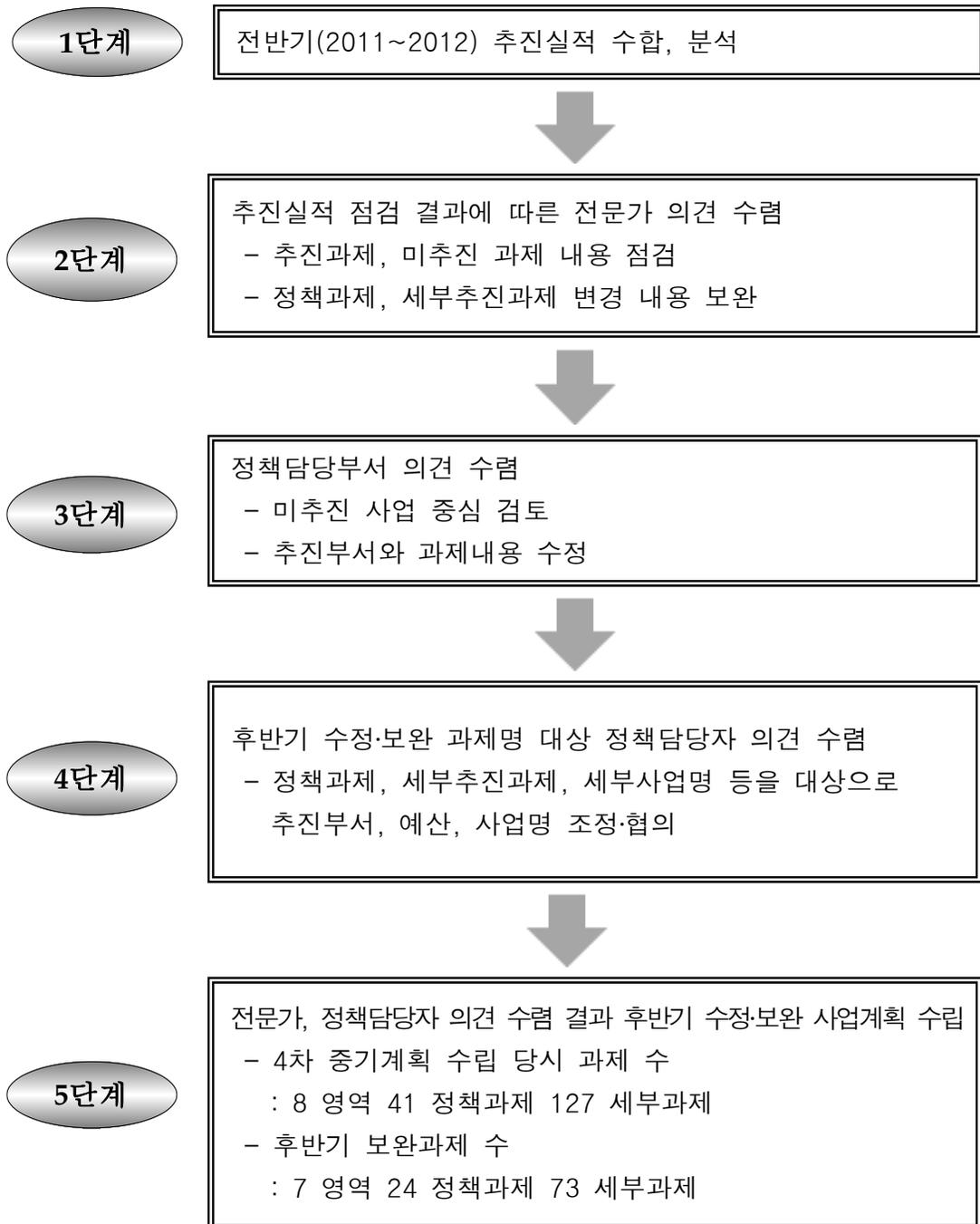
일부의 과제는 영역에 적합하게 재배치하였음.

- 여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의 범위를 벗어나서 다른 기관이나 민간 영역에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은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후반기에는 세부과제나 구체적인 사업을 일부 수정하였음.
- 중기계획의 수정·보완 과제 선정은 전문가와 정책담당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과제명을 보완하였음. 추진 내용상 배치가 부적절한 경우 세부과제의 통합, 이동, 삭제의 절차를 따랐음. 특히 전반기 2년간 추진실적이 없는 과제는 사업명을 수정하고, 다각도로 검토 후에 후반기에 추진하기 어려운 내용들은 삭제하였음.
- 정책과제, 세부과제, 추진내용 등은 계속사업, 수정사업, 신규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음.
- 전반기에는 8영역으로 구분하였으나 후반기에는 7영역으로 수정하여 정책과제 24, 세부과제 73개를 수립했음(<표 16> 참조).
- 2영역 여성 경제 부문과 3영역 여성 인력개발 부문은 통합하여 하나의 영역으로 설정한 것은 여성들의 경제참여 기회와 경제활동 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됨.
- 후반기 보완 내용을 보면 정책과제 24개 중에 수정과제 6개, 계속과제 18개임.
- 세부과제 73개 중에 신규과제 3개, 수정과제 22개, 계속과제 48개임.
- 각 세부과제별로는 전체 193개 중에 신규사업 33개, 수정사업 31개, 계속사업 129개임.

<표 16> 제4차 여성정책 중기계획 후반기(2013~2014) 추진 계획

	구분	정책과제 수	세부과제 수
1영역	여성 가족 부문	4	11
2영역	여성 경제·인력개발 부문	3	6
3영역	여성 사회·문화 부문	3	10
4영역	여성 인권 부문	6	24
5영역	여성 건강·복지 부문	3	13
6영역	여성 권익·성주류화 강화 부문	6	18
7영역	여성친화도시 부문	2	4
합계		24	73

2) 보완계획 수립 절차



<그림 4> 계획 수립 절차

3. 목표와 전략



<그림 5> 목표와 전략

IV. 제4차 여성정책 중기계획 보완 정책과제

1. 여성 가족 부문

1) 정책과제명

정책과제	세부과제
1-1. 지역사회가 책임지는 일·가족 양립 지원 정책 강화	1-1-1. 일·가족 양립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전환 확대
	1-1-2. 영유아 보육 지원
1-2. 제주형 보육정책 개발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	1-2-1. 야간 돌봄 어린이집 단계적 확대
	1-2-2. 보육시설 친환경 농산물 급식 지원
	1-2-3. 보육시설 종사자 전문성 강화
	1-2-4. 12살 이하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 무상 시행
1-3. 다양한 가족에 대한 통합적 인프라 구축	1-3-1.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
	1-3-2.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1-3-3. 국제결혼중개업 관리 강화
1-4. 이주 여성을 위한 사회통합 서비스 강화	1-4-1. 이주여성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사업 확대
	1-4-2. 이주 여성의 사회문화 적응을 위한 자립·자활 교육과 훈련 확대

2) 목적과 필요성

- 세계 각국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여성 노동력의 사회적 자원화 필요성,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맞벌이 가족의 확대 등으로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이 요구됨.
- 이에 제주지역에서도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 및 제주여성과 가족을 위한 효율적인 기반 조성이 필요함.
- 이주여성들은 불안정한 신분 때문에 결혼제도 안에서 인권을 보장받을 수 없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서 한국문화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자녀의 교육지원 등 다양한 정책 마련과 문화적응 프로그램의 체계적 마련이 필요함.

3) 세부사업별 추진 계획

정책과제	1-1. 지역사회가 책임지는 일·가족 양립 지원 정책 강화
------	----------------------------------

1-1-1. 일·가족 양립에 대한 도민들의 의식전환 확대

사업 목적

- 일·가족 양립의 사회적 환경을 시민교육을 통하여 홍보

추진 방법

- 일·가족 양립이 조성될 수 있는 교육 및 네트워크 운영

연도별 추진 계획

사업내용	연도별 소요예산(단위: 백만원)		비고
	2013년	2014년	
일·가족 양립에 대한 시민교육 및 홍보	1	1	계속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	비예산	비예산	계속
일·가족 양립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2	2	계속
합계	3	3	

추진 부서

- 여성가족정책과

1-1-2. 영유아 보육 지원

사업 목적

- 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욕구 반영
-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 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추진 방법

- 무상보육료에 대한 지원 대상을 연차적으로 확대

연도별 추진 계획

사업내용	연도별 소요예산(단위: 백만원)		비고
	2013년	2014년	
무상 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	87,527	95,000	수정
합계	87,527	95,000	

추진 부서

- 여성가족정책과

정책과제	1-2. 제주형 보육정책 개발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
------	------------------------------

1-2-1. 야간 돌봄 어린이집 단계적 확대

사업 목적

- 여성 취업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
- 맞벌이 가정을 위한 보육부담을 경감하고 보육의 공공성 제고

추진 방법

- 제주지역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확대
- 영아전담, 장애전담, 장애아동 통합 등 취약보육 시설수의 확대

연도별 추진 계획

사업내용	연도별 소요예산(단위: 백만원)		비고
	2013년	2014년	
시간 연장 보육 확대	-	-	계속
장애아 통합시설 운영	80	80	계속
민간보육시설 공보육 운영	2,434	2,800	계속
합계	2,514	2,880	

- 추진 부서
- 여성가족정책과

1-2-2. 보육시설 친환경 농산물 급식 지원

- 사업 목적
- 부모의 보육 부담 경감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

- 추진 방법
- 친환경 급식 추진

- 연도별 추진 계획

사업내용	연도별 소요예산(단위: 백만원)		비고
	2013년	2014년	
친환경 농산물 급식	200	200	수정
합계	200	200	

- 추진 부서
- 친환경농정과

1-2-3. 보육시설 종사자 전문성 강화

- 사업 목적
-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및 전문성 강화
-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 추진 방법
- 민간시설 보육교사의 인건비 보조 확대
- 보육교사의 보수 교육, 국내외 연수기회 확대를 통해 전문성 제고

연도별 추진 계획

사업내용	연도별 소요예산(단위: 백만원)		비고
	2013년	2014년	
정부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32,306	33,100	수정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65	67	계속
보육교사 해외연수	50	55	계속
보육담당 연찬회	비 예 산		계속
합계	32,421	33,222	

추진 부서

- 여성가족정책과

1-2-4. 12살 이하 어린이 필수 예방 접종 무상 시행

사업 목적

- 예방접종 비용 부담 경감

추진 방법

- 필수 예방접종 무상 실시

연도별 추진 계획

사업내용	연도별 소요예산(단위: 백만원)		비고
	2013년	2014년	
예방접종 무상 실시	1,956	2,000	계속
합계	1,956	2,000	

추진 부서

- 보건위생과

정책과제	1-3. 다양한 가족에 대한 통합적 인프라 구축
------	----------------------------

1-3-1.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

- 사업 목적
 - 취약계층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여 방과 후 학습지도 및 보호 제공
- 추진 방법
 -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후 지원 확대
- 연도별 추진 계획

사업내용	연도별 소요예산(단위: 백만원)		비고
	2013년	2014년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확대	2,800	3,000	수정
합계	2,800	3,000	

- 추진 부서
 - 여성가족정책과

1-3-2.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 사업 목적
 - 다문화가족의 체계적 지원 기반 구축
 - 제주지역의 개방성 향상을 위한 다문화사회 환경 조성
- 추진 방법
 - 민간영역과 공공영역 간 협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반 구축
 - 방문교육지도사 파견, 멘티-멘토 맺기 등 통합적 서비스 지원

□ 연도별 추진 계획

사업내용	연도별 소요예산(단위: 백만원)		비고
	2013년	2014년	
다문화가족지원 협의회 운영의 활성화	-	-	계속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시책 수립 및 지원	6	6.5	계속
방문교육지도사 파견	375	375	신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및 사회통합 지원 교육	10	10	계속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확대	5	5	수정
합계	396	396.5	

□ 추진 부서

- 여성가족정책과

1-3-3. 국제결혼중개업 관리 강화

□ 사업 목적

- 국제결혼중개업소에 대한 관리 감독의 강화와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 처분의 강화를 통해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 감소 기대

□ 추진 방법

- 합법적 결혼중개업 등록을 위한 지도, 감독 강화
- 결혼중개업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 처분 강화

□ 연도별 추진 계획

사업 내용	연도별 소요예산(단위: 백만원)		비고
	2013년	2014년	
합법적 결혼 중개업 등록을 위한 지도, 감독 강화	비예산	비예산	계속
결혼중개업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 처분 강화	비예산	비예산	계속

- 추진 부서
- 여성가족정책과

정책과제	1-4. 이주여성을 위한 사회통합 서비스 강화
------	---------------------------

1-4-1. 이주여성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사업 확대

- 사업 목적
 - 다문화·다인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돕고 국제결혼 가족의 자존감 고취 등 다문화 이해와 수용의 계기 마련
 - 이주여성들의 다양한 욕구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 개발하여 방문 지원함.

- 추진 방법
 - 이주여성가족 다문화 이해 교육 확대
 - 이주여성 대상 교육 지원 등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확대

연도별 추진 계획

사업내용	연도별 추진계획(단위: 백만원)		비고
	2013년	2014년	
이주여성가족 다문화 이해 교육	20	20	계속
이주여성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30	30	계속
이주여성 관련 기관 지원 사업	310	310	계속
합계	360	360	

- 추진 부서
- 여성가족정책과

1-4-2. 이주여성의 사회문화 적응을 위한 자립·자활교육과 훈련 확대

사업 목적

- 이주여성의 한국문화 적응을 위한 교육과 훈련 기회 확대, 이주여성과 자녀를 위한 심리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 이주여성 가족을 위한 다문화 이해 교육 등을 추진하여 이주여성들의 조기정착과 사회문화 적응을 돕고자 함.

추진 방법

- 단계별 교육, 시간대별 교육 등 교육방법의 다각화 추진으로 접근성 고취
- 다문화 전문교육기관, 교육자양성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으로 양성된 전문가, 교육자 자원봉사 활동 확대

연도별 추진 계획

사업내용	연도별 추진계획(단위: 백만원)		비고
	2013년	2014년	
이주여성의 사회문화 적응 프로그램 사업	50	50	계속
이주여성을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	50	50	계속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욕구조사	-	-	계속
합계	100	100	

추진 부서

- 여성가족정책과

2. 여성 경제 · 인력개발 부문

1) 정책과제명

정책과제	세부과제
2-1. 여성의 취업 능력 개발	2-1-1. 청년여성 및 여대생의 취업 지원 활성화
	2-1-2.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지원 인프라 구축
2-2. 여성일자리 창출 활성화	2-2-1. 여성기업인 육성 지원
	2-2-2. 여성경제인 종합지원센터 창업보육시설 확충
2-3. 여성 고용의 사회적 지원체제 구축	2-3-1. 여성기업 생산제품 공공 구매 확대
	2-3-2. 여성친화적 고용환경 조성

2) 목적과 필요성

- 일과 가정을 양립하여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여성들이 많아짐에 따라 이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함.
- 제주여성의 고용기회를 높여주고 이직률이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취업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제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음.
- 청년여성과 여대생의 진로지도와 취업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3) 세부사업별 추진 계획

정책과제	2-1. 여성의 취업 능력 개발
------	-------------------

2-1-1. 청년여성 및 여대생의 취업 지원 활성화

사업 목적

- 청년여성 대상 맞춤형 직업 교육을 통해 직업 능력 개발
- 수요자 중심의 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류

추진 방법

- 제주대학교 WISSET센터와 협력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여성취업 지원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연도별 추진 계획

사업 내용	연도별 소요예산(단위: 백만원)		비고
	2013년	2014년	
청년여성 및 여대생의 경력개발지원	50	50	신규
여성취업지원기관 등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	비예산	비예산	신규
합계	50	50	

추진 부서

- 여성가족정책과

2-1-2.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지원 인프라 구축

사업 목적

-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기회 확대
- 급격하게 변하는 노동시장 적응을 위한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훈련 규모 확대

추진 방법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중심 직업 훈련 프로그램 지원

연도별 추진 계획

사업 내용	연도별 소요 예산(단위: 백만원)		비고
	2013년	2014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지원	595	595	신규
합계	595	595	

- 추진 부서
- 여성가족정책과

정책과제	2-2. 여성일자리 창출 활성화
------	-------------------

2-2-1. 여성기업인 육성 지원

- 사업 목적
 - 여성기업인이 창업한 회사에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여성기업인들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추진 방법
 - 여성기업인이 생산한 물품 판매 지원
 - 여성기업인 대상 웹기반 구축, CEO포럼 운영 지원

연도별 추진 계획

사업내용	연도별 소요예산(단위: 백만원)		비고
	2013년	2014년	
여성기업인 전시 판매 지원	10	10	신규
여성기업인 웹기반구축	10	10	신규
여성기업인 CEO포럼	5	10	신규
합계	25	30	

- 추진 부서
- 기업지원과

2-2-2. 여성경제인 종합지원센터 창업보육시설 확충

사업 목적

- 여성경제인들의 창업과 경영 환경 조성

추진 방법

- 여성기업 대상 창업보육센터 시설 제공

연도별 추진 계획

사업내용	연도별 소요예산(단위: 백만원)		비고
	2013년	2014년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창업보육 시설 확충	2012년 4억 (시설비)	-	신규

추진 부서

- 기업지원과

정책과제	2-3. 여성 고용의 사회적 지원체제 구축
------	-------------------------

2-3-1. 여성 기업 생산제품 공공 구매 확대

사업 목적

- 여성기업인 육성과 여성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여성 기업인 생산 제품 구매 유도

추진 방법

- 일반인 대상 여성기업의 생산 제품 판매 홍보, 구매 동기 부여

연도별 추진 계획

사업내용	연도별 소요예산(단위: 백만원)		비고
	2013년	2014년	
여성기업 생산제품 공공 구매 확대	비예산	비예산	신규

추진 부서

- 기업지원과

2-3-2. 여성친화적 고용환경 조성

사업 목적

- 여성들이 직업인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 여성들이 육아와 직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 고용환경 마련

추진 방법

- 성평등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실시
-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교육
- 모성보호를 위한 출산휴가, 출산대체 인력 확보

연도별 추진 계획

사업내용	연도별 소요예산(단위: 백만원)		비고
	2013년	2014년	
성평등 직장문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	8.5	8.5	신규
여성친화 고용환경 개선 교육아카데미 실시	10	10	계속
일·가정 양립 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2	2	수정
모성보호사업	-	-	신규
합계	20.5	20.5	

추진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고용지원과), 여성가족정책과

3. 여성 사회·문화 부문

1) 정책과제명

정책과제	세부과제
3-1. 글로벌 여성리더십 역량 확대	3-1-1. 여성지도자 역량 강화 및 공동체 의식 확산
	3-1-2.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3-1-3.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모니터링 기능
	3-1-4. 여성 자원봉사자의 활동 및 복지지원 강화
3-2. 제주 여성문화 선양 및 문화예술 활성화	3-2-1. 다양한 문화의 이해 증진을 위한 문화 교류 확대
	3-2-2. 여성문화 자료 구축 및 활용 강화
	3-2-3. 여성 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
	3-2-4. 해녀문화 정립 및 선양 확대
3-3. 김만덕 나눔정신 확산	3-3-1. 김만덕 선양 사업
	3-3-2. 김만덕기념관 건립

2) 목적과 필요성

- 제주여성은 사회참여 의지가 높고, 단체에 가입하는 등 공동체정신을 발휘하려는 토양은 구축되어 있으나 사회적 참여 기회가 적고 활동 영역이 위축되어 있으므로 여성지도자의 역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함.
- 제주여성의 정체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제주여성문화는 현재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자립적이고 탁월한 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그 중심에 김만덕과 해녀문화가 속해 있음. 김만덕과 해녀가 제주의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3) 세부사업별 추진 계획

정책과제	3-1. 글로벌 여성리더십 역량 확대
------	----------------------

3-1-1.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및 공동체 의식 확산

사업 목적

- 성평등의식 확산과 여성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문화다양성 의식 확산
- 지역사회 발전 및 여성권익 향상을 위한 여성단체의 역할에 대한 공감대 조성

추진 방법

-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하여 지도자 및 실무자 교육과정 운영
- 여성단체 협의체를 중심으로 하여 단체 간 활동 분담 및 교류, 연계 관련 교육 실시
- 제주 전통문화 교육을 확대하여 국내외 여성문화 교류의 활성화 시도

연도별 추진 계획

사업 내용	연도별 소요 예산(단위: 백만원)		비고
	2013년	2014년	
여성지도자 교육	100	100	계속
국내외 여성단체 교류 활성화	4	4	수정
전문여성을 위한 맞춤형 외국어 교육 실시	50	50	계속
제주 전통문화 교육 확대	60	60	계속
양성평등 및 여성역량강화 교육 지원	162	162	수정
합계	376	376	

추진 부서

- 여성가족정책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3-1-2.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사업 목적

-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 다양한 지도자 양성을 위해 체계적·전문적 훈련 기회 제공

추진 방법

- 세대별 맞춤형 지도자 양성 훈련
-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전문성 강화 훈련

연도별 추진 계획

사업내용	연도별 소요 예산(단위: 백만원)		비고
	2013년	2014년	
여성지도자 양성 및 지원	6	7	계속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관련 아카데미 운영	4	4	계속
합계	10	11	

추진 부서

- 여성가족정책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3-1-3.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모니터링 기능

사업 목적

-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 유도
- 양성평등정책 실현을 위한 도민참여 기회 제공

추진 방법

- 단계별, 시기별 여성정책 추진 과정 모니터
- 여성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 유도

연도별 추진 계획

사업내용	연도별 소요예산(단위: 백만원)		비고
	2013년	2014년	
여성정책 모니터 요원 양성	6	6	계속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참여	3	3	계속
여성정책 모니터 실시	2	3	계속
합계	11	12	

추진 부서

- 여성가족정책과

3-1-4. 여성 자원봉사자의 활동 및 복지지원 강화

사업 목적

- 봉사자의 자발적 참여 독려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 여성 자원봉사단체의 체계적 관리

추진 방법

-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봉사기관을 적절히 조절하고 분야별 전문적인 봉사인력 활용
- 여성 자원봉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기회 부여

연도별 추진 계획

사업내용	연도별 소요예산(단위: 백만원)		비고
	2013년	2014년	
여성 자원봉사자 인프라 구축 확대	10	10	계속
여성 자원봉사자의 전문성 강화	2.5	2.5	계속
합계	12.5	12.5	

- 추진 부서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정책과제	3-2. 제주 여성문화 선양 및 문화예술 활성화
------	----------------------------

3-2-1. 다양한 문화의 이해 증진을 위한 문화 교류 확대

- 사업 목적
-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도모
- 여성 문화예술인들의 국제 교류를 통해 다양한 문화 수용 기회 제공

- 추진 방법
- 지속적으로 세계 각국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 제주지역 언론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이해 방법 확산
- 여성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품 중심으로 국제 교류 여건 조성

연도별 추진 계획

사업내용	연도별 소요예산(단위: 백만원)		비고
	2013년	2014년	
세계 각국의 문화예술 교류 프로그램 운영	600	600	계속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6,900	7,000	계속
문화예술인 국제교류 확대	350	400	계속
문화예술 재능 및 감수성 향상을 위한 문화교육	49	49	신규
합계	7,899	8,049	

- 추진 부서
- 문화정책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3-2-2. 여성문화 자료 구축 및 활용 강화

사업 목적

- 제주 여성문화의 체계적 정립을 위하여 문헌자료·구술자료 수집
- 여성문화유산을 마을의 지적재산으로 인식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

추진 방법

- 생생한 구술사 중심으로 여성문화 관련 자료 수집 및 구축
- 여성문화유산 활동가 양성 및 활용

연도별 추진 계획

사업내용	연도별 소요예산(단위: 백만원)		비고
	2013년	2014년	
자료 수집(문헌·구술자료)	10	10	수정
여성문화유산 조사 활용	15	15	수정
여성문화유산 해설사 활동 지원	10	10	수정
합계	35	35	

추진 부서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3-2-3. 여성 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

사업 목적

- 여성 문화예술인 지표조사를 위한 문화예술인 지표 개발

추진 방법

- 여성 문화예술인을 교육활동가, 기획가로 활용

연도별 추진 계획

사업내용	연도별 소요예산(단위: 백만원)		비고
	2013년	2014년	
여성 문화예술인 인력 활용	80	100	계속
합계	80	100	

추진 부서

- 문화정책과

3-2-4. 해녀문화 정립 및 선양 확대

사업 목적

-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해녀문화를 재조명하고 주민참여 문화의 모델로 부흥
- 해녀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해녀문화를 보급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추진 방법

- 제주해녀에 대한 기초통계조사 및 해녀문화 전수 조사 실시
- 해녀문화자원 구축과 활용을 위한 시설 건립, 운영
 - 해녀생태박물관 : 해녀박물관을 중심으로 하여 구좌읍 일대에 있는 ‘불턱, 해신당, 갯담, 돌담’ 등과 연계하여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운영 계획

연도별 추진 계획

사업내용	연도별 추진계획(단위: 백만원)		비고
	2013년	2014년	
해녀 기초통계조사 및 해녀문화 전수 조사	10	10	계속
해녀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	1,000	100	신규
해녀생태박물관 조성 및 운영	100	100	신규
제주해녀 유네스코 등록	50	50	신규
제주해녀 축제 운영	200	200	신규
합계	1,360	460	

- 추진 부서
- 해양개발과

정책과제	3-3. 김만덕 나눔정신 확산
------	------------------

3-3-1. 김만덕 선양 사업

- 사업 목적
 - 제주의 대표적인 여성인물을 국내외에 부각
- 추진 방법
 - 김만덕의 역사적 고증 및 콘텐츠 개발
 - 김만덕의 위대한 나눔정신을 실천·보급할 수 있는 만덕아카데미 운영

연도별 추진 계획

사업내용	연도별 소요예산(단위: 백만원)		비고
	2013년	2014년	
김만덕 관련 자료 구축	15	15	계속
김만덕 선양 사업 추진	20	10	수정
합계	35	25	

- 추진 부서
- 여성가족정책과

3-3-2. 김만덕기념관 건립

- 사업 목적
 - 김만덕 정신 계승 및 선양을 위한 기념 공간 마련

추진 방법

- 제주의 대표 인물로 김만덕을 알리기 위한 기념관 건립 및 운영

연도별 추진 계획

사업내용	연도별 소요예산(단위: 백만원)		비고
	2013년	2014년	
김만덕기념관 건립	8,143	3,359	신규
합계	8,143	3,359	

추진 부서

- 여성가족정책과

4. 여성 인권 부문

1) 정책과제명

정책과제	세부과제
4-1. 여성인권에 대한 사회의식 제고	4-1-1. 통합적 여성 인권 교육으로 여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4-1-2. 여성에 대한 폭력 범죄의 신고 확산을 위한 캠페인
	4-1-3. 여성과 아동 폭력 예방 조례 제정
	4-1-4. 성희롱 예방체계 확립 및 교육 강화
	4-1-5. 관련 기관 네트워크 구축과 실질적 운영
4-2. 여성폭력(아동, 장애인, 이주여성) 방지를 위한 기반 조성	4-2-1. 지원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 강화 및 처우 개선
	4-2-2. 폭력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 확대
	4-2-3. 가해자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4-2-4. 여성폭력(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의 내실화
	4-2-5.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강화
4-3. 성매매 방지 집행력 강화와 성매매 피해자 지원 강화	4-3-1. 성매매 예방교육 강화
	4-3-2. 성매매 피해자 구조 지원 시설 운영의 내실화
	4-3-3.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 대책 강화

2) 목적과 필요성

- 여성 인권 영역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여성가족부 핵심사업의 하나임.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여성 인권 보호와 존중 정책을 추진해야 함.
- 여성친화도시는 인권과 권익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에 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명실공히 여성친화도시로 정착하기 위하여 폭력을 근절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조성 정책이 필요함.

3) 세부사업별 추진 계획

정책과제	4-1. 여성 인권에 대한 사회의식 제고
------	------------------------

4-1-1. 통합적 여성 인권 교육으로 여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사업 목적

-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지역사회의 참여 유도

추진 방법

-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위해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주기적으로 통합적 여성인권 교육 시행
- 공공기관 종사자 대상 인권 교육 강화

연도별 추진 계획

사업내용	연도별 소요예산(단위: 백만원)		비고
	2013년	2014년	
연간 교육계획 수립과 적극적 홍보	비예산	비예산	계속
통합적 여성 인권 교육(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을 통해 여성·아동 폭력 예방교육 강화	5	5	계속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인권 교육 강화	5	5	계속
여성폭력 관련 인권 교육 강화	5	5	신규
합계	15	15	

추진 부서

- 여성가족정책과

4-1-2. 여성에 대한 폭력범죄의 신고 확산을 위한 캠페인

사업 목적

- 여성에 대한 폭력 특히 아동폭력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으나 사회적 관심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폭력 범죄에 대한 신고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정책 추진

- 여성과 아동 대상 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적 공감 유도

추진 방법

- 여성폭력 추방의 날, 성폭력 추방 기간 등 성폭력 예방 캠페인
- 여성폭력과 성매매 방지 캠페인 추진, 교육

연도별 추진 계획

사업 내용	연도별 소요예산(단위: 백만원)		비고
	2013년	2014년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 성폭력 추방 기간 등 성폭력 예방 캠페인	3	4	계속
여성주간 행사시 여성폭력 예방 캠페인 및 행사 개최	3	3	계속
성매매방지법 제정 기념 성매매 방지 캠페인 등	3	3	계속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비예산		계속
합계	9	10	

추진 부서

- 여성가족정책과

4-1-3. 여성과 아동 폭력 예방 조례 제정

사업 목적

- 여성과 아동 폭력 예방과 안전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여성폭력 예방 토대 마련

추진 방법

- 여성과 아동 대상 폭력을 방지를 위해 근거가 되는 조례 제정

연도별 추진 계획

사업 내용	연도별 소요예산(단위: 백만원)		비고
	2013년	2014년	
여성·아동 폭력 예방 조례 제정	비예산		계속

추진 부서

- 여성가족정책과

4-1-4. 성희롱 예방체계 확립 및 교육 강화

사업 목적

- 성희롱고충상담원 등의 교육을 통해 성희롱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
- 공공영역에서 성희롱 피해 예방을 위해 공직자 성윤리 의식 강화 교육

추진 방법

- 공직자 성윤리의식 강화
- 공공기관 성희롱고충상담창구 확대 운영
-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및 점검 강화

연도별 추진 계획

사업 내용	연도별 소요예산(단위: 백만원)		비고
	2013년	2014년	
공공기관 성희롱고충상담창구 운영	비예산	비예산	수정
성희롱 예방교육 점검 강화	비예산	비예산	수정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및 교육 지원	4	4	수정
합계	4	4	

추진 부서

- 여성가족정책과

4-1-5. 관련 기관 네트워크 구축과 실질적 운영

사업 목적

- 여성과 아동 보호 지역연대협의체 운영을 통해 통합적 피해자 지원 강화
- 관련 기관의 협력 및 행정의 집행력 강화 유도

추진 방법

- 여성과 아동 보호 지역연대협의체의 위상 강화를 위해 민관합동 통합적 서비스 연계 구축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역자원 발굴 및 네트워킹 구축

연도별 추진 계획

사업 내용	연도별 소요예산(단위: 백만원)		비고
	2013년	2014년	
여성·아동 보호 지역연대 협의체의 활성화	비예산	비예산	계속
여성·아동 보호 지역연대 협의체 간 정기적 회의 개최 (연 4회 이상)	4	5	계속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례 회의	비예산	비예산	계속
합계	4	5	

추진 부서

- 여성가족정책과

정책과제	4-2. 여성폭력(아동, 장애인, 이주여성) 방지를 위한 기반 조성
------	---------------------------------------

4-2-1. 지원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 강화 및 처우 개선

사업 목적

- 여성폭력 관련 지원시설 종사자의 교육을 통해 실무역량 강화
- 여성폭력 관련 지원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업무의 지속력 유지

추진 방법

- 관련시설 종사자 대상 실무교육 강화
- 관련시설 종사자 대상 처우 개선과 안정성 확보 마련

연도별 추진 계획

사업 내용	연도별 소요예산(단위: 백만원)		비고
	2013년	2014년	
관련시설 종사자에 대한 실무역량 강화 교육	14	16	계속
관련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150	150	계속
관련시설 종사자의 안전 확보 대책 마련	2	2	계속
합계	166	168	

추진 부서

- 여성가족정책과

4-2-2. 폭력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 확대

사업 목적

- 여성과 아동들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안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 확대

추진 방법

- 우리동네 안전 지표 개발을 통해 동네의 안전도 향상 방안 마련
- 우리동네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도우미 지정 및 교육 실시

연도별 추진 계획

사업 내용	연도별 소요예산(단위: 백만원)		비고
	2013년	2014년	
우리동네 안전지표 개발을 통해 동네의 안전도 향상	비예산		계속
우리동네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도우미 지정 및 교육	25	25	계속
합계	25	25	

추진 부서

- 여성가족정책과

4-2-3. 가해자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사업 목적

- 여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를 통해 폭력 발생 예방

추진 방법

- 가해자 교육 모니터링 실시
- 여성폭력 가해자 교육의 내실화

연도별 추진 계획

사업 내용	연도별 소요예산(단위: 백만원)		비고
	2013년	2014년	
여성 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76	84	수정
가해자 교육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비 예산		계속
합계	76	84	

추진 부서

- 여성가족정책과

4-2-4. 여성폭력(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의 내실화

사업 목적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문상담, 법률, 의료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확대
- 폭력피해 여성에 대한 안정적인 주거지원 기회 마련

추진 방법

- (성·가정) 폭력 피해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지원
- 제주여성 긴급전화 1366 운영 지원
- 여성·학교 폭력 원스톱지원센터 등의 운영 지원
- 여성 폭력 피해자 주거 지원 사업

연도별 추진 계획

사업 내용	연도별 소요예산(단위: 백만원)		비고
	2013년	2014년	
(성·가정) 폭력 피해자 상담소 및 보호 시설 운영 지원	915	750	계속
제주여성 긴급전화 1366 운영 지원	318	333	계속
여성·학교 폭력 원스톱지원센터 등의 운영 지원	926	445	계속
여성 폭력 피해자 주거 지원 사업	27	29	신규
합계	2,186	1,557	

추진 부서

- 여성가족정책과

4-2-5.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강화

사업 목적

- 이주여성 대상 통·번역 가능한 상담원을 확보하여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 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위해 자활지원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생활 여건 마련

추진 방법

- 통·번역이 가능한 이주여성 상담원 확충
-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연도별 추진 계획

사업 내용	연도별 소요예산(단위: 백만원)		비고
	2013년	2014년	
통·번역이 가능한 이주여성 상담원 확충	30	30	계속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133	139	신규
합계	163	169	

추진 부서

- 여성가족정책과

정책과제	43. 성매매 방지 집행력 강화와 성매매 피해자 지원 강화
------	----------------------------------

4-3-1. 성매매 예방교육 강화

사업 목적

-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교육 강화
- 10대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성매매 재유입 방지

추진 방법

- 성매매 예방 교육
- 탈성매매 여성을 위한 인권 보호
-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위한 교육 제공 및 교육기관 취학 연계
- 이주여성 성매매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

연도별 추진 계획

사업 내용	연도별 소요예산(단위: 백만원)		비고
	2013년	2014년	
탈성매매 여성을 위한 인권보호 강화	비 예 산		계속
공공기관 성매매 예방교육 확대	비 예 산		계속
성매매 행위자 예방 교육	5	10	계속
성매매 단속을 위한 시민감시단의 상설적인 운영	비 예 산		계속
청소년 피해자를 위한 상담	22	24	수정
성매매 피해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제공	3	4	수정
이주여성 성매매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	4	4	계속
합계	34	42	

추진 부서

- 여성가족정책과

4-3-2. 성매매 피해자 구조 지원 시설 운영의 내실화

사업 목적

- 성매매 피해자 대상 법률, 의료 지원, 탈업소 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확대

추진 방법

- 탈성매매를 위한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연도별 추진 계획

사업 내용	연도별 소요예산(단위: 백만원)		비고
	2013년	2014년	
탈성매매를 위한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643	675	계속
합계	643	675	

추진 부서

- 여성가족정책과

4-3-3.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 대책 강화

사업 목적

- 탈성매매 여성을 위한 생계, 직업 지원을 통해 자립과 자활 유도

추진 방법

- 탈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직업전환 생계비 지원
- 성매매 피해 여성의 자립·자활을 위한 자활센터 운영

연도별 추진 계획

사업 내용	연도별 소요예산(단위: 백만원)		비고
	2013년	2014년	
탈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직업전환 생계비 지원	41	45	계속
성매매 피해 여성의 자립·자활을 위한 자활센터 운영	365	365	계속
합계	406	410	

추진 부서

- 여성가족정책과

5. 여성 건강·복지 부문

1) 정책과제명

정책과제	세부과제
5-1. 여성의 건강증진과 건강한 생활	5-1-1. 임신 및 건강한 출산지원 확대
	5-1-2. 여성의 건강권 확립과 건강증진 강화
5-2. 여성노인을 위한 사회 복지 서비스 강화	5-2-1. 여성노인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5-2-2. 여성노인의 사회참여 활동 지원
	5-2-3. 저소득 여성노인의 소득지원 사업 확대
	5-2-4. 여성노인을 위한 일시보호시설 확대 및 수발 서비스 확대
5-3. 여성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	5-3-1.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정보 기회 확대
	5-3-2. 여성장애인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내실화
	5-3-3. 여성장애인 고용확대 및 취업률 제고
	5-3-4. 여성장애인 모성권 확보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 강화
5-4.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	5-4-1.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 및 전문인력화 지원
	5-4-2. 여성농업인 복지서비스 확대 및 정책추진 기반 조성
	5-4-3. 여성 잠수어업인을 위한 소득사업 지원 강화
	5-4-4. 여성 잠수어업인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강화
5-5. 미혼모를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	5-5-1. 미혼모 자립지원시설 확대 및 미혼모 지원 정책
	5-5-2. 미혼모 발생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미혼모상담소 지정 확대
5-6. 저소득층 여성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	5-6-1. 저소득층 여성 기초생활 보장
	5-6-2. 한부모가족 저소득층 여성 지원 강화

2) 목적과 필요성

- 제주지역 여성의 복지권 및 건강권 보장 강화는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가족, 이웃, 공동체 삶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 조건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특별히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여성건강 증진을 위한 다각도의 지원 확대 방안 모색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

- 여성노인의 경우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스스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노인에게 수발급여 제공 확대와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에 대비해 보건·의료 복지서비스의 종합적인 연계시스템 구축 시스템이 필요함.
- 여성장애인의 취업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각종 사회적 환경을 마련하고 특히 장애유형과 등급, 학력, 적성 등에 따라 다양하고 체계화된 직업개발과 교육의 기회 제공과 여성장애인 전문 취업상담, 사후관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지역사회 지도자로서 여성농민의 자질향상과 역량강화를 위한 지도자 양성 교육이 필요하며 농어촌지역 보육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보육여건을 개선하고, 양육비 부담을 낮춰 여성농민들이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함.
- 잠수어업인이 감소되고 있어 잠수보호를 위해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등 건강보호사업과 수산종묘방류 등 소득사업 확대와 제주해녀의 고령화, 과잉노동에 의한 건강악화는 각종 질병을 발병하는 요인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어 건강과 빈곤문제, 교육문제, 가족 통합의 문제로 사회에서 소외된 미혼모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의식주해결이라는 기본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교육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3) 세부사업별 추진 계획

정책과제	5-1. 여성의 건강 증진과 건강한 생활
------	------------------------

5-1-1. 임신 및 건강한 출산 지원 확대

사업 목적

-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건강을 증진하여 건강한 아기를 출산하도록 함.

추진 방법

- 영유아 건강 진단 지원 및 의료지원
- 출산 도우미 지원

연도별 추진 계획

사업내용	연도별 추진계획(단위:백만원)		비고
	2013년	2014년	
영유아건강진단사업	36	36	계속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246	246	계속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128	128	계속
신생아청각선별검사	13	13	계속
출산장려금 지원	1,400	1,400	계속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	698	698	계속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운영 예정		수정
합계	2,521	2,521	

추진 부서

- 보건위생과, 보건소

5-1-2. 여성의 건강권 확립과 건강증진 강화

사업 목적

- 여성들의 신체적·심리적 건강을 보장하고 예방하기 위해 생애주기별로 영·유아성장발달 스크리닝, 아동 청소년기 건강관리, 성 건강관리 프로그램, 건강한 신혼가정 가꾸기, 가임기 여성의 건강관리, 중년 및 노년의 여성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홍보함으로써 활동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유도함.

추진 방법

-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교육 강사 양성

-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교육과 홍보 확대
-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 확대

연도별 추진 계획

사업내용	연도별 추진계획(단위: 백만원)		비고
	2013년	2014년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실태 파악	1회	1회	계속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홍보	10회	10회	계속
암 및 골다공증 검진확대 (연 10% 증가 목표)	5%	5%	계속
생애주기별 건강강사 양성	4회	4회	계속
생애주기별 교육 및 홍보	10회	10회	계속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 확대	35	40	계속
합계	35	40	

- 추진 부서
- 보건위생과

정책과제	5-2. 여성노인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
------	---------------------------

5-2-1. 여성노인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사업 목적

- 여성노인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로 여성노인이 보다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하고 안정된 노후의 삶을 보장하기 위함.

추진 방법

- 치매노인을 위한 서비스 지원 확대
- 치매상담센터 운영

연도별 추진 계획

사업내용	연도별 추진계획(단위: 백만원)		비고
	2013년	2014년	
치매노인을 위한 서비스 지원 확대	40	40	계속
치매상담센터 운영	30	35	계속
합계	70	75	

추진 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5-2-2. 여성노인의 사회참여 활동 지원

사업 목적

- 사회활동에서 소외되기 쉬운 여성노인의 여가활동, 전문교육, 자원봉사프로그램을 확대함으로써 여성노인이 건강하고 활발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하여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

추진 방법

- 노인교실 및 노인대학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취미활동, 문화활동 등 여성노인 여가증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운영

연도별 추진 계획

사업내용	연도별 추진계획(단위: 백만원)		비고
	2013년	2014년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25	25	계속
노인대학 및 노인교실 운영	300	300	계속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비예산	비예산	계속
합계	325	325	

추진 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5-2-3. 저소득 여성노인의 소득지원 사업 확대

사업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노인들 중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여성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직업역량 강화
- 여성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제공을 통해 여성노인들의 사회 참여 확대

추진 방법

- 저소득 여성노인의 소득 확대를 위한 실버형 사회적 일자리 창출·제공
- 노인 일자리사업·시니어클럽의 여성노인 참여 강화

연도별 추진 계획

사업내용	연도별 추진계획(단위: 백만원)		비고
	2013년	2014년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	비예산	비예산	계속
노인공동작업장 지원	40	45	계속
노인고용일거리 마련 사업	30	30	계속
노인고용장려금 지원	250	300	계속
시니어클럽의 여성노인 참여 활성화	200	250(3개소)	계속
합계	520	625	

추진 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5-2-4. 여성노인을 위한 일시보호시설 확대 및 수발 서비스 확대

사업 목적

-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여성노인과 노인 부양가정에 필요한 서비스, 시설 제공

추진 방법

- 확대피해 등 요보호노인을 대상으로 한 쉼터 운영
- 노인복지시설(주야간 단기보호시설, 일시보호시설, 방문요양시설 등) 설치 확대

연도별 추진 계획

사업내용	연도별 추진계획(단위: 백만원)		비고
	2013년	2014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	851	1,000	신규
확대피해 노인전용 쉼터 운영 지원	147	147(1개소)	계속
합계	998	1,147	

추진 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정책과제	5-3. 여성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
------	----------------------------

5-3-1.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정보 기회 확대

사업 목적

- 복합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 여성장애인들의 미래 생애준비를 위한 교육기회 확대 제공하고자 함.

추진 방법

-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기회 확대
- 여성장애인들을 연령대별로 파악하여 그에 따른 교육적 요구 조사

연도별 추진 계획

사업내용	연도별 추진계획(단위: 백만원)		비고
	2013년	2014년	
여성장애인 교육 사업	45	45	수정
여성장애인 교육 실태 파악 및 욕구조사 실시	비예산	비예산	계속
장애인복지관 운영 사업 지원	4,000	4,500	계속
합계	4,045	4,545	

추진 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5-3-2. 여성장애인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내실화

사업 목적

- 폭력 피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안전한 보호와 지원 확대
- 폭력 피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빠른 정서적 회복 도움

추진 방법

- 폭력피해 여성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보호시설 운영
- 성·가정 폭력피해 여성장애인 치유·회복 프로그램 운영
- 여성장애인을 위한 공동생활 가정 및 주간 보호시설 활성화
- 여성장애인 상담소 운영

연도별 추진 계획

사업 내용	연도별 소요예산(단위: 백만원)		비고
	2013년	2014년	
폭력 피해 여성장애인 보호시설	-	73	수정
성·가정 폭력 피해 여성장애인 치유·회복 프로그램 운영	13	13	계속
여성장애인을 위한 공동생활 가정 및 주간 보호시설 활성화	22	22	계속
여성장애인 상담소 운영	93	100	계속
합계	128	208	

추진 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5-3-3. 여성장애인 고용확대 및 취업률 제고

사업 목적

- 여성장애인들의 취업률을 확대하고 고용의 질적 향상은 물론 고용 안정에 최선인 정책적 지원을 함.

추진 방법

- 여성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원

연도별 추진 계획

사업내용	연도별 추진계획(단위: 백만원)		비고
	2013년	2014년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원	2,059	2,100	신규
합계	2,059	2,100	

추진 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5-3-4. 여성장애인 모성권 확보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 강화

사업 목적

-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적 차별로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여성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함.

추진 방법

- 여성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현실적 요구에 맞추어 출산 전·후 비용 지원

연도별 추진 계획

사업내용	연도별 추진계획(단위: 백만원)		비고
	2013년	2014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	18	18	신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29	29	신규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확대지원	77	77	신규
합계	124	124	

추진 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정책과제	5-4. 여성 농·어업인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
------	-------------------------------

5-4-1.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 및 전문인력화 지원

사업 목적

-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 인정과 사회적 이미지 향상.
- 여성농업인을 위한 새로운 영농기술 보급 및 농외소득원 창출과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문능력 개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확대.

추진 방법

- 농업후계자 육성사업에서 여성농업인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감.
- 농촌지도자의 역량강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연도별 추진 계획

사업내용	연도별 추진계획(단위: 백만원)		비고
	2013년	2014년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비예산	비예산	계속
여성농업인 단체 활동지원	33	33	계속
여성농업인 소규모 창업지원	300	300	신규
여성농업인 능력향상 및 전문교육	200	200	신규
여성농업인 노동 생산성 향상 지원	400	400	신규
여성농업후계 인력 육성기반 확충	3,000	3,500	계속
합계	3,933	4,433	

추진 부서

- 농업기술원, 친환경농정과

5-4-2. 여성농업인 복지서비스 확대 및 정책 추진 기반 조성

사업 목적

- 각종 농정 관련 위원회에 여성농업인의 참여비율을 높임으로써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농업정책이나 사업에 여성농업인의 적극적인 의견 반영이 가능하도록 함.

추진 방법

- 여성도우미 등 농촌여성 인력지원 확대
- 여성농업인센터 프로그램 다양화 및 확충
-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 추진체계 구축 및 시행

연도별 추진 계획

사업내용	연도별 추진계획(단위: 백만원)		비고
	2013년	2014년	
여성도우미 등 농촌여성 인력지원 확대	1,000	1,152	계속
여성농업인센터 프로그램 다양화 및 확충	929	922	계속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추진 체계 구축 및 시행	비예산	비예산	수정
합계	1,929	2,074	

추진 부서

- 친환경농정과

5-4-3. 여성 잠수어업인을 위한 소득사업 지원 강화

사업 목적

- 패조류 투석 및 수산종묘매입방류 등을 실시하여 소득사업 확대에 기여함.

추진 방법

- 패조류 투석
- 수산 종묘 매입 방류

연도별 추진 계획

사업내용	연도별 추진계획(단위: 백만원)		비고
	2013년	2014년	
패조류 투석	1,500	1,500	계속
수산 종묘 매입 방류 사업	1,878	2,142	수정
합계	3,378	3,642	

- 추진 부서
- 수산정책과

5-4-4. 여성 잠수어업인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강화

- 사업 목적
 - 제주지역 여성 잠수어업인의 고령화와 과잉노동에 의한 건강악화와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여성 잠수어업인들의 건강한 생산 활동을 도모할 수 있게 함.
- 추진 방법
 -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확대
 - 잠수어업인 안전공제가입 지원

연도별 추진 계획

사업내용	연도별 추진계획(단위: 백만원)		비고
	2013년	2014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확대	3,630	3,630	계속
잠수어업인 안전공제가입 지원	88	88	신규
합계	3,718	3,718	

- 추진 부서
- 수산정책과

정책과제	5-5. 미혼모를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
------	--------------------------

5-5-1. 미혼모 자립지원시설 확대 및 미혼모 지원 정책

사업 목적

- 양육을 원하는 미혼모의 자립을 지원하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사회적응 기회를 제공함.
- 미혼부모의 임신과 분만, 아동양육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과 공동가정생활 내 실화로 아동양육 등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미혼모 가정을 지원함.

추진 방법

- 양육 미혼모를 위한 공동가정 확대 설치 및 운영
- 미혼모의 학업지속 및 직업훈련 지원 강화(학비지원, 자원봉사 연계, 학교 전학, 직업학교 연계, 검정고시 응시 등)

연도별 추진 계획

사업내용	연도별 추진계획(단위: 백만원)		비고
	2013년	2014년	
양육 미혼모를 위한 공동생활 가정 운영	20	20	계속
미혼모의 학업지속 및 직업훈련 지원	6	6	계속
합계	26	26	

추진 부서

- 여성가족정책과

5-5-2. 미혼모 발생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미혼모상담소 지정 확대

사업 목적

- 미혼모상담소를 설치·운영하여 미혼부모의 발생에 적절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추진 방법

- 미혼부모의 임신과 분만, 아동양육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 제공

연도별 추진 계획

사업내용	연도별 추진계획(단위: 백만원)		비고
	2013년	2014년	
미혼모상담소 설치 운영	50	50	계속
합계	50	50	

추진 부서

- 여성가족정책과

정책과제	5-6. 저소득층 여성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
------	------------------------------

5-6-1. 저소득층 여성 기초생활 보장

사업 목적

- 저소득층과 위기가정을 위한 기초생활 보장 지원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추진 방법

- 위기생활에 처한 여성가구에 대한 긴급생계·의료비 등 지원 내실화 도모
- 주택전세자금 융자 지원

연도별 추진 계획

사업내용	연도별 추진계획(단위: 백만원)		비고
	2013년	2014년	
저소득층 여성가정 생계급여 등 지원	31,483	33,057	신규
위기가정 긴급 복지 지원	438	440	신규
주택 전세자금 융자	15	20	신규
합계	31,936	33,517	

- 추진 부서
- 복지청소년과

5-6-2. 한부모가족 저소득층 여성 지원 강화

- 사업 목적
 - 한부모가족 등 빈곤여성의 기초생활 보장
 -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 도모
- 추진 방법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확대
 - 한부모가족 자녀 학용품 지급

연도별 추진 계획

사업내용	연도별 추진계획(단위: 백만원)		비고
	2013년	2014년	
한부모가족 생활·이용시설 구축	800	840	계속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	1,894	1,900	계속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확대	21	21	계속
한부모가족 자녀 학용품 지급	100	100	수정
합계	2,815	2,861	

- 추진 부서
- 여성가족정책과

6. 여성 권익 · 성주류화 강화 부문

1) 정책과제명

6-1. 성분석 기반 확립 및 성인지정책 실행	6-1-1. 성인지통계 조사 및 성별영향평가 확대
	6-1-2. 성인지예산 제도 기반 조성
	6-1-3. 공무원 성인지교육 활성화
6-2.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 확대	6-2-1.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지속적 확대
	6-2-2.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의 지속적 확대
	6-2-3. 여성정책담당관 신설 및 임무 부여
	6-2-4. 여성정책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정례화
	6-2-5. 여성가족연구원 설립
6-3. 시민사회 연계 여성정책 추진	6-3-1. 제주여성포럼 운영
	6-3-2. 여성정책을 위한 시민단체 협력체계 구축
	6-3-3. 여성발전기금 조성 및 지원 사업 확대

2) 목적과 필요성

- 성인지적 관점에서 모든 정책이 수립, 평가, 집행됨에 따라 성주류화 기반 조성이 필요함.
- 여성들이 정책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가 필요함.

3) 세부사업별 추진 계획

정책과제	6-1. 성분석 기반 확대 및 성인지정책 실행
------	---------------------------

6-1-1. 성인지통계 조사 및 성별영향평가 확대

사업 목적

- 생활밀착형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성인지통계 조사 실시
- 공공정책 계획 수립 시 성별영향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법

- 여성가족 통계 조사(2년 단위)
- 사업별 성별영향평가 분석

추진 계획

사업 내용	연도별 소요예산(단위: 백만원)		비고
	2013년	2014년	
여성가족 통계 조사	30	-	수정
성별영향평가 분석 및 관리	20	20	계속
합계	50	20	

추진 부서

- 여성가족정책과

6-1-2. 성인지예산 제도 기반 조성

사업 목적

- 성인지예산 제도 도입에 따라 성인지 예산 편성 지침 준수

추진 방법

- 성인지예산서 편성 지침 운영
- 성인지예산 제도 확산

연도별 추진 계획

사업 내용	연도별 소요예산(단위: 백만원)		비고
	2013년	2014년	
성인지예산서 편성	비 예산		수정
성인지예산 제도 도입	비 예산		수정

- 추진 부서
- 예산담당관실

6-1-3. 공무원 성인지교육 활성화

- 사업 목적
- 공무원 대상 성인지예산서 작성, 성별영향평가 제도 확대 등 교육
- 공무원 대상 성인지력 교육 기회 확대

- 추진 방법
- 전체 공무원 대상 성인지력 향상 교육
- 관리직 공무원 대상 성인지예산 제도와 편성 교육
- 공무원 대상 성별영향평가 교육

연도별 추진 계획

사업내용	연도별 소요예산(단위: 백만원(명))		비고
	2013년	2014년	
전체 공무원 대상 성인지력 향상 교육	5(800)	5(800)	계속
관리직 공무원 대상 성인지예산 제도와 편성 교육	3	3	계속
공무원 대상 성별영향평가 교육	2(1000)	2(1000)	수정
합계	10	10	

- 추진 부서
- 여성가족정책과

6-2-1.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지속적 확대

 사업 목적

-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 기준에 따라 매년 임용 비율 조정

 추진 방법

-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제 추진

 연도별 추진 계획

사업 내용	연도별 소요예산(단위: 비율, 백만원)		비고
	2013년	2014년	
5급 이상 관리직 여성 공무원 임용 목표제 시행	10.3%	10.5%	계속
6급 관리직 여성 공무원 임용목표제 시행	19.3%	20.2%	계속

 추진 부서

- 총무과

6-2-2.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의 지속적 확대

 사업 목적

-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정책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추진 방법

-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기회 확대

연도별 추진 계획

사업내용	연도별 소요예산(단위: 비율, 명)		비고
	2013년	2014년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확대	40%	45%	계속

추진 부서

- 여성가족정책과, 정책기획관실

6-2-3. 여성정책담당관 신설 및 임무 부여

사업 목적

- 제주지역의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필요

추진 방법

- 여성정책을 전담할 전문인력 채용

연도별 추진 계획

사업내용	연도별 소요예산		비고
	2013년	2014년	
여성정책담당관 신설	요청	운영	계속

추진 부서

- 여성가족정책과, 정책기획관실

6-2-4. 여성정책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정례화

사업 목적

- 여성정책 협의체를 보좌하는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 필요

추진 방법

- 여성정책 관련 관리직 공무원을 보좌할 수 있는 실무자로 구성
- 여성정책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 중심 안건 협의

연도별 추진 계획

사업내용	연도별 소요예산		비고
	2013년	2014년	
여성정책 실무협의회	운영	운영	계속

추진 부서

- 여성가족정책과

6-2-5. 여성가족연구원 설립

사업 목적

- 생활밀착형 여성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이 필요

추진 방법

- 여성가족연구원 설립 및 운영

연도별 추진 계획

사업내용	연도별 소요예산		비고
	2013년	2014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 및 운영	설립	운영	수정

추진 부서

- 여성가족정책과

정책과제	6-3. 시민사회 연계 여성정책 추진
------	----------------------

6-3-1. 제주여성포럼 운영

사업 목적

- 제주여성포럼 조직으로 제주여성들이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등 다각도로 정책 결정에 참여 기회 제공

추진 방법

- 도내외 여성 인적자원 발굴 및 포럼 운영

연도별 추진 계획

사업내용	연도별 소요예산(단위: 백만원)		비고
	2013년	2014년	
제주여성포럼 운영	30	30	계속
합계	30	30	

추진 부서

- 여성가족정책과

6-3-2. 여성정책을 위한 시민단체 협력체계 구축

사업 목적

- 제주지역의 여성정책 활성화를 위해 시민단체의 협력 체제 구축

추진 방법

-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간담회 및 세미나 개최

연도별 추진 계획

사업내용	연도별 소요예산(단위: 백만원)		비고
	2013년	2014년	
시민단체와 간담회	10	10	계속
시민단체와 공동 세미나 개최	20	20	계속
합계	30	30	

추진 부서

- 여성가족정책과

6-3-3. 여성발전기금 조성 및 지원 사업 확대

사업 목적

- 제주지역의 여성권의 향상과 성주류화 정책 추진을 위해 여성발전 기금액 확대 필요
- 여성발전기금의 적합한 운용 방안 마련

추진 방법

- 여성발전기금 지원 사업 확대 필요
- 여성발전기금 조성 확대

연도별 추진 계획

사업내용	연도별 소요예산(단위: 백만원)		비고
	2013년	2014년	
여성발전기금사업 지원금 운영	20	20	수정
여성발전기금조성 확대	650	700	신규
합계	670	720	

추진 부서

- 여성가족정책과

7. 여성친화도시 부문

1) 정책과제명

정책과제	세부과제
7-1.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 체계 구축	7-1-1.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 마련
	7-1-2.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민간 참여 확대
7-2.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7-2-1. 여성친화적 공동체 공간 만들기
	7-2-2.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교통시스템 마련

2) 목적과 필요성

- 일상생활에서 안전성과 쾌적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여성 친화적 지역 만들기 필요
-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환경적 지원 토대 마련

3) 세부사업별 추진 계획

정책과제	7-1.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체계 구축
------	------------------------

7-1-1.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 마련

사업 목적

-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정책의 지속적인 집행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 여성친화도시 정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추진 방법

-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행정체계 정비 및 실무협의체 구성
-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공무원 대상 교육 강화
- 여성친화도시 실국별·과제별 워크숍

연도별 추진 계획

사업 내용	연도별 소요예산(단위: 백만원)		비고
	2013년	2014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과 지속적 운영	비예산		계속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공무원 대상 교육 강화	3	3	계속
여성친화도시 실국별·과제별 워크숍			계속
합계	3	3	

추진 부서

- 여성가족정책과

7-1-2.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민간 참여 확대

사업 목적

-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여 정책 추진의 효과 극대화

추진 방법

-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여성친화도시 단계별 사업 계획 및 시행 점검
-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조직·운영

연도별 추진 계획

사업 내용	연도별 소요예산(단위: 백만원)		비고
	2013년	2014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민관협의체 구성 운영	1	1	수정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도민 의견 수렴 창구 개설	비예산		계속
합계	1	1	

추진 부서

- 여성가족정책과

정책과제	7-2.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	-----------------------

7-2-1. 여성친화적 공동체 공간 만들기

사업 목적

- 도로, 공원, 야간 보행 등 공공시설 이용 시 대상과 성별을 고려하여 안전한 환경 조성
- 공공장소 이용 시 안정성을 보장하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공동체 친화적인 공간 조성

추진 방법

- 성별을 고려한 놀이터 공간조성과 놀이터 안전성 마련
- 여성과 가족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확충
- 유모차, 자전거,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도보정비
- 공원, 공공건물 중심 위험요소 제거 및 야간 보행 시 안정성 보장

연도별 추진 계획

사업 내용	연도별 소요예산(단위: 백만원)		비고
	2013년	2014년	
여성과 가족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확충	60	65	계속
유모차, 자전거,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도보 정비	14	16	계속
공원 및 녹지에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에게 위험 요소 제거	12	12	계속
성별을 고려한 놀이터 공간 조성 및 놀이터 안전성 마련	14	16	계속
대중교통 정류장의 밝은 조명 등을 통한 안전성 확보	24	26	계속
공공건물, 공원 등 공적인 공간에서 야간 보행의 안전성 확보	12	12	계속
합계	136	147	

추진 부서

- 건축지적과, 건설도로과

7-2-2.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교통시스템 마련

사업 목적

-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시스템을 구축하여 여성친화적인 이미지 제고

추진 방법

- 대중요금할인제도 시행(청소년, 장애인 대상)
- 어린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저상버스 운영 지원 및 특별교통수단 확대
- 공용버스 무료이용제도 시행(70세 이상 도민)

연도별 추진 계획

사업 내용	연도별 소요예산(단위: 백만원)		비고
	2013년	2014년	
어린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교통시스템 운영	60	65	수정
합계	60	65	

추진 부서

- 교통항공과

V. 정책 제언

□ 여성정책의 영역별 추진실적 편차 고려

- 제4차 여성정책 중기계획 중간평가 결과 가족, 인권, 건강·복지, 권익·성주류화 영역은 일정하게 추진되었으나, 여성들의 경제활동과 고용 창출을 장려하는 경제와 인력개발 부문은 추진 실적이 저조함. 또한 청년 대상 다양한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고 봐서 4차 중기계획에 반영하였으나 중간 점검 결과 거의 추진되지 않았음.
- 이는 일자리 창출과 기회 제공을 위해 특정 교육기관 중심으로 위탁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정책과제 수가 적게 집계되는 단점이 있으나 재교육과 취·창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단계적·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며 세부과제 수효의 많고 적음을 고려하지 않아야 좋은 실적을 거둘 수 있다고 봄.
- 다만 여성의 경제활동을 양성화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 시설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봄.

□ 여성정책 중기계획의 적극적 추진 의지 필요

- 제4차 여성정책 중기계획에는 4년간 추진 가능성이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여 반영하였으나 중간점검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추진되지 않았음.
-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은 시기와 예산을 고려하여 결과를 얻을 수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여성정책은 제주지역 전반에 걸쳐 시행되어야 하므로 고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간기업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과제 추진이 중요함. 또한 여성의 대표성 확대와 평등의식의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정책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필요함.

□ 여성정책의 지속적 추진 여건 조성

- 4년간 여성정책 점검 결과 추진 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 다음 차수에도 반영되어 여성정책이 중장기적으로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함. 즉 정책의 추진실적 결과에 따라 미추진된 것은 중요도와 지속성을 고려하지 않고 삭제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진 여부에 상관없이 4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봄.
- 특히 정책과제 추진 여부는 추진시기와 예산 확보, 추진 의지 등이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정책 집행 주체의 노력이 필요하고, 중기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실적 보고 체계화가 필요함.
- 매년 추진실적 보고에 목표, 내용, 예산(집행액), 추진 경과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수합하고 점검함으로써 사업의 연속성 여부 확인이 필요함.

□ 여성정책 중기계획 수립 시기 조절

- 지방자치단체장 임기 4년, 대통령 임기 5년을 고려하여 중기계획 수립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고 봄.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 기조를 반영하여 여성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정책 추진에 효율적이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여성정책을 수행해야 하므로 정부의 여성정책 수립 시기를 조율해야 국가와 지방의 여성정책 목표 달성에 근접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
- 따라서 제5차 여성정책 중기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시기와 정부의 여성정책 추진 일정을 감안하여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실질적인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된다고 봄.
- 정부와 지방의 정책 기조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조정하지 않고 현행대로 4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할 경우 항상 수정·보완 과정을 거치게 됨.
- 향후 5차 여성정책 중기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적어도 중기계획 종료 1년 전에 추진실적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중기계획이 종료되는 연도에는 다음 차수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시간과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이라고 봄.

□ 여성정책 추진 부서의 통합적인 계획 수립 여건 조성

- 정책 담당부서에 따라 중장기 기본계획이 수립(사회복지, 인력개발, 청소년, 아동·보육, 저출산·고령화, 노인·장애인 등)되고 있는데 추진 시기를 고려하여 중복 분야인 경우 동일한 과제를 그대로 반영하고, 필요에 따라 해당 부서별 독자적인 정책과제 발굴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봄.
- 추진 실적을 수합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담당부서의 혼재, 사업의 혼재, 여성정책에 적합한 성별분리통계의 불명확성 때문에 추진 결과 비율이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발생함.
- 따라서 여러 분야의 기본계획을 교류하고 수립하게 되면 시간과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봄.

《참고자료》

- 김양희 외(2009),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이행점검』, 여성부
- 김태홍 외(2012), 『최근 10년간 여성정책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문순덕 외(2010),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 중기계획(2011~2014)』, 제주특별자치도.
- 민무숙 외(2011),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이행점검 및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여성가족부.
- 변화순 외(2008), 『여서정책 기본계획 이행상황 점검 개선 방안』, 여성부.
- 이은아 외(2008), 『경기도 여성발전 5개년 계획 이행점검 및 향후 과제』, 경기가족여성연구원.
- 제주특별자치도(2011), 『2011 제주여성가족통계』.
- 조우철 외(2004), 『여성정책기본계획 점검』, 여성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2),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 자료집.

Abstract

The middle of the 4th Women's Policy Plan interim assessment and supplement plan

Soon-Deok Moon

Hye-Kyung Hyu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from 1999 to 2010 by the middle of the women's policy plan Considering the conditions in Jeju Island has pursued a policy of women. 4th,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o check the middle of the women's policy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the first half(2011-2012) and the second half(2013-2014) is divided into inspection promoted according to the Indicator Performance evaluation and research to be pursued over the next two years to complement the policy challenges for research purposes. Interim assessment through the second half of the implementation challenges, and the middle of the 5th Women's Policy Plan(2015-2018) plan benefits when establishing the evaluation phase can be reduced.

Of change, the department collected 2 years of implementation performance and in the process to check if the same business is promoted in a similar department, the business is unable to determine the gender disaggregated statistics in promoting women's policy did not aggregate exactly propulsion results occurred. Complement when you think about it, the second half of the policy challenges suggest the female gender disaggregated statistics department clearly set policy.

key words : women's policy, indicator performance, evaluation phase, implementation, female gender

부록. <제4차 여성정책 중기계획 보완 사업별 투자계획 및 추진부서>

※ 전반기 지속과제(계속), 후반기 수정과제(수정), 후반기 신규과제(신규)

영역		총 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추진부서	비고
			2013	2014		
정책과제						
단위사업						
총 계		418,934.5	202,117	216,817.5		
1. 여성 가족 부문		265,438.5	128,277	137,161.5		
1-1. 지역사회가 책임지는 일·가족 양립 지원 정책 강화						
	1-1-1. 일·가족 양립에 대한 도민들의 의식전환 확대		3	3	여성가족정책과	
	1-1-2. 영유아 보육 지원		87,527	95,000	여성가족정책과	수정
1-2. 제주형 보육정책 개발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						
	1-2-1. 야간 돌봄 어린이집 단계적 확대		2,514	2,880	여성가족정책과	계속
	1-2-2. 보육시설 친환경 농산물 급식 지원		200	200	친환경농정과	수정
	1-2-3. 보육시설 종사자 전문성 강화		32,421	33,222	여성가족정책과	계속
	1-2-4. 12살 이하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 무상 시행		1,956	2,000	보건위생과	수정
1-3. 다양한 가족에 대한 통합적 인프라 구축						
	1-3-1.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		2,800	3,000	여성가족정책과	수정
	1-3-2.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396	396.5	여성가족정책과	계속
	1-3-3. 국제결혼중개업 관리 강화		-	-	여성가족정책과	수정
1-4. 이주여성을 위한 사회통합 서비스 강화						
	1-4-1. 이주여성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사업 확대		360	360	여성가족정책과	계속
	1-4-2. 이주여성의 사회문화적응을 위한 자립·자활교육과 훈련 확대		100	100	여성가족정책과	수정

영역	정책과제	총 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추진부서	비고
			2013	2014		
			단위사업			
2. 여성 경제·인력개발 부문		1,386	690.5	695.5		
2-1. 여성의 취업 능력 개발						
	2-1-1. 청년여성 및 여대생의 취업 지원 활성화		50	50	여성가족정책과	수정
	2-1-2.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지원 인프라 구축		595	595	여성가족정책과	수정
2-2. 여성 일자리 창출 활성화						
	2-2-1. 여성기업인 육성 지원		25	30	기업지원과	신규
	2-2-2. 여성경제인 종합지원센터 창업보육시설 확충		-	-	기업지원과	신규
2-3. 여성 고용의 사회적 지원체제 구축						
	2-3-1. 여성기업 생산제품 공공 구매 확대		-	-	기업지원과	신규
	2-3-2. 여성친화적 고용환경 조성		20.5	20.5	여성가족정책과 고용지원과	계속
3. 여성 사회·문화 부문		22,258	9,818.5	12,439.5		
3-1. 글로벌 여성리더십 역량 확대						
	3-1-1. 여성지도자 역량 강화 및 공동체 의식 확산		376	376	여성가족정책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수정
	3-1-2.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10	11	여성가족정책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수정
	3-1-3.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모니터링 기능		11	12	여성가족정책과	계속
	3-1-4. 여성 자원봉사자의 활동 및 복지지원 강화		12.5	12.5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수정
3-2. 제주 여성문화 선양 및 문화예술 활성화						
	3-2-1. 다양한 문화의 이해 증진을 위한 문화 교류 확대		7,899	8,049	문화정책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수정
	3-2-2. 여성문화 자료 구축 및 활용 강화		35	35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수정

영역	정책과제	총 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추진부서	비고
			2013	2014		
			단위사업			
	3-2-3. 여성 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		80	100	문화정책과	계속
	3-2-4. 해녀문화 정립 및 선양 확대		1,360	460	해양개발과	계속
	3-3. 김만덕 나눔정신 확산					
	3-3-1. 김만덕 선양 사업		35	25	여성가족정책과	계속
	3-3-2. 김만덕기념관 건립		8,143	3,359	여성가족정책과	계속
4. 여성 인권 부문		7,195	3,731	3,464		
	4-1. 여성 인권에 대한 사회의식 제고					
	4-1-1. 통합적 여성 인권 교육으로 여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15	15	여성가족정책과	계속
	4-1-2. 여성에 대한 폭력 범죄의 신고 확산을 위한 캠페인		9	10	여성가족정책과	계속
	4-1-3. 여성과 아동 폭력 예방 조례 제정		-	-	여성가족정책과	계속
	4-1-4. 성희롱 예방체계 확립 및 교육 강화		4	4	여성가족정책과	계속
	4-1-5. 관련 기관 네트워크 구축과 실질적 운영		4	5	여성가족정책과	계속
	4-2. 여성폭력(아동, 장애인, 이주여성) 방지를 위한 기반 조성					
	4-2-1. 지원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 강화 및 처우 개선		166	168	여성가족정책과	계속
	4-2-2. 폭력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 확대		25	25	여성가족정책과	계속
	4-2-3. 가해자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76	84	여성가족정책과	계속
	4-2-4. 여성폭력(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의 내실화		2,186	1,557	여성가족정책과	계속
	4-2-5.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강화		163	169	여성가족정책과	계속

영역 정책과제		총 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추진부서	비고
			2013	2014		
단위사업						
4-3. 성매매 방지 집행력 강화와 성매매 피해자 지원 강화						
	4-3-1. 성매매 예방교육 강화		34	42	여성가족정책과	계속
	4-3-2. 성매매 피해자 구조 지원 시설 운영의 내실화		643	675	여성가족정책과	계속
	4-3-3.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 대책 강화		406	410	여성가족정책과	계속
5. 여성 건강·복지 부문		120,641	58,610	62,031		
5-1. 여성의 건강증진과 건강한 생활						
	5-1-1. 임신 및 건강한 출산지원 확대		2,521	2,521	보건위생과 보건소	계속
	5-1-2. 여성의 건강권 확립과 건강증진 강화		35	40	보건위생과	계속
5-2. 여성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서 비스 강화						
	5-2-1. 여성노인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70	75	노인장애인복지과	계속
	5-2-2. 여성노인의 사회참여 활동 지원		325	325	노인장애인복지과	계속
	5-2-3. 저소득 여성노인의 소득 지원 사업 확대		520	625	노인장애인복지과	계속
	5-2-4. 여성노인을 위한 일시보 호시설 확대 및 수발 서 비스 확대		998	1,147	노인장애인복지과	계속
5-3. 여성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						
	5-3-1.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 를 위한 교육·정보 기 회 확대		4,045	4,545	노인장애인복지과	계속
	5-3-2. 여성장애인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내실화		128	208	노인장애인복지과	수정
	5-3-3. 여성장애인 고용확대 및 취업률 제고		2,059	2,100	노인장애인복지과	계속

영역	정책과제	총 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추진부서	비고
			2013	2014		
			단위사업			
	5-3-4. 여성장애인 모성권 확보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 강화		124	124	노인장애인복지과	계속
	5-4. 여성 농·어업인을 위한 사회 복지 서비스 강화					
	5-4-1.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 및 전문인력화 지원		3,933	4,433	농업기술원, 친환경농정과	
	5-4-2. 여성농업인 복지서비스 확대 및 정책추진 기반 조성		1,929	2,074	친환경농정과	수정
	5-4-3. 여성 잠수어업인을 위 한 소득사업 지원 강화		3,378	3,642	수산정책과	계속
	5-4-4. 여성 잠수어업인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강화		3,718	3,718	수산정책과	계속
	5-5. 미혼모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5-5-1. 미혼모 자립지원시설 확대 및 미혼모 지원 정책		26	26	여성가족정책과	계속
	5-5-2. 미혼모 발생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미혼모상 담소 지정 확대		50	50	여성가족정책과	계속
	5-6. 저소득층 여성을 위한 사회 복지서비스 강화					
	5-6-1. 저소득층 여성 기초생활 보장		31,936	33,517	복지청소년과	수정
	5-6-2. 한부모가족 저소득층 여성 지원 강화		2,815	2,861	여성가족정책과	수정
6. 여성 권익·성주류화 강화 부문		1,600	790	810		
	6-1. 성분석 기반 확립 및 성인지 정책 실행					
	6-1-1. 성인지통계 조사 및 성별 영향평가 확대		50	20	여성가족정책과	수정
	6-1-2. 성인지예산제도 기반 조성		-	-	예산담당관실	계속

영역	정책과제	총 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추진부서	비고
			2013	2014		
			단위사업			
	6-1-3. 공무원 성인지교육 활성화		10	10	여성가족정책과	계속
	6-2.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 확대					
	6-2-1.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지속적 확대				총무과	수정
	6-2-2.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의 지속적 확대				여성가족정책과 정책기획관실	계속
	6-2-3. 여성정책담당관 신설 및 임무 부여				여성가족정책과 정책기획관실	계속
	6-2-4. 여성정책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정례화				여성가족정책과	계속
	6-2-5. 여성가족연구원 설립				여성가족정책과	수정
	6-3. 시민사회 연계 여성정책 추진					
	6-3-1. 제주여성포럼 운영		30	30	여성가족정책과	계속
	6-3-2. 여성정책을 위한 시민 단체 협력체계 구축		30	30	여성가족정책과	계속
	6-3-3. 여성발전기금 조성 및 지원 사업 확대		670	720	여성가족정책과	수정
7. 여성친화도시 부문		416	200	216		
	7-1.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 체계 구축					
	7-1-1.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강력한 추진 체계 마련		3	3	여성가족정책과	계속
	7-1-2.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민간 참여 확대		1	1	여성가족정책과	계속
	7-2.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7-2-1. 여성친화적 공동체 공간 만들기		136	147	건축지적과 건설도로과	수정
	7-2-2.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교통시스템 마련		60	65	교통항공과	계속

연구진

연구책임	문순덕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공동연구	현혜경	제주대학교 SSK사업단 전임연구원
연구보조	김진	제주발전연구원 연구보조원

정책연구 2012-8

제4차 여성정책 중기계획 중간평가 및 보완계획

발행인 || 양영오

발행일 || 2012년 12월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

690-162 제주시 아연로 253(오라2동)

전화: (064) 726-0500 팩스: (064) 751-2168

홈페이지: www.jdi.re.kr

인쇄처 || 일신옵셋인쇄사

ISBN : 978-89-6010-291-0 93330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